

국가회계 재지토계

ISSN 2635-7119

2025년 가을호
Vol. 44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동향
국가결산체계개편 시리즈 3
(국가회계예규 및 계정과목 주요 개정 사항)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2025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재정통계 동향
2024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공기업·준정부기관·공익법인회계 동향
2024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결과 분석

CONTENTS

2025년 가을호

Vol. 44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재정통계

VOL. 44

계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5년 가을호

발행인 이 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편집 장우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진태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윤성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분석팀장(결산분석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전화 044-414-2440(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
발행일 2025년 9월 30일
제작처 경성문화사

국가회계 동향

- 6 국가결산체계개편 시리즈 3
(국가회계예규 및 계정과목 주요 개정 사항)
- 46 2025년 2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 99 해외 재무결산 동향(미국)
- 105 『2025 알기 쉬운 국가회계』 발간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108 2025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 109 『202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 111 2025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3~10차)
- 112 2025회계연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재정통계 동향

- 116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 124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 127 OECD 사회보장기금 재정통계 분석



공기업·준정부기관·공익법인회계 동향

- 138 2024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결과 분석
- 147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온라인 동영상 제작
- 149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포털 홈페이지 개편
- 150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1~2차 결과보고
- 152 교육·의료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유형별 재무분석

세미나

- 166 제6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내



공지사항

- 169 구독안내
- 169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지통계



국가회계 동향



- 국가결산체계개편 시리즈 3(국가회계예규 및 계정과목 주요 개정 사항)
- 2025년 2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 해외 재무결산 동향(미국)
- 『2025 알기 쉬운 국가회계』 발간

01 국가결산체계개편 시리즈 3

(국가회계예규 및 계정과목 주요 개정 사항)

가. 시리즈의 구성

국가결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재무제표의 활용도를 높여 국가결산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결산보고서 체계가 개편되었으며, 2025회계연도부터 개편된 내용을 적용하여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다. 이를 맞아 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총 4개의 시리즈로 구성하여 소개할 계획이다. 앞서 2025년 봄호와 여름호에서 각각 “시리즈 1: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과 “시리즈 2: 재무제표 개정 사항”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각 시리즈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시리즈 1 :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시리즈 2 : 재무제표 개정 사항

시리즈 3 : 국가회계예규 및 계정과목(COA) 주요 개정 사항

시리즈 4 : 결산보고서(결산개요, 주석) 주요 개정 사항

이 중 세 번째 시리즈인 ‘국가회계예규 및 계정과목(COA) 주요 개정 사항’에서는 국가회계예규 및 개정과목 개정의 주요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현금흐름표 회계처리 지침 신설, 결산체계 개편에 따른 재무제표·결산서·계정과목 개정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정보이용자가 개편된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회계예규 전문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s://www.kipf.re.kr/gafsc/index.do>)의 발간자료 중 『2025 국가회계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국가회계예규 개정 요약

1)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 신설

이번 국가결산보고서 체계 개편으로 현금흐름표가 재무제표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도 신설되었다. <표 1>에 지침의 주요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며, '라. 주요 개정 사항 - 2)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에서 주요 문단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 요약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 요약	
문단 1~3	현금흐름표의 목적, 적용범위, 현금의 정의 등
문단 4~8	현금흐름의 구분(운영, 투자, 재무)
문단 9~11	현금흐름의 표시 방법(직접법 등), 공시(주석사항)

2) 결산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신설된 현금흐름표 지침을 제외한 22개 예규에 대해 결산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개정 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표 2>에 제시되어 있으며, '라. 주요 개정 사항'에서 주요 지침별 주요 개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결산체계 개편에 따른 예규 개정 사항 요약

결산체계 개편에 따른 예규 개정 사항 요약	
재무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간소화 및 성질별 재정운영표 신설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표시 방법 변경 국세수익·이전수익(비용)·국가운영수익(비용) 정의 신설 기타자산·부채 표시과목 신설에 따른 정비
결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삭제 후 주석으로 통합 반영
계정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자산 분류 삭제 및 재무제표 표시항목 변경에 따른 계정과목 변경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성분류는 계정과목 최하위레벨에서 구분함에 따라 현행 분류 유지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지침에 체계 개편 후 계정과목 반영 (예: 정부출자금 신설, 국세물납증권 신설, 도로 분류 세분화 등)

3) 공통사항

공통사항으로 성질별 재정운영표 신설에 따라 재정운영표에 반영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 문구를 일괄 '재정운영결과에 반영'으로 수정하였으며, 표시(재무제표 본문)와 공시(주석 공시)가 혼재되어 있는 문구를 개정하였다. 이 외 띄어쓰기 및 일부 문구가 수정되었다.

다. 예규 명칭 변경 및 신설 현황

국가결산보고서 체계 개편 전·후 예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체계 개편 전·후 예규 현황

개정 전	개정 후
1.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1.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에 관한 지침
〈신 설〉	2.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
2.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3.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
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4.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
4.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5.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5.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6.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6. 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	7. 기타자산과 기타부채 회계처리지침
7. 리스 회계처리지침	8. 리스 회계처리지침
8.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9.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9.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0. 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0.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1.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
11. 비용 회계처리지침	12. 비용 회계처리지침
12. 연금 회계처리지침	13. 연금 회계처리지침
13. 보험 회계처리지침	14. 보험 회계처리지침
14. 보증 회계처리지침	15. 보증 회계처리지침
15. 용자 회계처리지침	16. 용자 회계처리지침

표 3 의 계속

개정 전	개정 후
16.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17.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
17.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18.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
18.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9.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
19.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20.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20.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21.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21.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22.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22.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23.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라. 주요 개정 사항

개정 사항이 중요한 예규를 선별하여 주요 개정 내용과 설명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주요 계정과목 변경사항도 함께 기재하였다.

국가회계기준상 계정과목은 <표 4>와 같이 5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표 4 국가회계기준상 계정과목 체계

계정과목 체계	대분류 (Ⅰ)	중분류 (Ⅱ)	회계과목 (Ⅲ)	관리과목 (Ⅳ)	세부관리과목 (Ⅴ)
---------	------------	------------	-------------	-------------	---------------

5단계 구조 중 회계과목(Ⅲ)은 재무결산 보고의 기본단위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공시과목이며, 관리과목(Ⅳ) 및 세부관리과목(Ⅴ)은 회계과목의 상세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회계처리 시 사용되는 기표과목이다. 주요 계정과목 변경사항은 이와 같은 계정과목 구조에 따라 설명하였다.

1)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지침

가) 예규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p>5.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1)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p> <p>(2)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한다.</p>	<p>5. (재무제표의 구성)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p>

- » 개정 후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가 추가되어 현금흐름 정보를 재정활동(운영·투자·재무)별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주석·필수보충정보·부속명세서로 분산되어 있던 재무제표 상세 설명 자료를 주석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전	개정 후
<p>9. (재정상태표 작성기준) (1)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 경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p> <p>(2)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p>	<p>9. (재정상태표 작성기준) (1) 자산과 부채는 업무의 특성, 유동성,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배열한다. 이 경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p> <p>(2)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p>

- » 개정 후 회계과목에서는 장·단기 구분이 삭제되었고, 계정과목의 장·단기 구분은 관리과목 또는 세부관리과목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지침에서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는 문구가 사라지고 업무의 특성, 유동성,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배열한다는 문구로 수정되었다.

개정 전	개정 후
<p>13. (재정운영표의 정의와 기본구조) (1)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p> <p>(2) 재정운영표는 작성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p> <p>(가) 중앙관서 또는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수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p> <p>(나)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p>	<p>13. (재정운영표의 정의와 구분) (1)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재정운영의 결과를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p> <p>(2) 재정운영표는 작성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가) 국가회계실체의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p> <p>(나) 중앙관서의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p> <p>(다) 국가의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분야별 재정운영표</p>
<p>〈신 설〉</p>	<p>15. (국가회계실체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국가회계실체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p> <p>(1) 수익은 이전수익과 국가운영수익을 더하여 표시한다.</p> <p>(가) 이전수익: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수취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사회보험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및 기타이전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p> <p>(나)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수익 및 이전수익 외의 모든 수익으로서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연금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자산처분이익, 자산평가이익, 기타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p> <p>(2) 비용은 이전비용과 국가운영비용을 더하여 표시한다.</p> <p>(가) 이전비용: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제공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수취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국고보조사업비, 출연사업비, 사회보험비용, 지방교부금 및 기타이전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p> <p>(나) 국가운영비용: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전비용 외의 모든 비용으로서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연금비용, 인건비, 이자비용, 운영비, 감가상각비, 자산평가손실 및 기타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p> <p>(3) 재정운영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빼서 표시한다.</p>

개정 전	개정 후
<p>24. (중앙관서 재정운영표) (1) 중앙관서 재정운영표 작성시 중앙관서가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통합되는 국가회계실체가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표시하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별도 표시한다.</p> <p>(2) 중앙관서 재정운영표는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다.</p>	<p>17. (중앙관서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u>〈문단 18(1)로 변경〉</u></p> <p>(1) 중앙관서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다.</p> <p>(2) (1)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앙관서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은 문단15를 준용한다.</p>
<p>〈신 설〉</p>	<p>19. (국가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1) 국가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중앙관서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한다.</p> <p>(2) 수익은 국세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을 더하여 표시한다.</p> <p>(가) 국세수익: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징수하는 내국세와 관세 등의 수익</p> <p>(나) 이전수익: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수취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p> <p>(다)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수익 및 이전수익 외의 모든 수익</p> <p>(3) (1)과 (2)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은 문단15를 준용한다.</p>

- » 기존에는 필수보충정보를 통해 제공되던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성질별 재정운영표 작성 방법이 신설되었다.
- » 기존의 복잡한 수익·비용분류(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수익,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비교환수익 등)를 크게 수익과 비용으로 간소화하여 재정운영표에 대한 이해도를 개선하였으며, 수익·비용 측면에서 각각의 성질별 세부 구성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관련된 문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익은 국가회계실체 및 중앙관서의 경우 원천에 따라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되며, 국가의 경우 원천에 따라 국세수익,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된다.
 - 비용은 국가회계실체, 중앙관서, 국가의 경우 모두 재정활동 성격에 따라 이전비용과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된다.

개정 전	개정 후
<p>30.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는 거래이나, 수익 또는 비용거래나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p> <p>(1) <u>납입자본의증감</u></p> <p>(2) <u>투자증권평가손익</u></p> <p>(3) <u>파생상품평가손익</u></p> <p>(4) <u>자산재평가이익</u></p> <p><u>〈신 설〉</u></p> <p>(5) <u>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u></p> <p>(6) <u>기타순자산의증감</u></p>	<p>25.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는 거래이나, 수익 또는 비용거래나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p> <p><u>〈삭 제〉</u></p> <p>(1) <u>투자증권평가손익</u></p> <p><u>〈삭 제〉</u></p> <p>(2) <u>자산재평가이익</u></p> <p>(3) <u>보험수리적손익</u></p> <p>(4) <u>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u></p> <p>(5) <u>기타순자산의증감</u></p>

» 금액 규모를 고려하여 조정항목 계정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기존 회계과목 중 납입자본의증감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을 별도의 회계과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순자산의증감으로 통합하였으며, 기존에 기타순자산의증감으로 집계되었던 보험수리적손익은 별도의 회계과목으로 분리하여 추가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p>31. (주석)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각 예규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의 정보를 주석으로 표시한다.</p> <p>(1) <u>중요한 회계처리방법</u></p> <p>(2) <u>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u></p> <p>(3) <u>장기충당부채</u></p> <p>(4) <u>외화자산 및 외화부채</u></p> <p>(5) <u>우발사항 및 악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 제공자산 명세를 포함한다)</u></p> <p>(6) <u>전기유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u></p> <p>(7) <u>순자산조정명세</u></p> <p>(8) <u>(1)부터 (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31. (주석) (1)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u>〈삭 제〉</u></p> <p>(2) 다음의 사항을 주석으로 표시한다.</p> <p>(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회계처리에 적용한 회계정책</p> <p>(나) <u>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에서 주석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u></p> <p>(다) <u>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u></p> <p>(3) 주석의 종류와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p>

» 개정 전에는 주석으로 표시해야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주석의 공시 범위를 큰 범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기존에 작성하던 주석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제정하는 '결산작성지침'을 통해 결산보고서의 양식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p>32. (필수보충정보)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 다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2) 연금보고서 (3) 보험보고서 (4) 사회보험보고서 (5) 국세징수활동표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7)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8)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p>〈삭 제〉</p>
<p>38. (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장·단기 금융상품 (3) 단기투자증권 (4) 장기투자증권 (5) 장·단기 미수채권 (6) 장·단기 대여금 (7) 일반유형자산 (8) 사회기반시설 (9) 무형자산 (10) 국채 및 공채 (11) 차입금 (12) 출연비 	<p>〈삭 제〉</p>

»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를 삭제하여 주식·필수보충정보·부속명세서로 분산되어 있던 재무제표 상세 설명 자료를 주식으로 통합하였다.

나) 계정과목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기타순자산의 증감	연금보험 수리적손익	공무원연금 보험수리적이익	보험수리적손익	연금보험 수리적손익	공무원연금 보험수리적이익
		공무원연금 보험수리적손실			공무원연금 보험수리적손실
		군인연금 보험수리적이익			군인연금 보험수리적이익
		군인연금 보험수리적손실			군인연금 보험수리적손실
		공무원퇴직수당 보험수리적이익			공무원퇴직수당 보험수리적이익
	퇴직수당 보험수리적손익	공무원퇴직수당 보험수리적손실		퇴직수당보험 수리적손익	공무원퇴직수당 보험수리적손실
		군인퇴직수당 보험수리적이익		군인퇴직수당 보험수리적이익	
		군인퇴직수당 보험수리적손실		군인퇴직수당 보험수리적손실	

» 개정 전 보험수리적손익은 연금보험수리적손익과 퇴직수당보험수리적손익으로 나누어 기타순자산의증감 하위 관리과목으로 분류되었으나, 개정 후 보험수리적손익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별도의 회계과목으로 분류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납입자본의증감	납입자본의증가		기타순자산의 증감	납입자본의증감	납입자본의증가
	납입자본의감소			납입자본의감소	
파생상품 평가손익	파생상품 평가이익			파생상품 평가손익	파생상품 평가이익
	파생상품 평가손실			파생상품 평가손실	

» 금액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납입자본의증감과 파생상품평가손익을 별도의 회계과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순자산의증감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

이번 국가결산보고서 체계 개편으로 현금흐름표가 재무제표에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도 신설되었다. 해당 지침 중 주요 문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일부 발췌)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일부 발췌)
<p>용어의 정의</p> <p>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금흐름표에서 “현금”이란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5.(1)에 따른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말한다.</p>
<p>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p> <p>4. (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1) 현금흐름표는 국가회계실체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현금흐름표는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p>
<p>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p> <p>5.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 국세의 징수, 정책사업 운영 및 관리활동 등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을 말한다. (후략) 6.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 국세의 징수, 정책사업 운영 및 관리활동 등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출을 말한다. (후략)</p>
<p>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p> <p>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투자활동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투자증권 및 유·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후략)</p>
<p>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p> <p>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 재무활동은 차입·상환 및 출연금의 증가 등 부채와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말한다. (후략)</p>
<p>현금흐름의 표시방법</p> <p>9.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 (1)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직접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직접법이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후략)</p>

3)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회계처리지침

가) 예규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제2항 등에 따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목적) 이 예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제2항 등에 따라 금융자산과 차입부채 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계정과목 개편에 따라 금융부채에서 차입부채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8. (정부출자금) (1) 정부출자금은 법령·정책적 목적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증권을 말한다. (2) 정부출자금은 출자 대상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부출자기업출자금과 정부출자기업외출자금으로 구분한다.
〈신 설〉	19. (정부출자금의 취득원가)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신 설〉	24. (정부출자금의 인식 후 평가) 정부출자금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 개정 전 출자금은 장기투자증권 하위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었으나, 개정 후 정부출자금 계정과목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투자증권과 달리, 정부출자금은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따라서 정부출자금은 인식 후 평가로 인해 최초 인식금액이 변경되지 않는다.

개정 전	개정 후
<p>7. (유가증권) (2) 유가증권은 그 형태에 따라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구분한다. <신 설></p>	<p>7. (투자증권) (2) 투자증권은 그 형태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국세물납증권으로 구분한다. (가) 국세물납증권이란 국세 물납을 통해 취득한 투자증권을 말한다.</p>
<p>18.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신 설></p>	<p>18. (투자증권의 취득원가) (3) 국세물납증권은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문단 10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지한 국세수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p>
<p>22. (유가증권의 인식 후 평가) (1) 유가증권 중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는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지분증권과 기타 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투자목적의 단기투자증권 또는 장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p>	<p>23. (투자증권의 인식 후 평가) (1) <삭 제>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는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지분증권과 국세물납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투자증권의 공정가액을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 중 “투자증권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p>

- » 계정과목 개편에 따라 국세물납증권 계정과목을 신설하였다.
- » 국세물납증권은 신고하거나 고지한 국세수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며, 최초 인식 후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나) 계정과목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장기투자증권	지분증권	출자금	정부출자금	정부출자기업 출자금	
	기타장기 투자증권	출자금		정부출자기업외 출자금	

- » 개정 전 출자금은 장기투자증권 하위 세부관리과목으로 분류되었으나, 개정 후 정부출자금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회계과목으로 분류하였다.
- » 출자금 잔액을 대상으로 거래처를 확인하여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인 경우 정부출자기업출자금으로, 정부출자기업체가 아닌 경우 정부출자기업외출자금으로 분리한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단기(장기) 투자증권		주식	투자증권	국세물납증권	주식/국세물납 증권단기(장기)
		기타지분증권			기타지분증권/ 국세물납증권 단기(장기)
	기타단기 (장기)투자증권	국채			국채/국세물납 증권단기(장기)
		공채			공채/국세물납 증권단기(장기)
		지방채			지방채/국세물납 증권단기(장기)
		회사채			회사채/국세물납 증권단기(장기)

- » 개정 전 투자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기타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물납으로 받은 증권은 만기와 예상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기타단기(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되었다. 개정 후 국세로 물납받은 증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국세물납증권 계정과목을 신설하였다.

» 개정 후 지침을 적용하면 기타단기(장기)투자증권 잔액 중 정부출자금을 제외한 잔액은 모두 국세물납증권으로 구분하며, 국세물납증권이 아닌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4)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가) 예규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p>5. (사회기반시설의 분류) 사회기반시설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p> <p>(1) “도로”란「도로법」제2조에 따라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일반국도와 고속국도를 말한다.</p>	<p>5. (사회기반시설의 분류) 사회기반시설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p> <p>(1) “국도”는 「도로법」제12조에 따른 주요 도시, 지정항만,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으로서 일반국도를 말한다.</p> <p>(2) “고속국도”란「도로법」제11조에 따른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말한다.</p>

» 계정과목 체계상 3레벨 명칭이었던 도로를 사회기반시설로 변경하면서 도로 정의 대신 사회기반시설의 하위(4레벨) 계정인 국도와 고속국도 정의로 변경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p>32. (사용수익권의 상각) 사용수익권은 권리의 제공 기간에 걸쳐서 거래상대방(수증자)과 동일한 금액으로 상각하며 이를 “정부외자산수증”으로 처리한다.</p>	<p>32. (사용수익권의 상각) 사용수익권은 권리의 제공 기간에 걸쳐서 상각한다. <삭 제></p>

» 거래상대방(수증자)과 동일한 금액으로 상각한다는 것과 상각액을 정부외자산수증으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나) 계정과목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도로	국도	토지	사회기반 시설	국도	토지
		건물			건물
		건축물			건축물
		기타			기타
	고속국도	토지		고속국도	토지
		건물			건물
		건축물			건축물
		기타			기타

» 도로를 국도와 고속국도로 구분하는 방식을 타 사회기반시설과 동일한 레벨로 구분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기타재원 조달및이전	무상이전 수입	정부외자산 수증	기타이전 수익	자산수증이익	사용수익권 상각이익
무상이전 수입	정부외자산 수증		기타이전 수익	자산수증이익	사용수익권 상각이익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사용수익권이 있는 경우 이를 매년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계정과목을 기존 정부외자산수증에서 사용수익권상각이익으로 변경하여 다른 정부외자산수증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5) 무형자산 회계처리지침

가) 예규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p>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무형자산”이란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으로서,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기타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장기간에 걸쳐 회계실체에게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이다.</p>	<p>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국가회계실체가 통제하며 장기간에 걸쳐 국가회계실체에게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이다.</p> <p>(2) “화폐성자산”이란 현금 및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한 화폐금액으로 받을 자산을 말한다.</p> <p>(3) “비화폐성자산”이란 화폐성자산 외의 자산을 말한다.</p>
<p>〈신 설〉</p>	<p>4. (식별가능성) 자산은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 식별 가능하다.</p>
<p>〈신 설〉</p>	<p>5. (통제) (1)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 또는 영역집재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p> <p>(2)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p>
<p>〈신 설〉</p>	<p>6. (미래경제적효익 또는 영역집재력)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 또는 영역집재력은 제품의 매출, 영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p>
<p>〈신 설〉</p>	<p>7. (무형자산의 구분) 무형자산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p> <p>(1) “소프트웨어”는 외부업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축한 전산 프로그램 등을 말하는 내부개발 소프트웨어와 외부에서 구입한 전산 패키지 등을 말하는 외부구입소프트웨어(관련 하드웨어는 포함하지 않는다)로 이루어져있다.</p> <p>(2) “산업재산권”이란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p> <p>(3) “광업권”이란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산 중에 존재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p> <p>(4) “기타무형자산”이란 (1) 내지 (3)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을 말한다.</p>

» 무형자산을 정의하는 문단 3에 식별가능성, 통제 요소를 추가하고,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 정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문단 4~6을 통해 무형자산 정의 요소인 식별가능성, 통제, 미래경제적효익 또는 용역잠재력에 관해 순서대로 규정하였다.

6) 기타자산과 기타부채 회계처리지침

가) 예규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p>9. (퇴직급여충당부채) (1) 재정상태표일 현재「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한다.</p> <p>(2) 다음의 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p> <p>(가) “퇴직보험예치금”이란 직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사, 은행 등에 퇴직금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p> <p>(나) “퇴직연금운용자산”이란 국가회계실체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p> <p>(다) “국민연금전환금”이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을 말한다.</p>	<p>〈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으로 이전〉</p>

» 퇴직급여충당부채 인식과 표시에 관해 설명한 문단 9를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문단 6(2)로 이전하였다.

7) 총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가) 예규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p>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p> <p>(1) 연금총당부채, 퇴직수당총당부채(「연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p> <p>(2) 보험총당부채(「보험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p> <p>(3) 보증총당부채(「보증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p> <p>(4) 퇴직급여총당부채(「기타의 자산과 기타의 부채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p> <p>(5) 리스(「리스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다만,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예규를 적용한다.</p>	<p>2. (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을 제외한 국가회계실체의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p> <p>(1) 연금총당부채, 퇴직수당총당부채(「연금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p> <p>(2) 보험총당부채(「보험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p> <p>(3) 보증총당부채(「보증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p> <p>〈삭 제〉</p> <p>(4) 리스(「리스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한다) 다만,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예규를 적용한다.</p>
<p>〈신 설〉</p>	<p>5. (총당부채의 구분) 총당부채는 연금총당부채, 퇴직수당총당부채, 보증총당부채, 보험총당부채 및 기타총당부채로 구분한다.</p>
<p>〈신 설〉</p>	<p>6. (기타총당부채) 기타총당부채는 소송총당부채, 퇴직급여총당부채 등으로 구분한다.</p> <p>(1) 소송총당부채는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향후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부담하게 될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금액을 말한다.</p> <p>(2) 퇴직급여총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추정하여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의 자산을 퇴직급여총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p> <p>(가) “퇴직보험예치금”이란 직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사, 은행 등에 퇴직금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p> <p>(나) “퇴직연금운용자산”이란 국가회계실체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p> <p>(다) “국민연금전환금”이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을 말한다.</p> <p>(3) 기타의기타총당부채는 소송총당부채, 퇴직급여총당부채 이외의 기타총당부채로서 복구총당부채를 포함한다.</p>

» 기타자산과 기타부채 회계처리지침 문단 9에 있던 퇴직급여충당부채 인식과 표시에 관한 설명을 본 지침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본 지침의 적용범위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제외한다는 개정 전 문단 2(4)를 삭제하였다. 또한 충당부채 계정과목 구분 체계를 변경하여 문단 5, 6을 신설하였다.

나) 계정과목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연금 충당부채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연금 충당부채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군인연금 충당부채			군인연금 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기타장기 충당부채	퇴직수당 충당부채		퇴직수당 충당부채	공무원퇴직수당 충당부채	
				군인퇴직수당 충당부채	
	소송충당부채		소송충당부채		
	기타의기타 장기 충당부채		기타의기타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보험 예치금				퇴직보험 예치금
	국민연금 전환금				국민연금 전환금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

» 충당부채를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로 구분하고, 퇴직수당충당부채 하위에 공무원퇴직수당충당부채, 군인퇴직수당충당부채 계정과목을 신설하였다. 기타충당부채는 소송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의기타충당부채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개정 전 기타장기충당부채 하위에 있던 4레벨의 보증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를 개정 후에는 3레벨로 변경했고, 개정 전 소송충당부채,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를 개정 후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함께 기타충당부채(3레벨) 하위로 변경하였다.

8) 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가) 예규 개정 사항

지침의 개정으로 인해 일부 지침 문구의 변경이 있었으며, 계정과목의 변경이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차지한다. 하기 기술한 계정과목 변경 외에 단순한 중분류, 계정과목 명칭 등의 변경, 그리고 레벨 변경 등 또한 지침 개정에 반영되어 있다.

나) 계정과목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평가이익	외화평가이익		자산평가이익	외화자산평가이익	
	기타평가이익			기타자산평가이익	
	외화평가이익		기타국가운영수익	기타평가이익	외화부채평가이익
	기타평가이익				기타부채평가이익

» 기존의 외화평가이익, 기타평가이익을 평가 대상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계정과목을 신설하였다. 신설한 계정과목 중 외화자산평가이익, 기타자산평가이익의 회계과목을 자산평가이익으로 하였고, 외화부채평가이익, 기타부채평가이익의 회계과목과 관리과목은 각각 기타국가운영수익, 기타평가이익으로 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정부출자기업 출자금배당수익	
				정부출자기업외 출자금배당수익	
기타수익	배당금수익		배당수익	지분증권 배당수익	
				국세물납증권 배당수익	
				기타배당수익	

»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관리하던 배당수익을 배당수익의 원천인 자산에 따라 분리 하였으며, 배당수익은 출자금 외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분증권, 국세물납증권 및 기타배당수익을 추가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보증총당 부채환입
기타수익	총당부채환입		기타국가 운영수익	총당부채환입	보험총당 부채환입
					기타총당 부채환입

»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관리하던 총당부채환입을 발생원천 총당부채(보증, 보험, 기타)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세부관리과목을 세 개 신설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일반용자금대손 총당금환입
					전대차관대여금 대손총당금환입
					구상채권 대손총당금환입
					미수재회및용역수익 대손총당금환입
					미수제재금수익 대손총당금환입
					미수부담금수익 대손총당금환입
기타수익	대손총당금환입		기타국가 운영수익	대손총당금 환입	미수연금수익 대손총당금환입
					미수이자수익 대손총당금환입
					미수보험수익 대손총당금환입
					미수보증수익 대손총당금환입
					미수사회보험수익 대손총당금환입
					미수기타수익 대손총당금환입
					기타의미수금 대손총당금환입

»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관리되고 있던 대손총당금환입을 발생원천인 대여금, 구상채권 및 미수채권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세부관리과목을 신설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금융상품 감액손실환입
					정부출자금 감액손실환입
기타수익	감액손실환입	기타자산 감액손실환입	기타국가 운영수익	감액손실환입	기타금융자산 감액손실환입
					무형자산 감액손실환입
					기타자산 감액손실환입

» 기존 기타자산감액손실환입 세부관리과목을 발생원천 자산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세부 계정과목을 신설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사회보험 부채환입
기타수익	기타부채환입		기타국가 운영수익	기타부채환입	기타의기타 부채환입

» 기타부채를 사회보험부채와 기타의기타부채로 분리함에 따라 부채환입 계정과목도 동일하게 분리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증권 처분이익		자산처분이익	투자증권 처분이익	
	장기투자증권 처분이익				

» 자산의 계정과목에 따라 처분이익 계정과목이 발생함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었던 투자증권처분이익을 투자증권처분이익 하나로 통합하였다.

9) 비교환수의 회계처리지침

가) 예규 개정 사항

지침의 개정으로 인해 일부 지침 문구의 변경이 있었으며, 계정과목의 변경이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차지한다. 하기 기술한 계정과목 변경 외에 단순한 중분류, 계정과목 명칭 등의 변경, 그리고 레벨 변경 등 또한 지침 개정에 반영되어 있다.

나) 계정과목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기타비교환수익	기타비교환수익		기타이전수익	기타의기타 이전수익	기타의기타 이전수익
기타자원 조달및이전	기타자원조달				

» 비교환수익등의기타인 기타비교환수익과 기타자원조달은 성격이 중복되므로 기타의기타이전수익으로 통합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기타자원 조달및이전	무상이전수입	정부내 자산수증 기타무상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익	자산수증이익	정부내 자산수증

» 기타무상이전수입은 물납받은 자산을 기획재정부가 이관받을 때 사용하는 등 무상이전수입의 기타 과목으로 성격이 정부내자산수증과 중복되므로 통합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기타자원 조달및이전	무상이전수입	손익계정 전입금 자본계정 전입금 감가상각 전입금 당기순이익 전입금	기타이전수익	정부내전입금	기업특별회계 전입금

» 당기순이익전입금, 손익계정전입금 등 현재의 전입금 세부관리과목은 예산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므로, 상대 거래처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기업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을 조정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기타재원 조달및이전	무상이전지출	비금융공기업 경상전출금	기타이전비용	정부내전출금	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비금융공기업 자본전출금			
		손익계정 전출금			
		자본계정 전출금			
		감가상각 전출금			
		당기순이익 전출금			

» 당기순이익전출금, 손익계정전출금 등 현재의 전출금 세부관리과목은 예산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므로, 상대 거래처에 따라 일반회계전출금, 기타특별회계전출금, 기업특별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을 조정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기타재원 조달및이전	무상이전지출	기타무상 이전지출	기타이전비용	기타의기타 이전비용	
	기타재원이전				

» 비교환수의 중 재원이전의 기타인 기타재원이전과 기타무상이전지출은 성격이 중복되므로 기타의기타이전비용으로 통합하였다.

10) 비용 회계처리지침

가) 예규 개정 사항

지침의 개정으로 인해 일부 지침 문구의 변경이 있었으며, 계정과목의 변경이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차지한다. 하기 기술한 계정과목 변경 외에 단순한 중분류, 계정과목 명칭 등의 변경, 그리고 레벨 변경 등 또한 지침 개정에서 반영되어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p>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비용”이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p> <p>(2) “재원의 이전”이란 순자산의 감소효과를 발생하거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를 말한다.</p> <p>〈신 설〉</p>	<p>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비용”이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p> <p>(2) “재원의 이전”이란 순자산의 감소효과를 발생하거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를 말한다.</p> <p>(3) “이전비용”이란 재화나 용역, 그 밖의 자산을 제공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수취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p> <p>(4) “국가운영비용”이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전비용 외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p>

»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신설로 이전비용과 국가운영비용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나) 계정과목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차입금 이자비용	기타민간예수금 이자비용	이자비용	기타이자비용	청약저축 이자비용
이자비용	기타이자비용	기타의기타 이자비용			기타의기타 이자비용

» 청약저축 계정과목이 신설되고 자산 계정과목 개편에 따라 기타민간예수금은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관련 이자비용은 청약저축이자비용으로 구분하고, 이외 기타민간예수금이자비용과 기타의기타이자비용은 모두 기타이자비용의 기타의기타이자비용으로 분류하여 청약저축 외에는 모두 기타의기타이자비용으로 분류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업무추진비	행사진행경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업무비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비				정보보안비
	정보보안비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안보비

» 일반업무비, 특정업무비, 특수활동비 등 업무추진비의 하위 계정과목 명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목(230 특수활동비 / 240 업무추진비 / 250 직무수행경비 / 270 안보비)을 참조하여 계정과목을 정비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출연비	공공기관 출연비		출연 사업비	일반사업출연비	일반사업출연비/ 공공기관
				연구개발출연비	연구개발출연비/ 공공기관
	민간출연비			일반사업출연비/ 민간	
				연구개발출연비/ 민간	
	해외출연비			일반사업출연비/ 해외	
	연구개발출연비/ 해외				

» 출연비를 일반사업출연비와 연구개발출연비로 분리하였다(예산목 350 일반출연금 / 360 연구개발출연금).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보조비	해외보조비		국고보조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해외	
			기타이전비용	국채부담금	

» 해외보조비 중 국제부담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국제부담금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분리하였다(예산목 340-02목에 따른 지출은 국제부담금으로, 이외에는 국고보조사업비/해외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전대차관대여금 대손상각비
					일반용자금 대손상각비
					구상채권 대손상각비
					미수재회및용역수익 대손상각비
					미수제재금수익 대손상각비
					미수부담금수익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기타국가 운영비용	대손상각비	미수연금수익 대손상각비
					미수이자수익 대손상각비
					미수보험수익 대손상각비
					미수보증수익 대손상각비
					미수사회보험수익 대손상각비
					미수기타수익 대손상각비

»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관리되고 있던 대손상각비를 발생원천인 대여금, 구상채권 및 미수채권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세부관리과목을 신설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평가손실	외화평가손실		자산평가손실	외화자산 평가손실	
	기타평가손실			기타자산 평가손실	
	외화평가손실		기타국가 운영비용	기타평가손실	외화부채 평가손실
	기타평가손실				기타부채 평가손실

» 기존의 외화평가손실, 기타평가손실을 평가 대상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계정과목을 신설하였다. 신설한 계정과목 중 외화자산평가손실, 기타자산평가손실의 회계과목을 자산평가손실로 하였고, 외화부채평가손실, 기타부채평가손실의 회계과목과 관리과목을 각각 기타국가운영비용, 기타평가손실로 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자산감액손실	기타자산 감액손실		기타국가 운영비용	감액손실	금융상품 감액손실
					정부출자금 감액손실
					기타금융자산 감액손실
					무형자산 감액손실
					기타자산 감액손실

» 기존 기타자산감액손실 관리과목을 발생 원천 자산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5개 세부관리과목을 신설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자산처분손실	단기투자증권 처분손실 장기투자증권 처분손실		기타국가 운영비용	자산처분손실	투자증권 처분손실

» 자산의 계정과목에 따라 처분손실 계정과목이 발생함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었던 투자증권처분손실을 투자증권처분손실 하나로 통합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시상금			
		경조금			
		건강진단비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	선물대	운영비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
		재해보상비			
		모임지원비			
		기타의기타 복리후생비			

» 기타복리후생비 하위 계정과목 구분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기타복리후생비로 통합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사무용품비				
	홍보물품비				
	소모성물품비				
소모품비	간행물비		운영비	소모품비	
	의료용품비				
	기계장치및 부품비				

» 소모품비 하위 계정과목 구분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소모품비로 통합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업무대행수수료				
	송금수수료				
	등기료법정 수수료				
	검정및시험 수수료				
	보관비				
지급수수료	운송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지급수수료
	상하차비				
	지급의료비				
	기타수수료				
	외주가공비				
	포장비				

» 지급수수료 하위 계정과목 구분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지급수수료로 통합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광고선전비	공고료및광고료		운영비	일반수용비	광고선전비
	견본비				

» 광고선전비 하위 계정과목 구분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광고선전비로 통합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전기료				
수도광열비	연료비		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수도광열비
	수도료				
	오물수거료				

» 수도광열비 하위 계정과목 구분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수도광열비로 통합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외주용역비	연구용역비		기타국가 운영비용	연구개발비	일반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용역비	일반연구개발 용역비			

» 외주용역비 항목 중 연구용역비와 연구개발비 항목 중 일반연구개발용역비를 일반연구용역비로 통합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이주보상비			
보전비	보상비	부상치료비	기타이전비용	보전비	손실보상비
		기타의보상비			

» 보상비 하위 계정과목 구분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손실보상비로 통합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기타국가 운영비용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시험연구재료비				

» 구분이 불명확한 시험연구비와 시험연구재료비를 시험연구비로 통합하였다.

11) 연금 회계처리지침

가) 예규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p>36. (연금비용의 측정) (1) 연금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중 지급액을 더하여 계산한다.</p> <p>(2) “연금비용”은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로 인식한다.</p>	<p>36. (사회보험비용의 측정) (1) 사회보험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중 지급액을 더하여 계산한다.</p> <p>(2) “사회보험비용”은 재정운영표의 프로그램총원가로 인식한다.</p>
<p>37. (연금수익의 구성) (1) 연금수익은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 등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국가, 고용주실체 및 연금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p> <p>(2) (1)에 따른 연금수익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p> <p>(가) 고용주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학교경영기관 또는 사용자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p> <p>(나) 국가기여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p> <p>(다) 피고용자기여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p> <p>(라) 보전금: 연금기금이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보조받는 금액</p>	<p>37. (사회보험수익의 구성) (1) 사학연금수익 및 국민연금수익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 국민연금기금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국가, 고용주실체 및 연금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p> <p>(2) (1)에 따른 사회보험수익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p> <p>(가) 고용주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학교경영기관 또는 사용자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p> <p>(나) 국가기여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p> <p>(다) 피고용자기여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p> <p>(라) 보전금: 연금기금이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보조받는 금액</p>

» 개정 전에는 연금비용, 연금수익 하위에 있던 국민연금비용, 사학연금비용, 국민연금수익, 사학연금수익을 개정 후에는 사회보험비용과 사회보험수익 하위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국민연금 관련 문단인 36, 37, 38 중 “연금비용”을 “사회보험비용”으로, “연금수익”을 “사회보험수익” 또는 “사학연금수익과 국민연금수익”으로 개정하였다.

개정 전	개정 후
<p>38. (연금수익의 인식) (1) 연금은 매달 부과고지에 의하여 징수를 하고 있다. 부과고지 시에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동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미수연금수익으로 자산 계상한다.</p> <p>(2) 고용주부담금, 국가기여금, 피고용자기여금은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하며, 보전금은 순자산변동표 또는 재정운영표에 “비교환수익 등”으로 인식한다.</p>	<p>38. (사회보험수익의 인식) (1) 사학연금수익과 국민연금수익은 부과고지 시점에 인식한다. <문단제정근거22로 이동></p> <p>(2) 고용주부담금, 국가기여금, 피고용자기여금, 보전금은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이전수익’,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의 경우 ‘비교환수익 등’으로 인식한다.</p>

» 문단 38(2)는 중요한 개정 사항 중 하나로, 사학연금수익, 국민연금수익의 하위 계정인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국가기여금(사학만 해당) 계정과목도 보전금과 같이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상 “비교환수익 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개정 전에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하라고 한 것과는 다른 회계처리이다.

개정 전	개정 후
<p>39. (퇴직수당부채의 인식 및 퇴직수당비용의 측정)</p> <p>(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퇴직수당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p> <p>(2) 퇴직수당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퇴직수당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퇴직수당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액을 더하여 계산한다.</p>	<p>39. (퇴직수당미지급금의 인식 및 사학퇴직수당비용의 측정)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퇴직수당미지급금”으로 인식한다.</p> <p>(2) 사학퇴직수당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퇴직수당미지급금”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퇴직수당미지급금”을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액을 더하여 계산한다.</p>

» 문단 39에서는 개정 전 “퇴직수당부채”, “퇴직수당비용”을 개정 후 실제 회계처리 시 사용하는 기표 계정과목인 “퇴직수당미지급금”, “사학퇴직수당비용”으로 수정하여 사학연금의 퇴직수당과 관련된 부채 및 비용을 명확히 표시하였다.



나) 계정과목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기타이전비용	사회보험비용	산재보험비용	사회보험비용	산재보험비용			
		고용보험비용		고용보험비용			
	연금비용	국민연금비용		국민연금비용			
		사학연금비용		사학연금비용			
	퇴직수당비용	사학퇴직수당비용		사학퇴직수당비용			
연금수익	국민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국민연금수익	국민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고용주부담금			
	사학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사학연금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고용주부담금			
	국가기여금	국가기여금					
사회보험수익	고용보험수익	피고용자기여금	사회보험수익	고용보험수익	피고용자기여금		
		고용주부담금		고용주부담금			
	환급금	고용보험수익 환급금		고용보험수익 환급금			
		피고용자기여금		피고용자기여금			
	산재보험수익	고용주부담금		산재보험수익	고용주부담금		
환급금	산재보험수익 환급금	산재보험수익 환급금					
기타유동부채	미지급금	연금미지급금	기타차입부채	미지급금	연금미지급금 /단기		
		퇴직수당 미지급금			퇴직수당미지급금 /단기		
장기미지급금	장기퇴직수당 미지급금						연금미지급금 /장기

» 개정 전 사회보험비용(4레벨) 하위에 있던 산재보험비용, 고용보험비용과 연금비용(4레벨) 하위에 있던 국민연금비용, 사학연금비용 및 퇴직수당비용(4레벨) 하위에 있던 사학퇴직수당비용 등 다섯 개 계정을 묶어 개정 후에는 사회보험비용(3레벨) 하위 계정으로 이전하였다.

- » 개정 전 연금수익(3레벨) 하위에 있던 국민연금수익, 사학연금수익을 개정 후에는 사회보험수익(3레벨) 하위로 이전하였다.
- » 연금미지급금, 퇴직수당미지급금은 개정 후 재정상태표에서 유동, 비유동 구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개정 전 3레벨에서 구분하던 유동, 장기 구분을 삭제하고 개정 후 기타차입부채(3레벨)-미지급금(4레벨) 하위 기표 계정인 5레벨에서 단기, 장기를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12) 용자 회계처리지침

가) 예규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p>2. (적용범위) 이 예규는 <신 설>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한다.</p>	<p>2. (적용범위) 이 예규는 용자 실행 시점에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한다.</p>
<p>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용자금”이란 공공기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 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정부 대여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을 통하여 대여하는 전대차관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을 말한다.</p> <p><신 설></p> <p>(2)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이란 용자금의 원금과 용자금 회수가능액의 순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말한다.</p> <p>(3) “회수가능액”이란 용자보조원가총당금 평가 시점에 용자금 원리금의 추정 순현금유입액을 말한다.</p> <p>(4) “유효이자율”이란 정상이자율로서 거래발생 당시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 및 지급조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체결된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이자율로서 거래 발생시점의 공정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의 유효이자율은 자산·부채의 공정가액과 당해 자산·부채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p>	<p>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용자금”이란 공공기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 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정부 대여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계정을 통하여 대여하는 전대차관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을 말한다.</p> <p>(2) “저리용자금”이란 용자 실행 시점에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제공한 용자금을 말한다.</p> <p>(3) “용자보조원가총당금”이란 저리용자금의 원금과 저리용자금 회수가능액의 순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말한다.</p> <p>(4) “회수가능액”이란 용자보조원가총당금 평가 시점에 저리용자금 원리금의 추정 순현금유입액을 말한다.</p> <p><삭 제></p>

- » 개정 후 용자 회계처리지침을 적용하는 범위를 설명하는 문단 2에서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용자를 제공했는지 판단하는 시점을 “용자 실행 시점”으로 명확히 하였다.

» 개정 전 문단 3(2), (3)에서 표시된 “용자금”을 개정 후에는 “저리용자금”으로 변경하였다. 대여금 하위 계정과목으로 일반용자금과 저리용자금을 구분하고 있기에 명확히 저리용자금으로 표시하였다. 이 수정은 문단 3 외에도 용자 회계처리지침 전반에서 이루어졌다.

나) 계정과목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Ⅲ	Ⅳ	Ⅴ	Ⅲ	Ⅳ	Ⅴ
단기대여금	단기용자금	단기저리용자금	대여금	저리 용자금	저리용자금/ 단기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단기용자금 대손충당금	단기용자보조 원가충당금			용자보조원가 충당금/단기
장기대여금	장기용자금	장기저리용자금			저리용자금/ 장기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장기용자금 대손충당금	장기용자보조 원가충당금			용자보조원가 충당금/장기

» 개정 전에는 3레벨에서 대여금 및 대손충당금, 단기 및 장기를 구분함에 따라 위의 표와 같이 각 레벨에서 계정명이 길었다. 개정 후에는 3레벨을 간단히 대여금으로 하고, 4레벨에서 저리용자금, 일반용자금 등으로 대여금의 종류를 구분하며, 5레벨에서 각 대여금 및 충당금, 단기 및 장기를 구분하는 것으로 계정 체계를 보기 편하게 변경하였다.

13)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

가) 예규 개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p>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국가회계실체”란「국가재정법」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동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p> <p>(2) “중앙관서”란「국가재정법」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p> <p>〈신 설〉</p> <p>(3) “폐지”란 「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p> <p>(4) “신설”이란 「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가 신규로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p> <p>(5) “직무”란 「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에 열거된 각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사무를 말한다.</p> <p>(6) “이관”이란 직무조정에 따라 국가회계실체 간 자산·부채의 관할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p> <p>〈신 설〉</p>	<p>3.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국가회계실체”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동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p> <p>(2) “중앙관서”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p> <p>(3) “정부조직개편”이란 「헌법」, 「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의 결과로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직무가 조정되는 것을 말한다.</p> <p>(4) “폐지”란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p> <p>(5) “신설”이란 정부조직개편으로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가 신규로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p> <p>(6) “직무”란 「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에 열거된 각 중앙관서 및 국가회계실체의 사무를 말한다.</p> <p>(7) “이관”이란 직무조정에 따라 국가회계실체 간 자산·부채의 관할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p> <p>(8) “정부조직개편일”이란 제·개정된 「헌법」, 「정부조직법」등 관련 법령의 시행일을 말한다.</p> <p>(9)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란 1월 1일에 시작하여 정부조직개편일 전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p> <p>(10)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란 정부조직개편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p> <p>(11)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란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p>

»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정의가 없어 개정 후 문단 3(3)에 “정부조직개편”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이 용어를 사용해 “폐지”, “신설”을 정의하고 있는 문단 3(4), (5)도 간결하게 수정하였다.

» “정부조직개편일” 정의가 없어서 개정 후 문단 3(8)을 신설했다.

» 개정 전 문단 9(개정 후: 8)에 있었던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 정의를 개편후 문단 3(9)로 이전해 “개편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정의를 신설하면서 개정 후 문단 8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해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하였다.

- » 개정 전 문단 10(개정 후: 9)에 있었던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 정의를 개편후 문단 3(10)으로 이전해 “개편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정의를 신설하면서 개정 후 문단 9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해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하였다.
- » 개정 전 문단 10(개정 후: 9)에 있었던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등” 정의를 개편후 문단 3(11)로 이전해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정의를 신설하면서 개정 후 문단 9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해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하였다.



02 2025년 2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보고

가. 출장 개요

목 적: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정례회의 참석
출장기간: 2025. 6. 9.(월) ~ 2025. 6. 17.(일) (5박 7일)
출 장 지: 토론토, 캐나다
출 장 자: 임정혁 특수전문직 2급



2025년 IPSASB 정례회의(2025.6. 토론토)

나. 주요 내용

● 측정 - 적용단계(Measurement - Application Phase)

IPSASB는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측정과 관련된 지침들을 단일 기준서에 모으고 IPSASB 개념체계와 개별 IPSAS 기준서의 측정 규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Measurement)’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2023년 5월에 IPSAS 46, Measurement를 발표하였다. IPSAS 46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공공부문실체가 운영역량(operational capacity)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 적용 가능한 공공부문 특유의 현행가치 측정기준으로서 ‘현행운영가치(Current Operational Value, 이하 COV)’를 새로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그 후 IPSASB는 후속 프로젝트로 ‘측정 - 적용단계(Measurement - Application Phase)’ 프로젝트를 2023년 3월부터 추진하여 오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IPSAS 46의 개발 과정에서 이미 COV의 적용가능성 검토를 마친 유형자산 외에 현행가치로 후속 측정이 허용된 자산들을 대상으로 COV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제이다. 2024년 8월에 발표된 ED 90, 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Amendments to IPSAS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IPSAS 46, Measurement)은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물이며, IPSASB는 120일 간의 공개 자문을 통해 ED 90이 제안하는 다음 개정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1 ED 90의 주요 개정 사항

개정 사항 그룹	주요 개정 사항
Part 1	• IPSAS 12, 재고자산 및 IPSAS 31, 무형자산에서 적용 가능한 최초 및 후속 측정기준 중 하나로 COV를 추가하는 것
Part 2	• IPSAS 21,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에서 회수가능서비스금액(recoverable service amount)의 정의 개선
Part 3	• IPSAS 46과 일치하는 '회계추정' 정의를 IPSAS 3,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추가
Part 4	• IPSAS 기준서의 현행가치 측정 관련 공시사항들의 일관성 제고

이번 2025년 6월 정례회의에서는 주로 IPSAS 31, 무형자산의 개정 사항에 대한 논의를 분리하여 별도의 신규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방안, 그리고 ED 90에 대한 응답자 의견 중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회의 결과 IPSASB는 무형자산에 대한 현행가치 측정기준으로서 COV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지지가 충분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IPSAS 31에 대한 개정 사항은 별도의 프로젝트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최종 공표문(Final Pronouncement), 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을 최종 승인하고 그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확정하였다.

표 2 측정 - 적용단계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내용 요약

■ 안건 3: 측정 - 적용단계(Measurements - Application Phase)	
안건 항목	내용
	SMC 1 - IPSAS 31, 무형자산의 COV 적용가능성
	[Staff 권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IPSASB가 IPSAS 31에 대한 측정 관련 제안사항을 사전에 결정된 바 있는 무형자산에 대한 한정 범위 프로젝트 형식으로 다룰 것을 권고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IPSAS 31의 측정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최초 측정: 무형자산을 비교환거래로 취득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무형자산을 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 (b) 후속 측정: 역사적원가 모형과 현행가치 모형 중에서 실체가 선택한 모형에 따라 매 보고일마다 무형자산을 역사적원가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 • ED 90, 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의 Part 1은 IPSAS 31의 최초 및 후속 측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며, SMC 1은 이러한 제안의 적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COV를 비교환거래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최초 측정 시 적용 가능한 측정기준으로 반영 (b) 무형자산의 주된 보유 목적에 따라 적절한 현행가치 측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현행가치 모형에 COV를 추가 • 2025년 3월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무형자산의 광범위한 재무보고 현황(landscape)을 고려하면서 다음을 위한 권고사항을 개발하도록 Staff에게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무형자산의 최초 및 후속 측정 시 COV 적용을 요구하는 ED 90의 Part 1의 제안을 유지할 것 (b) 무형자산에 대한 IPSASB의 한정 범위 프로젝트로서 IPSAS 31에서의 COV 적용가능성을 심의할 것 (c) IPSAS 31의 개정을 연기할 것
3.2.1	
	[분석]
	SMC 1 응답 결과 - IPSAS 31 내 COV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C 1 동의자의 주된 논거 및 주목할 만한 언급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공공부문실체의 핵심 목표(현금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공)와 자산의 측정치가 일관성을 갖게 되며, 운영역량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를 공정가치보다 더 잘 반영함 (b) IPSASB 개념체계 제7장 및 IPSAS 46에 따른 측정 원칙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 다르게 적용할 객관적 근거가 없음 (c) COV 적용의 판단 기준 및 산정방법, 원가 기법을 통한 COV 추정 방법, 전문화된 무형자산 관련 COV 측정 방법에 관한 비강제 지침 추가 제공이 필요함 • SMC 1 비동의자(소수의견 동의자 포함)의 주된 논거 및 주목할 만한 언급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AS 38, 무형자산의 무형자산 인식·측정 원칙 개정 완료 후에 COV 적용가능성 논의 필요 (b) 활성화 시장 관련 제한 규정의 부재는 무형자산의 현행가치 측정치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고 후속 측정 시 연구비용의 자본화를 유도하게 될 수 있음

표 2 의 계속

■ 안건 3: 측정 - 적용단계(Measurements - Application Phase)

안건 항목	내용
	(c) COV가 당초 유형자산을 위해 개발된 점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COV 원칙을 무형자산에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d) 국가들의 기존 측정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또는 국방자산의 현행가치 평가 시 뒷받침할 수 있는 가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등 국가별 · 실체별 특수성에 따른 이슈 발생 가능함

[응답 분석]

• SMC 1에 대한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음

구분	총 26개 의견서				
	ED 90	동의	부분동의	부동의	무응답
SMC 1 -IPAS 31		14개(54%)	-개(-%)	8개(31%)	4개(15%)

- 상당수의 응답자가 소수의견(Alternative View)에 언급된 근거를 바탕으로 ED 90의 제안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동의하지 않거나 이슈를 제기한 응답자들의 의견에서 두 가지의 공통점이 발견됨
 - (a) ED 90에서 제안한 지침은 활성화된 시장을 참조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가접근법으로 무형자산의 후속측정 시 COV를 추정할 때 그 신뢰성과 표현의 충실성 측면의 불확실성이 존재함
 - (b) IAS 38에 관한 포괄적인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이후에 IPSAS 31에서의 COV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을 선호함
- 결과적으로 응답자들은 IPSAS 31에서의 COV 적용이 실체의 회계책임성 유지 및 의사결정 목적에 유용한 방법으로 더 나은 목적적합한 측정치 정보를 표시하도록 유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견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IPSASB는 ED 90의 제안사항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들이 제기한 이슈들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향후 계획(안)]

- Staff는 IPSASB가 ED 90의 측정 관련 제안사항을 IPSAS 31에 관한 기정의 한정 범위 프로젝트(pre-committed limited-scope project)로 다룰 것을 제안함
- IPSASB는 2022년 5월 회의에 가용자원이 확보되는 2023년부터 IPSAS 31에 관한 한정 범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미리 결정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IPSAS 31에 다음을 반영하기로 계획한 바 있음
 - (a) ED 77, 측정과 연관되어 개발되는 측정 원칙
 - (b) ED 78, 유형자산과 연관되어 개발되는 유산 관련 원칙
 - (c) 천연자원 프로젝트의 진행 결과에 따른 원칙 개정 사항
- Staff는 이러한 접근법이 ED 90에서 강한 지지를 받은 일부 지침의 적시성 있는 발간을 가능케 하면서도 IPSAS 31에 대한 COV 적용가능성을 재평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함

표 2 의 계속

■ 안건 3: 측정 - 적용단계(Measurements - Application Phase)							
안건 항목	내용						
	ED 90에 대한 응답자의 기타 의견 분석						
	[Staff 권고사항] • Staff는 IPSASB에 다음과 같이 진행할 것을 제안 (a) 부록 A.1에 요약된 응답자들의 제안사항을 채택하여 ED 90의 제안사항을 개선할 것 (b) 부록 A.2 및 부록 A.3에 요약된 응답자 제안사항은 채택하지 않을 것						
	[배경] • 안건 3.2.2는 ED 90의 의견요청사항(SMC)과 관계없는 응답자들의 제안사항을 분석한 것임						
	[부록 A.1] • 응답자 의견 중 Staff가 최종 공표문의 수정이 필요한 사안						
	<table border="1"> <thead> <tr> <th>응답자 의견</th> <th>Staff 분석 결과</th> </tr> </thead> <tbody> <tr> <td> 측정모형의 변경의 의미 • IPSAS 3 문단 40의 개정 사항에서 측정기준의 변경이 회계정책의 변경 혹은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음 </td> <td> • IPSASB는 ED 90을 통해 IPSAS 3과 IPSAS 45의 해당 부분을 일치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음 • IPSAS 45 문단 28은 현행가치 모형 내에서의 측정기준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임을 명확히 설명(측정기준의 변경은 자산 보유목적의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 → IPSAS 45에 맞게 IPSAS 3 문단 40에서도 측정기준의 변경이 회계추정의 변경임을 본문에 명시할 것을 제안 </td> </tr> <tr> <td> 순실현가능가치(NRV)로 측정된 재고자산의 현행가치 측정치 관련 공시사항 • IPSAS 12에 COV 관련 공시사항은 추가되었으나,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유사한 공시사항이 없음 </td> <td> • 현행가치 측정치 공시사항(CVMDs)은 현행가치 모형 중에서 이용 가능한 측정기준으로 측정된 자산 및 부채에 대해 요구되는 공시사항임 • COV와 달리 NRV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측정기준이 아님 → IPSAS 12의 결론도출근거(BC)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언급할 것을 제안 </td> </tr> </tbody> </table>	응답자 의견	Staff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변경의 의미 • IPSAS 3 문단 40의 개정 사항에서 측정기준의 변경이 회계정책의 변경 혹은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음	• IPSASB는 ED 90을 통해 IPSAS 3과 IPSAS 45의 해당 부분을 일치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음 • IPSAS 45 문단 28은 현행가치 모형 내에서의 측정기준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임을 명확히 설명(측정기준의 변경은 자산 보유목적의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 → IPSAS 45에 맞게 IPSAS 3 문단 40에서도 측정기준의 변경이 회계추정의 변경임을 본문에 명시할 것을 제안	순실현가능가치(NRV)로 측정된 재고자산의 현행가치 측정치 관련 공시사항 • IPSAS 12에 COV 관련 공시사항은 추가되었으나,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유사한 공시사항이 없음	• 현행가치 측정치 공시사항(CVMDs)은 현행가치 모형 중에서 이용 가능한 측정기준으로 측정된 자산 및 부채에 대해 요구되는 공시사항임 • COV와 달리 NRV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측정기준이 아님 → IPSAS 12의 결론도출근거(BC)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언급할 것을 제안
응답자 의견	Staff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변경의 의미 • IPSAS 3 문단 40의 개정 사항에서 측정기준의 변경이 회계정책의 변경 혹은 회계추정의 변경인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음	• IPSASB는 ED 90을 통해 IPSAS 3과 IPSAS 45의 해당 부분을 일치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음 • IPSAS 45 문단 28은 현행가치 모형 내에서의 측정기준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임을 명확히 설명(측정기준의 변경은 자산 보유목적의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 → IPSAS 45에 맞게 IPSAS 3 문단 40에서도 측정기준의 변경이 회계추정의 변경임을 본문에 명시할 것을 제안						
순실현가능가치(NRV)로 측정된 재고자산의 현행가치 측정치 관련 공시사항 • IPSAS 12에 COV 관련 공시사항은 추가되었으나,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된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유사한 공시사항이 없음	• 현행가치 측정치 공시사항(CVMDs)은 현행가치 모형 중에서 이용 가능한 측정기준으로 측정된 자산 및 부채에 대해 요구되는 공시사항임 • COV와 달리 NRV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측정기준이 아님 → IPSAS 12의 결론도출근거(BC)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언급할 것을 제안						
3.2.2							

표 2 의 계속

■ 안건 3: 측정 - 적용단계(Measurements - Application Phase)			
안건 항목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응답자 의견</th> <th>Staff 분석 결과</th> </tr> </thead> </table>	응답자 의견	Staff 분석 결과
응답자 의견	Staff 분석 결과		
<p>간주원가의 추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환거래로 받은 재고자산의 간주원가를 산정할 때 어떤 현행가치 측정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환거래로 취득한 자산의 간주원가 산정에 관하여는 IPSAS 12와 IPSAS 45 모두 IPSAS 46을 상호 참조하고 있음 · IPSAS 46 문단 23~문단 31은 목적에 따른 측정기준의 선택에 대해 구별하지 않고 개별 현행가치 측정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IPSAS 46의 실무적용지침(IG)에 최초 측정 시점에 간주원가를 산정할 때 적절한 현행가치 측정기준의 선택 기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 		
<p>경과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45의 COV 도입 관련 경과규정과 일관성을 갖도록 IPSAS 12에도 ED 90의 Part 1 개정 사항의 적용 관련 경과규정을 추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공표문의 시행일 문단이 수정되었으며, IPSAS 3에 따른 소급법 적용에 관한 참조 문구도 삭제되었음 · 측정 적용단계 프로젝트의 범위 내에 있는 다른 IPSAS 기준서에 대한 개정 사항을 전진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IPSAS 16을 전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IPSASB의 의결 사항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음 → 최종 공표문의 시행일 문단들에 대한 관련 개정 제안 		
<p>경상적(recurring), 비경상적(non-recurring) 문구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 및 비경상 측정' 용어 설명이 중요함. 특히 자산의 장부가액이 일반적으로 현행가치가 아닌 것으로 기록되는 경우 작성자들이 그 개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ED 90 개발 당시 현행가치 측정기준이 최초 측정 이후에 경상적 혹은 비경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는 각 관련 IPSAS 기준서에서 명시하는 것을 전제로, 현행가치 측정치 공시사항(CVMDs)에서는 이러한 '경상 및 비경상' 문구를 삭제할 것을 결정한 바 있음 · CVMD 내에서 그러한 용어가 사용되지 않음에도 응답자의 의견과 같이 이러한 문구에 대한 설명을 CVMD에 포함시킬 경우 혼동이 발생할 수 있음 		

표 2 의 계속

■ 안건 3: 측정 - 적용단계(Measurements - Application Phase)													
안건 항목	내용												
	<p>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의 승인</p> <p>[Staff 권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IPSASB에 다음을 권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Amendments to IPSAS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IPSAS, Measurement)의 개발 과정에서 공식 제정 제정 절차(Due Process and Working Procedures)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는 IPSASB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의 주장에 근거하여 승인 여부를 표결할 것 (b)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정할 것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이해관계자의 응답에 대한 검토 및 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의 최종 공표문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음 • 이 안건은 이 개정 사항의 개발 과정에서 공식 제정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점을 개괄하고, IPSASB의 최종 공표문 승인을 돕기 위해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가 승인 준비를 마친 최종 공표문(안)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그 후의 IPSASB 승인을 돕기 위한 필수 단계를 IPSASB의 Due Process and Working Procedures에서 정하고 있음 • 공식 제정 절차상의 주요 활동 결과는 다음과 같음 												
3.2.3	<table border="1"> <thead> <tr> <th>절차</th> <th>주요 활동 결과</th> </tr> </thead> <tbody> <tr> <td>(a) Staff가 공개된 국제 기준의 개정 내용을 IPSASB에 제출</td> <td>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의 최종 공표문 참조(안건 3.3.1)</td> </tr> <tr> <td>(b) IPSASB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가 공식 제정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해 조언</td> <td>IPSASB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는 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의 개발 과정에서 공식 제정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고 주장함</td> </tr> <tr> <td>(c) IPSASB는 공식 제정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 확인</td> <td>IPSASB 의장이 IPSASB에 공식 제정 절차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td> </tr> <tr> <td>(d) IPSASB는 약관에 따라 개정 사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표결</td> <td>Staff는 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의 승인을 권고</td> </tr> <tr> <td>(e) IPSASB는 재공개에 대한 표결이 필요할 정도로 공개된 문서의 상당한 수정이 있었는지를 고려</td> <td>Staff는 IPSASB의 재공개(re-exposure) 표결을 요할 정도의 상당한 수준의 수정이 없었음을 확인</td> </tr> </tbody> </table>	절차	주요 활동 결과	(a) Staff가 공개된 국제 기준의 개정 내용을 IPSASB에 제출	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의 최종 공표문 참조(안건 3.3.1)	(b) IPSASB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가 공식 제정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해 조언	IPSASB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는 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의 개발 과정에서 공식 제정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고 주장함	(c) IPSASB는 공식 제정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 확인	IPSASB 의장이 IPSASB에 공식 제정 절차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	(d) IPSASB는 약관에 따라 개정 사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표결	Staff는 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의 승인을 권고	(e) IPSASB는 재공개에 대한 표결이 필요할 정도로 공개된 문서의 상당한 수정이 있었는지를 고려	Staff는 IPSASB의 재공개(re-exposure) 표결을 요할 정도의 상당한 수준의 수정이 없었음을 확인
절차	주요 활동 결과												
(a) Staff가 공개된 국제 기준의 개정 내용을 IPSASB에 제출	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의 최종 공표문 참조(안건 3.3.1)												
(b) IPSASB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가 공식 제정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해 조언	IPSASB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는 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의 개발 과정에서 공식 제정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고 주장함												
(c) IPSASB는 공식 제정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 확인	IPSASB 의장이 IPSASB에 공식 제정 절차에 대한 확인을 요청함												
(d) IPSASB는 약관에 따라 개정 사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표결	Staff는 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의 승인을 권고												
(e) IPSASB는 재공개에 대한 표결이 필요할 정도로 공개된 문서의 상당한 수정이 있었는지를 고려	Staff는 IPSASB의 재공개(re-exposure) 표결을 요할 정도의 상당한 수준의 수정이 없었음을 확인												

표 2 의 계속

■ 안건 3: 측정 - 적용단계(Measurements - Application Phase)							
안건 항목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절차</th> <th>주요 활동 결과</th> </tr> </thead> <tbody> <tr> <td>(f) IPSASB는 개정 사항의 적용을 위한 시행일을 설정</td> <td>Staff는 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의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설정할 것을 권고</td> </tr> <tr> <td>(g) IPSASB는 공개초안에 대해 수취한 의견과 관련된 결론도출근거를 발행</td> <td>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의 결론도출근거 참조(안건 3.3.1)</td> </tr> </tbody> </table>	절차	주요 활동 결과	(f) IPSASB는 개정 사항의 적용을 위한 시행일을 설정	Staff는 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의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설정할 것을 권고	(g) IPSASB는 공개초안에 대해 수취한 의견과 관련된 결론도출근거를 발행	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의 결론도출근거 참조(안건 3.3.1)
절차	주요 활동 결과						
(f) IPSASB는 개정 사항의 적용을 위한 시행일을 설정	Staff는 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의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설정할 것을 권고						
(g) IPSASB는 공개초안에 대해 수취한 의견과 관련된 결론도출근거를 발행	IPSAS 46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의 결론도출근거 참조(안건 3.3.1)						
[IPSASB 의결사항]							
•상기 Staff의 권고사항에 동의하는지?							

2.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천연자원’ 프로젝트는 천연자원의 인식과 측정, 표시 및 공시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별도의 IPSAS 기준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IPSASB의 재무보고 프로젝트이다.

천연자원은 많은 국가에서 총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부와 유산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음에도 현재 IPSAS 문헌에서 ‘천연자원’이라는 용어조차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IPSASB는 2019~2023 업무계획서에 천연자원 프로젝트를 새로운 프로젝트 목록에 추가하기로 결정한 뒤, 2019년 공공부문기준제정자포럼(Public Sector Standard Setters Forum) 및 자문위원회(Consultative Advisory Group)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지지를 얻어 지난 2020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IPSASB는 2022년 5월에 발간된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2024년 10월에 ED 92, 유형의 천연자원(Tangible Natural Resources)을 발표하고 이후 120일에 걸친 공개 자문을 진행하였다. ED 92는 천연자원을 ‘자연적으로 발생한 항목으로서 서비스 잠재력 또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능력, 또는 둘 다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과 실체가 의도한 천연자원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기준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번 2025년 6월 회의에서 IPSASB는 ED 92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IPSASB는 논의를 통해 천연자원에 관한 지침을 별도의 독립된 기준서로 제정할 것을 확정하였다. 또한 이 기준서의 적용 대상을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으로 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보전'의 개념이 어떻게 서비스 잠재력과 연관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IPSASB는 정례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IPSAS 기준서 초안에 대해 2025년 9월 정례회의에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표 3 천연자원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내용 요약

■ 안건 4: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지침의 위치에 대한 의견 분석(Analysis of Comments Regarding the Location of Guidance)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9월 IPSASB는 천연자원에 관한 지침을 별도의 독립된 기준서로 제정할 것인지 혹은 기존의 IPSAS 기준서에 포함할 것인지를 논의함. 이에 대해 천연자원 TF가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별도의 독립된 기준서로 발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IPSASB와 자문단 모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동의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지속가능성 보고 이니셔티브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면 천연자원의 보고는 중요한 주제 영역임. 따라서 공익 관점에서 볼 때 이해관계자들은 천연자원에 대한 별도의 독립된 기준서를 기대할 것임 (b) 실무적 관점에서는 지침을 별도의 기준서로 두는 것이 적용에 더 용이함.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은 일반적인 회계나 재무보고 역할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예상되므로 천연자원에 대한 지침이 기존의 여러 기준서에 포함될 경우, 이들이 해당 지침을 찾기 어려울 수 있음 (c)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IPSAS 기준서(IPSAS 45, 유형자산)를 사용하여 일반목적재무보고서(GPFS)에 천연자원을 보고하나 이러한 접근법이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다만 TF는 현재의 IPSAS 기준서 범위에는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천연자원이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많은 지지를 얻었음 • 이에 근거하여 IPSASB는 천연자원에 관한 지침을 별도의 기준서로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독립적인 공개초안의 형태로 개발하여 ED 92(유형 천연자원)를 작성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일부는 해당 지침을 IPSAS 45와 같이 기존의 IPSAS 기준서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음
4.2.2	
	[Staff 권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천연자원에 대한 지침을 별도의 독립적인 IPSAS 기준서로 제정할 것을 제안함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천연자원에 대한 지침을 기존의 IPSAS 기준서에 포함하여야 할지에 대해 논의한 의견서를 다시 검토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유형 천연자원에 대한 지침을 별도의 독립된 기준서로 제정하고자 한 결정은 다음의 이유로 타당하다고 판단함

표 3 의 계속

■ 안건 4: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지침의 위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의견서들은 ED 92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IPSASB가 고려한 사항 이외에 새로운 요인을 제시하지 않음 (b)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는 여전히 유형 천연자원을 기존 IPSAS 기준서(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 범위 내의 다른 자산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간주함. IPSASB가 이러한 자산의 정의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므로, 천연자원에 대한 별도의 기준서가 필요할 것임 (c) 일부 응답자들은 최종 IPSAS 기준서의 범위가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으로 한정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함. 보전 목적의 천연자원은 기존 IPSAS 기준상의 다른 자산과는 그 용도가 고유하고 구별되므로 별도의 기준서가 필요함을 지적함 (d) 재무제표에서 인식될 유형 천연자원이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일부 응답자들은 IPSASB가 비재무보고 지침만을 개발해야 함을 언급함.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GPFS를 위한 회계처리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향후 보다 광범위한 GPFS를 위한 지침 개발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e) 주제의 중요성과 적용의 용이성 등 공익적 차원에서 천연자원 지침을 별도의 IPSAS 기준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중요한 이유가 존재함 <p>• 또한 라운드테이블 등의 외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침의 위치에 관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자의 97%가 천연자원에 대한 지침을 별도의 독립 기준으로 두는 것에 찬성함. Staff가 응답자별로 위와 같이 찬성하는 이유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러한 높은 지지율은 별도 기준서를 제정하여야 하는 근거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됨</p>
	최종 IPSAS 기준의 적용범위(Scope)
	[Staff 권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천연자원에 대한 IPSAS 기준 최종안의 적용범위를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 (Tangible Natural Resources held for conservation)으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함
	[배경]
4.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92(유형 천연자원)에서는 유형 천연자원의 정의에 부합하지만 다른 IPSAS 기준서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본 공개초안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제시함. 이러한 잔여 범위 접근법(residual scoping)은 자산에 대한 다른 IPSAS 기준서들의 범위 설정 방식과 다른 새로운 접근임. 이에 따라 IPSASB는 이러한 범위 설정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한 의견요청사항(SMC) 1을 공개초안에 포함하였음 • 또한 ED 92의 개발 과정에서 IPSASB는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이 공개초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자원 중 하나라고 판단한 바 있음. IPSASB는 그 외에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SMC 1에서 이에 대해 질의함 • SMC 1은 ED 92의 범위가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대안적 견해에 대해서도 언급함. 이 견해에 따르면 제안된 정의뿐만 아니라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관한 지침도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공개초안이 수정되어야 함
	수렴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응답자들은 이상과 같은 ED 92의 범위 설정 방식에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대다수 응답자는 ED 92에서 제안한 범위에 동의하지 않음

표 3 의 계속

■ 안건 4: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92에서 제안한 범위에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ED 92가 IPSASB가 규정하는 자산의 정의 혹은 자산 인식 기준에 기반한 내용임을 우려함(천연자원의 특성은 현재 개념체계에 따른 정의 및 인식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ED 92의 목적은 IPSASB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유형 천연자원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개념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함. 한편 일부 응답자들은 개념체계의 한계를 고려할 때 회계처리 지침 개발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일반목적재무제표(GPFS)가 아닌 일반목적재무보고(GPFR)의 차원에서 천연자원 보고 지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안건 4.2.5 참고) •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 이외에 ED 92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잠재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없다고 답변함. 일부 응답자는 전자파 스펙트럼 사용권이 나 지열 발전에 이용될 수 있는 지형 등의 예시를 제시하였으나 모두 기존의 IPSAS 기준서(IPSAS 31, 무형자산과 IPSAS 45, 유형자산)에서 다루는 항목으로 확인됨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적 견해를 지지한 응답자들이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ED 92에 명시된 내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대안적 견해를 제시한 IPSASB 위원들은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천연자원 외에 ED 92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유형 천연자원을 찾을 수 없었음을 밝힘. ED 92의 개발 과정에서 IPSASB는 보전 목적 외에도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개방형 범위 설정(open-ended scoping approach)이 제안됨. 다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는 ED 92의 범위에 부합하는 다른 자원은 없다고 응답함. 또한 기타 간담회 및 외부 행사 참석자들 역시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b) 잔여 범위 접근법(residual scoping approach)은 부적절한 회계처리 등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예를 들어 공정가치 측정 지침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천연자원에 적용하게 되는 위험이 존재함. 이와 같이 보존 목적의 유형 천연자원에 특화된 사항이 다른 유형의 천연자원에 적용될 경우,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발생할 수 있음 (c) IPSAS 자산 관련 기준의 범위는 대체로 자산의 용도와 특성에 기반하여 정의됨. 예를 들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 타인에게 임대 혹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며, 한 기간 이상의 회계기간 동안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IPSAS 45의 범위에 포함됨. 반면 생산 과정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소비될 자재나 물품, 또는 일상적인 유통 과정에서 보유되거나 유통을 위해 생산 중인 자산은 IPSAS 12,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됨. 따라서 다른 IPSAS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재무보고 요구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의 범위 내에서 자산의 용도와 특성이 명확하여야 함 (d) 잔여 범위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실체는 ED 92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IPSAS 기준의 범위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고려하여야 함. 이는 상당한 노력을 요하며 해당 기준 초안의 적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e) 대안적 견해에서는 또한 보존 목적 유형 천연자원의 고유한 용도와 특성에 기반하여 기준의 범위를 설정하여 해당 지침을 독립된 IPSAS 기준으로 제정하는 것을 정당화하여야 함을 제시함 • 상기 언급된 사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일부 응답자들은 자연을 보전하고 천연자원의 수탁자로서 기능하는 공공부문의 고유한 역할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ED 92가 보존 목적 유형 천연자원에 특화되어야 함을 지적함 (b) 또 다른 일부 응답자들은 잔여 범위 접근법은 ED 92의 기술적 이해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IPSAS 기준의 적용가능성의 검토를 요하므로 이에 수반되는 구현 비용이 매우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함

표 3 의 계속

■ 안건 4: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p>(c) 일부 응답자들은 ED 92가 내부적으로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함. 이들에 따르면 강제 지침은 마치 모든 유형 천연자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처럼 읽히나, 실무적용지침과 예시 사례는 보존 목적 천연자원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에 따르면 보존 목적의 천연자원 외에 ED 92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유형 천연자원을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은 매우 중요함. 이는 ED 92에서 잔여 범위 접근법을 제안했던 핵심적인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임. 만약 ED 92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것은 앞서 지적된 문제들을 초래하며 실질적인 이점은 거의 없음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Staff는 기존의 최종 적용범위를, 보존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에 한정할 것을 권고하며 그 효과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다른 IPSAS 기준의 범위 요건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존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최종 IPSAS 기준을 보다 직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잠재적인 비용과 복잡성을 줄일 수 있음 (b)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일반적 지침에서 비롯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위험과 ED 92 내부의 잠재적인 비일관성을 제거할 수 있음 (c) 보존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에 관한 지침을 별도의 독립된 IPSAS 기준으로 제정할 수 있는 논거를 강화함 (d) 다른 IPSAS 기준에서 사용된 범위 설정 방식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e) 자연의 보존에 있어 공공부문이 수행하는 고유한 역할을 강조할 수 있음
	<p>후속 개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가 Staff의 권고를 수용하는 경우, 최종 IPSAS 기준이 내부적으로 일관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보존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야 함(안건 4.2.4 참조) (b) '보존' 개념의 설명을 정의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하고, 보존 목적 자원과 그 외 용도의 자원 간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함 (c) 최종 기준의 제목과 인식 및 측정 지침을 개정하여 보존 목적의 천연자원만을 명확히 다루도록 함(예: 재정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에 대한 지침은 삭제) • 최종 IPSAS 기준의 개정된 문헌은 차기 회의에서 IPSASB에 보고될 예정임
	<p>보존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의 정의(Definition of Tangible Natural Resources Held for Conservation)</p>
	<p>[Staff 권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92의 '보존'에 대한 설명과 유형 천연자원의 정의를 결합하여 '보존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할 것을 제안 • '보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보존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과 다른 용도로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의 차이를 설명할 것을 제안 • 유형 천연자원을 '자연적으로 존재함(naturally occurring)'으로 간주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
4.2.4	

표 3 의 계속

■ 안건 4: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92는 천연자원을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서비스 잠재력 또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항목'으로 정의함. 유형 천연자원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천연자원을 의미하며, 또한 ED 92의 적용지침은 보전을 유형 천연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호하는 행위로 설명함 공개초안에 대한 두 번째 의견 요청사항에서는 천연자원 및 유형 천연자원에 대한 ED 92의 정의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약 57%는 이러한 정의에 동의하거나 일부 동의하였고, 35%는 동의하지 않음 정의에 일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보전'이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것이 실무에서 다른 자산의 사용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일부 응답자들에 따르면 보전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과 기타 자산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ED 92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b) 유형 천연자원이 반드시 '자연적으로 발생(naturally occurring)'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일부 응답자들에 따르면 보전 활동에는 추가적인 유형 천연자원의 도입이나 적극적 관리(예: 서식지 복원의 일환으로 나무 심기 등)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활동은 ED 92상의 정의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음 ED 92에서 제안된 정의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응답자들은 지침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안적 견해(ED 92의 범위를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형 천연자원의 정의 또한 보전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을 제시함
	<p>[분석]</p> <p>새로운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B가 최종 기준서의 범위를 '보전'에 중점을 두도록 수정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안건 4.2.3 참조), 이해관계자들은 유형 천연자원의 정의도 보전을 언급하도록 수정이 필요함을 지적함. 이러한 접근법은 자산의 사용 목적에 따라 자산을 정의하는 여러 IPSAS 기준서의 방식과 일치함. 예를 들어 IPSAS 45, 유형자산에서는 유형자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재화나 용역의 생산, 타인에게 임대 또는 행정 목적으로 보유되는 유형의 자산으로, (b) 둘 이상의 보고 기간에 걸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IPSAS 기준 전반에서 자산의 정의가 구성되는 방식에 근거하여 Staff는 보전의 개념과 연계된 유형 천연자원의 정의가 필요함에 동의함. 즉 ED 92과 같이 보전의 개념을 적용지침 내에서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음 Staff는 또한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의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는 안과 ED 92의 천연자원 및 유형 천연자원 정의를 수정하여 보전 개념을 포괄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함. ED 92에서 제안된 정의를 개발하던 시점에는 무형의 자원에 관한 지침의 발간 가능성을 고려, 천연자원의 일반적 정의와 유형 천연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구분하였음.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ED 92의 일반적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향후 더 광범위한 일반목적재무보고서(GPFR)에서 보고될 다른 유형의 천연자원에 대한 지침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임. 이에 근거하여 Staff는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개발하는 것을 제안함

표 3 의 계속

■ 안건 4: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p>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서 배경 문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ED 92에 포함된 보전의 설명은 보전이 자산의 다른 용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하지 못함. 한 응답자가 지적한 바로는 보전이 갖는 IPSAS 12(재고자산), IPSAS 16(투자부동산), IPSAS 27(농업), IPSAS 45에서 다루는 자산의 용도와의 핵심적인 차이는 다른 IPSAS 지침의 경우 자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다는 점에 있음. 예를 들어 IPSAS 16의 시세차익의 경우 해당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야만 경제적 효익이 실현되므로 이를 적극적인 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음. 반면 천연자원의 보전은 서비스 잠재력의 수동적인 흐름만을 가져올 뿐 자원의 적극적 사용이나 소비를 수반하지 않음 • 이에 근거하여 Staff는 최종 IPSAS 기준서에 다음과 같은 정의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보전을 위해 보유하는 유형 천연자원이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위한 자산의 적극적 사용이나 소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되는 유형 천연자원을 말함 <p>자연적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이라는 개념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함. 해당 개념은 천연자원 및 유형 천연자원을 식별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ED 92의 일반적 정의를 유지하는 경우 '자연적 발생' 개념 또한 같이 유지되어야 함 • 유형 천연자원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외부에서 새롭게 투입되었을지라도 자산 인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원가는 유형 천연자원의 일부로서 자본화할 수 있음. 따라서 이상과 같은 자원 또한 최종 기준서의 범위에 포함될 것임. 이러한 논리는 적용지침에서 더 명확히 설명할 예정임
	<p>프로젝트 목적의 명확화, 기대 격차 및 개념체계 관련 논점(Clarification of Project Objectives, Expectation Gaps, and Various Aspects of the Conceptual Framework)</p>
	<p>[Staff 권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자원에 관한 IPSAS 기준의 목적과 향후 더 광범위한 GPFR의 보고를 위한 지침 개발 가능성을 결론도출근거에서 설명하도록 권고함 • 적용지침과 실무적용지침을 수정하여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요건이 다른 IPSAS 기준 및 개념체계와 일치함을 명확히 하고, 원주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할 것을 권고함 • 유형 천연자원의 관리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공시하는 요건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 <p>4.2.5 • 유형 천연자원의 보전이 IPSASB 개념체계상의 서비스 잠재력으로 이어지는 방식에 대해 결론도출근거에서 설명할 것을 권고함</p>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92의 초안과 관련하여 IPSASB는 천연자원 프로젝트의 목적, 기대 격차(expectation gaps), 인식 및 측정 지침의 수정 제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함 • 이러한 의견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 유형 천연자원이 매우 적을 것임을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GPFS) 내에서 보고하기 위한 회계처리 지침의 개발은 유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이와 같이 지적한 응답자들은 더 넓은 범위의 일반목적재무보고(GPFR)의 관점에서 지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

표 3 의 계속

■ 안건 4: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p>(b) 다른 응답자들은 미추출 지하자원(unextracted subsoil resources)을 포함한 더 많은 유형의 천연자원을 GPFS에 자산으로 인식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함:</p> <p>(i) 통제(control) 개념에 대하여 혹은 그 대신에 관리책임(stewardship) 또는 주권(sovareignty)과 같은 개념에 기반하여 유형 천연자원을 인식할 것. 일부 응답자들은 이러한 통제에 관한 판단이 유엔 원주민권리선언(UNDRIP)에 따른 원주민의 관점과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함</p> <p>(ii) 과거 사건과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이 유형 천연자원의 인식을 위해 필요인지 재고하여야 함. 여러 응답자는 ED 92에서 요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의 요건이 기존의 IPSAS 기준서 혹은 IPSASB 개념체계와 비교하여 더 엄격하다고 언급함</p> <p>(c) 일부 응답자들은 현재의 개념체계를 고려하면 유형 천연자원의 인식은 드물 것임을 인정함. 이와 같이 답변한 응답자 중 일부는 GPFR 보고 지침 개발을 제안하며, 특정 관할구역 내 유형 천연자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책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 공시를 더욱 확대할 것을 제안함</p> <p>(d) 일부 응답자들은 또한 보전의 맥락에서 서비스 잠재력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p>

[분석]

- 자문보고서, Natural Resources(2023년 3월)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IPSASB는 기존의 개념체계에 기반하여 천연자원 회계처리에 대한 공개초안을 개발하기로 하였음. 즉 IPSASB는 천연자원을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별도의 인식 기준(개념체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개발하지 않고, 기존의 개념체계를 수정하지도 않기로 결정함
- IPSASB는 상기 결정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함
 - (a) 개념체계에 명시된 자산의 기존 정의 및 인식 기준, 그리고 현재 이용가능한 기술과 과학적 전문성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천연자원(특히 미추출 지하자원)은 그 존재의 불확실성과 신뢰할 수 있는 측정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자산으로 인식하는 데 제한이 따를 것임
 - (b) 공개초안은 GPFS에 포함될 주식 공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임. 다만 공개초안에서 제안하는 공시사항은 개념체계 제8장(공시)의 원칙에 기반함
 - (c) 이러한 회계처리 지침의 개발은 향후 더 광범위한 GPFR에서의 천연자원 보고 지침의 개발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더 광범위한 GPFR에서의 보고

- ED 92에 따른 지침은 매우 제한된 수의 천연자원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이 공개초안은 단기적으로 천연자원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마련되었으며, IPSASB는 향후 더 광범위한 GPFR 보고 목적의 추가적인 지침을 개발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 ED 92의 결론도출근거에는 적용범위를 제한하게 된 결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 있었음. 또한 해당 방침이 GPFS 및 GPFR 지침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자세히 서술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이 제기됨

인식에 대한 의견

- 천연자원의 인식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에 대응하기 위해 Staff가 제안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a) Staff의 관점에 따르면 인식 기준의 변경은 개념체계를 수정하거나 벗어나지 않고서는 수용될 수 없음. 따라서 제한된 인식 기준의 배경을 결론도출근거에서 설명하고 이러한 논의를 기준서의 목적과 연결하여 서술할 것을 제안

표 3 의 계속

■ 안건 4: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p>(b) IPSASB는 천연자원에 대한 인식 기준이 기존 IPSAS 기준서와 비교하여 더 엄격하거나 부담을 지우는 요건으로 해석되기를 의도하지 않음. 다만 ED 92는 통제(control)와 신뢰성 있는 측정(reliable measurement)에 대해 기존 IPSAS 기준서보다 더 자세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보고실체들이 이 개념들을 천연자원의 맥락에서 적용한 경험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이에 따라 Staff는 다음과 같이 제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관련 적용지침과 실무적용지침을 수정하여, 해당 요건이 더 엄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ii) 통제와 신뢰성 있는 측정에 초점을 맞춘 이유를 결론도출근거에서 설명하고, 이러한 요건들이 기존의 IPSAS 기준서 및 개념체계와 일관됨을 명확히 밝힘 <p>(c) 유엔 원주민권리선언(UNDRIP) 및 원주민의 관점에 대하여 Staff는 공개초안의 결론도출근거에서는 원주민 그룹의 의견이 고려되었음을 언급하였으나, 강제적 문헌이나 비강제적 문헌에서는 이들의 우려를 언급하지 않음. 이에 따라 Staff는 통제 여부 평가와 관련된 적용지침 및 실무적용지침에 UNDRIP의 고려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이러한 내용을 결론도출근거에서 설명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함</p>

관리책임(Stewardship)에 대한 추가적 공시

- 인식된 유형 천연자원의 경우, 해당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과 자원에 설정된 담보나 기타 수탁책임에 대한 공시를 ED 92에서 제안함. 또한 자산의 정의에는 부합하지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인식되지 않은 유형 천연자원에 대한 공시도 제안하였음. 이에 따라 인식되지 않은 자원에 대한 보고실체의 수탁책임과 해당 책임을 설정한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근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안함
- 의견 수렴 결과, 이해관계자들은 제안된 공시사항이 유형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관리책임 및 권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나타냄. 예를 들어 인식된 천연자원의 경우, 특정 조약이나 UNDRIP의 채택에 따라 전통적으로 자원을 소유해 왔던 원주민들에게 자원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될 수 있음. 또한 일부 제도상으로는 보전 활동의 책임이 제3자에게 위임될 수 있음
- 이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실체는 제3자와의 조약이나 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관리책임에 대해서도 공시하여야 함. 예를 들어 특정 조약이나 협약에 따라 원주민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인식된 유형 천연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ED 92의 제안이 이러한 관리책임에 대한 공시를 유도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음
- 인식되지 않은 유형 천연자원에 대해 공공부문실체가 관리책임이나 권리를 가질 수도 있음.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자원이 재무제표상 인식되지 않더라도 정보 이용자들은 그러한 권리의 세부 내용이나 실체가 해당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음을 언급함. 이에 대해 Staff는 관리책임의 권리나 의무가 특정 계약 또는 협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천연자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계약·협약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함. 예를 들어 일부 계약은 관련 유형 천연자원이 인식되지 않더라도 IPSAS 31, 무형자산의 범위 내에서 자산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또 다른 경우에는 관리 협약에서 발생하는 인식되지 않은 권리나 의무에 대한 공시가 IPSAS 19,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 Staff는 공시 요구사항과 관리책임 협약을 명확히 연결 지어 설명하는 것이 공시사항의 일관된 적용을 돕는다고 판단함. 상기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 Staff가 제안한 조치는 다음과 같음

표 3 의 계속

■ 안건 4: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인식된 유형 천연자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이 공시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할 것 (b) 인식되지 않은 유형 천연자원도 해당 자원의 관리책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IPSAS 19 및 IPSAS 31 등의 기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공시되어야 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할 것 (c)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이 관리책임 협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실무적용지침을 개발할 것 (d) 결론도출근거에서 관련 보완 설명과 추가 지침을 제공할 것
	<p>보전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서비스 잠재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 활동이 어떻게 서비스 잠재력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현행 개념체계에서는 서비스 잠재력은 '실체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능력'으로 정의함 • ED 92에서는 천연자원의 보전이 공공부문실체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고 언급함(예: 천연자원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 미래 세대의 시민에게 효익을 제공). 그러나 응답자들은 현재 ED 92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근거로 보전이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효익 또는 가치로 이어지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Staff 또한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며 보전을 통해 어떻게 서비스 잠재력이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 한 의견서에서는 기준서의 범위를 설정하고 유형 천연자원을 정의할 때, 유엔의 환경경제통합 회계(System of Environmental - Economic Accounting - Ecosystem Accounting, SEEA-EA)를 참고할 것을 제안함. 해당 의견서는 SEEA-EA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생태계 서비스를 통해 천연자원이 서비스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공급 서비스(Provisioning services): 생태계로부터 직접 추출하거나 수확할 수 있는 효익에 기여하는 생태계 서비스 (b) 조절 및 유지 서비스(Regulating and maintenance services): 생태계가 생물학적 과정을 조절하고, 기후·수자원 및 생화학적 순환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개인과 사회에 유익한 환경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에서 비롯되는 생태계 서비스 (c) 문화 서비스(Cultural services): 생태계의 존재와 기능이 다양한 문화적 효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거나 실제로 경험하는 생태계의 특성과 관련된 체험적이며 무형적인 서비스 • 이러한 접근법은 안건 문서 4.2.3에서 논의된 범위 변경 제안 및 천연자원을 의도한 사용 목적에 따라 정의하는 문서 4.2.4의 제안과도 일치함. IPSASB 개념체계의 맥락에서 볼 때, 유형 천연자원의 보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서비스 잠재력은 SEEA-EA에서 정의한 '문화 서비스'와 '조절 및 유지 서비스'의 효익에 부합함. 반면 '공급 서비스'는 IPSAS 12(재고자산), IPSAS 27(농업), IPSAS 45(유형자산)의 적용 범위상 자산의 사용 목적과도 일치함 • 따라서 Staff는 보전 활동을 통해 서비스 잠재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SEEA-EA 개념을 결론도출근거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3.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는 현행의 IPSAS 1,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는 새로운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와 연관된 기준서들의 개정 사항을 개발하기 위한 IPSASB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난 2023년 6월에 프로젝트 개요서(Project Brief)가 승인된 이후 단계별로 추진되어 왔다.

표 4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추진 단계별 개정 사항

추진 단계	단계별 개정 사항
1단계	• 자문보고서(CP) 발표 및 의견수렴
2단계	• 신규 기준서 및 관련 기준서 개정 사항이 반영된 공개초안(ED) 발표
3단계	•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가 반영된 최종안 발표

IPSASB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인 IPSAS 1, 재무제표 표시(2006년 최초 개정)와 IPSASB 개념체계(2014년 발표) 사이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고, IPSAS 1의 개발 토대였던 IAS 1, 재무제표 표시가 2024년 중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로 개정 대체됨에 따라 IFRS 18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해졌다는 데에 있다.

IPSASB는 해당 프로젝트의 목표를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신규 기준서를 발표하고, 다음의 3단계에 걸쳐 관련 기준서(IPSAS 2, 현금흐름표, IPSAS 22, 일반정부부문에 관한 공시, IPSAS 24, 재무제표상 예산정보의 표시)를 개정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2025년 6월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GFSM 2014에 부합하도록 재무성과표상 재무정보를 범주화하는 방법의 적정성, IFRS 18의 주된 사업활동 관련 지침의 도입 여부, 합계 및 중간합계를 IFRS 18의 지침을 공공부문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에 관한 예비견해(preliminary view) 결정, 재무성과표상 최소 표시 항목의 현행 유지 여부, 재무성과표상에 비용을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표시하는 선택지를 계속하여 실체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IPSASB는 재무성과표상 수익 및 비용 항목의 표시와 관련하여 향후 자문보고서에 수록하게 될 IPSASB의 예비견해를 확정하였다. 먼저 재무성과표상 재

무정보를 GFSM 2014에 부합하는 범주를 개발하지 않고, IFRS 18의 수익·비용 범주와 일치시키되 공공부문을 위한 별도 지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합계(total)의 경우 현행 IPSAS 1의 규정을 유지하여 ‘당기순손익(Surplus or Deficit)’만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중간합계(subtotal)의 경우 ‘영업손익(Operating surplus or deficit)’ 및 ‘재무손익차감전손익(Surplus or deficit before financing)’을 신설하되 현행 IPSAS 1과 같이 실체의 판단에 따라 추가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현행 IPSAS 1의 규정에 따른 재무성과표상 최소 표시 항목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비용의 경우 재무성과표에서 각 실체의 판단에 따라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되, IFRS 18과 같은 혼합 표시 방식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5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 세부 안건별 주요내용 요약

■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GFSM 2014와 일치하는 재무성과표 범주화 접근법
	[Staff 권고사항] Staff와 Task Force는 IPSASB가 다음에 동의할 것을 권고함 (a) GFSM 2014에 부합하도록 재무성과표상 재무정보를 범주화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것 (b) 그 이유를 자문보고서의 챕터 4에 제시하고, GFSM 2014와의 정합성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고려한 사항들을 자문보고서의 부록에 명시할 것 (c) 재무성과표상에 IFRS 18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수익 및 비용 항목들을 범주화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면서 공공부문을 위한 지침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IPSASB의 예비견해를 확정할 것
11.2.1	[배경] • IPSASB는 현재 재무제표 표시 자문보고서를 개발하면서 재무성과표의 표시 규정에 대해 심의 중이며, 위원들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재무성과를 더 잘 이해·분석·비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재무성과표상 수익 및 비용 항목들을 범주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한 바 있음 • 2025년 3월 정례회의에서 위원들은 GFSM 2014에 부합하는 예비 방안에 대해 더 분석해 볼 것을 전제로, 공공부문을 위한 추가 지침으로 보충하면서 IFRS 18과 일치하는 재무성과표 범주를 표시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선호한다고 밝혔음 • IPSASB가 GFSM 2014에 부합하는 접근법을 실질적으로 식별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이 안건은 IPSAS 기준서들과 GFSM 2014 간의 주요 차이점을 고려하는 데 필요한 배경, 즉 상이한 표시 원칙 및 규정으로 이어지는 보고 목적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분석] IPSAS 기준서와 GFSM 2014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고려사항 • IPSAS의 발생주의 기반 회계와 GFSM 2014의 통계 관점 회계의 조화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양자 간의 중요한 차이에 따른 난제도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의 직접적 원인은 두 보고체계의 기본적인 목표 및 그에 따른 독립된 개발에 있음

표 5 의 계속

■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p>(a) IPSAS 기준서들은 회계책임 및 의사결정 목적 관점에서 공공부문 재무관리에 필요한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부문 재무보고의 품질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회계지침을 제공함. IPSAS 기반 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중앙정부·지역정부·지방정부, 부처, 기관, 국제정부 및 정부 간 기구 등 다양한 서비스 전달 목적을 갖는 광범위한 영역의 공공부문실체임</p> <p>(b) GFSM 2014는 통계 지침을 제공하며, 특히 일반정부부문과 경제 내 더 넓은 범위의 공공부문의 성과 등 재정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적합한 재정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석 체계임. GFSM 2014 기반 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주로 통계 및 거시 재정 분야의 실체/기관(예: 재무부, 통계청 등)이며, 이들은 중앙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p> <p>• IPSAS 기준서와 GFSM 2014 보고 지침이 유사한 재무정보 세트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목표를 지향하므로 정보의 보고 방법과 대상, 위치와 관련된 근본적인 차이를 지킴. 이러한 차이는 IPSAS 기준서와 GFSM 2014 중 일방의 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기본적인 개념 차이에서 비롯되므로 양자 간 완전한 수준의 일치는 달성되기 어려움. 따라서 IPSASB는 업무계획 및 이 프로젝트의 추진 동인으로 양자 간의 ‘불필요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모색 중임</p>

자문보고서 개발 과정에서의 GFSM 2014 고려

- IPSASB는 자문보고서 개발 과정에서 GFSM 2014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음
 - (a) 전반적으로 IPSAS 표시 규정의 유연성을 높이면 GFSM 2014 및 예산 보고 과정에서 발생주의 정보의 더 나은 통합과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음. 일부 국가의 경우 GFSM 2014 또는 현금주의 정보가 아닌 재무제표 정보를 바탕으로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 (b) IPSASB는 IPSAS 기준서와 GFSM 2014의 기본적 개념 및 원칙이 상당히 다름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양자 간의 일치는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의 표시(유동/비유동 표시가 여전히 유효함)
 - 당기손익 외부에 표시하는 수익 및 비용 항목의 순자산/자본변동표 표시(거래 및 기타경제유량의 정의와 관련 인식기준의 근본적 차이 존재)

재무성과표 관련 IPSAS 기준서와 GFSM 2014의 차이점

- 2024년 3월 회의에서 IPSASB는 재무성과표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수익 및 비용 항목의 표시와 관련성이 있는 양 보고체계의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음
 - (a) 수익 및 비용의 구성이 다름
 - : GFSM 2014에 따르면 수익 및 비용은 순자산(net worth)을 증감시키는 거래(transactions)로 정의되며, 여기서 거래는 반드시 제도단위(institutional unit) 간의 상호 합의(mutual agreement)에 의한 상호작용만을 의미함
 - : IPSAS 기준서에 따르면 수익 및 비용은 실체의 순자산/자본(net assets/equity) 금액의 증감으로 정의됨
 - : 결과적으로 IPSAS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일부 수익 및 비용의 경우 GFSM 2014에 의한 경우 기타경제유량으로 간주됨
 - (b) 수익 및 비용의 식별 및 산정 방법이 다름
 - : GFSM 2014에 따르면 수익 및 비용은 경제적 특성을 기준으로 구별되며 수익 또는 비용의 유형을 기준으로 인식 및 측정됨

표 5 의 계속

■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p>: IPSAS 기준서에 따르면 수익 및 비용은 이를 일으킨 약정상 조건을 기준으로 인식됨 (예: 집행가능성, 구속력 있는 약정 및 실체의 권리/의무 존재 여부 등 고려)</p> <p>: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회계적 결과를 동일하게 표시하는 것을 야기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FSM 2014에 따른 정부운영표(Statement of Operation)와 IPSAS 기준서에 따른 재무성과표는 서로 다른 목표 아래 다른 정보를 표시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므로 동등한 위치의 보고서가 아니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차이는 GFSM 2014의 정부운영표가 주요 거시경제수치를 얻기 위해 비금융자산의 취득·처분, 금융자산·금융부채의 거래 등 보고기간에 걸쳐 처량(즉 대차대조표)을 변화시키는 거래를 표시하는 것에 기인함 • 이에 비해 IPSAS의 재무성과표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수익 및 비용을 표시하므로, 비금융자산 및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정보는 다른 IPSAS 재무제표 및 주석에 표시되어야 할 대상임 • Staff 및 Task Force는 재무제표 간 재무정보의 위치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IPSASB의 과거 결정에 따르기 위해서는 재무성과표와 관련하여 GFSM 2014와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범위에서 GFSM 2014의 섹션 2(비금융자산) 및 섹션 3(금융자산·부채)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함

〈정부운영표와 재무성과표의 표시 정보 간 차이점〉

GFSM 2014	IPSAS 1	
Statement of Operations	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Differences
[1] Transactions affecting net worth • Revenues • Expenses	Items recognized in surplus or deficit • Revenues • Expenses	Not fully equivalent with IPSAS: see paragraph 9
[2] Transactions in nonfinancial assets Investments in nonfinancial assets	n/a	No equivalent IPSAS section: see paragraphs 10-11
[3] Transactions in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financing") Net acquisition of financial assets Net incurrence of liabilities	n/a	

GFSM 2014에 부합하는 재무성과표 범주화 접근법

- GFSM 2014의 섹션 1(수익·비용)에 맞추는 것은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단일의 범주(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항목)하에서 개별 수익 및 비용 항목의 경제적 성격에 근거하는 새로운 세트의 분류 및 합계 규정을 적용하여 두 개의 별도 하위 섹션으로 분리하여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가짐

표 5 의 계속

■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장점</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단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기준 재무성과표가 GFSM 2014의 정부운영표의 섹션 1과 일치되어 보이도록 만들 수 있음 · 표시 방법을 표준화하므로 공공부문실체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일치를 달성하려면 기본적인 회계원칙의 상당한 변경이 요구됨 · 중앙정부에는 적합한 특유의 엄격한 구조를 보여주나 모든 유형의 공공부문실체에는 적용하지 못할 수 있음(공공부문의 다양성 미반영) · 실제 수준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부담이 될 수 있음(예: 새로운 표시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고시스템 및 절차를 변경해야 함) </td> </tr> </tbody> </table>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기준 재무성과표가 GFSM 2014의 정부운영표의 섹션 1과 일치되어 보이도록 만들 수 있음 · 표시 방법을 표준화하므로 공공부문실체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일치를 달성하려면 기본적인 회계원칙의 상당한 변경이 요구됨 · 중앙정부에는 적합한 특유의 엄격한 구조를 보여주나 모든 유형의 공공부문실체에는 적용하지 못할 수 있음(공공부문의 다양성 미반영) · 실제 수준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부담이 될 수 있음(예: 새로운 표시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고시스템 및 절차를 변경해야 함)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기준 재무성과표가 GFSM 2014의 정부운영표의 섹션 1과 일치되어 보이도록 만들 수 있음 · 표시 방법을 표준화하므로 공공부문실체 간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일치를 달성하려면 기본적인 회계원칙의 상당한 변경이 요구됨 · 중앙정부에는 적합한 특유의 엄격한 구조를 보여주나 모든 유형의 공공부문실체에는 적용하지 못할 수 있음(공공부문의 다양성 미반영) · 실제 수준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부담이 될 수 있음(예: 새로운 표시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고시스템 및 절차를 변경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 및 T/F는 이 접근법이 수익 및 비용의 표시와 관련된 일관성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재무성과표들을 더욱 일치시킴으로써 IPSAS 기준서와 GFSM 2014 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자 간의 근본적 차이점에서 비롯되는 상당한 단점이 다음의 사례와 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GFSM 2014에 맞추어 IPSAS의 표시 규정을 수정하면 실질적인 정합성 확보 없이 왜곡만 유발하게 됨. 예를 들어 IPSAS와 GFSM 2014의 '조세(taxes)'는 동일한 명칭으로 표시되나 그 금액 및 산정 원칙이 근본적으로 다름. 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오해하거나 혼동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b) GFSM 2014에 맞추는 표시 방법은 IPSAS 기반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공공부문실체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함. 이는 GFSM 2014가 중앙정부의 재정분석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표시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임 · 본질적 관점에서 볼 때, 두 보고체계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목표하에서 그에 맞게 개발된 상이한 인식 및 측정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상이한 표시 규정을 갖게 된 것으로 표시 규정의 일치는 양자 간 차이 해소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상기의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Staff와 T/F는 IPSASB가 GFSM 2014에 부합하도록 재무성과표상 재무정보를 범주화하는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 내림 <p>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가 Staff 및 T/F의 상기 권고사항에 동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가 진행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재무성과표상 수익 및 비용의 범주화와 관련된 IPSASB의 예비견해 확정(IPSASB는 잠정적으로 재무성과표상에 IFRS 18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수익 및 비용 항목들을 범주화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면서 공공부문을 위한 지침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선호한 바 있음) (b) GFSM 2014에 부합하도록 재무성과표상 재무정보를 범주화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자문보고서의 챕터 4에 제시하고, GFSM 2014와의 정합성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고려한 사항들을 자문보고서의 새로운 부록에 명시할 것 				
	<p>[IPSASB 의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Staff의 권고사항에 동의하는지? 				

표 5 의 계속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주된 사업활동의 수익 및 비용 범주화 관련 영향
	<p>[Staff 권고사항] Staff와 T/F는 IPSASB가 IFRS 18의 범주화 규정에 일치시키는 방안에 동의한다면, IFRS 18의 주된 사업활동 관련 지침도 함께 도입할 것과 관련 내용을 자문보고서 챕터 4에 반영할 것을 권고함</p>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자문보고서 개발 과정에서 IPSASB는 공공부문에 적합한 경우 IFRS 18과 일치시킨다는 전략적 접근법을 취해 왔으며, 현재 IPSASB는 재무성과표에 수익 및 비용을 범주화하여 표시하는 것에는 동의하였고 IFRS 18과 일치시키는 방법 혹은 다른 방법을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 중임 2025년 3월 정례회의에서 IPSASB 위원들은 공공부문을 위한 지침을 추가로 제공하되 IFRS 18과 일치하는 범주화 방안에 대한 잠정적 선호를 표한 바 있음. Staff와 T/F는 이를 전제로 주요 사업활동(main business activities)에 대한 IFRS 18의 개념 및 지침이 공공 부문에도 목적적합하거나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고려할 것을 제안함
	<p>[분석]</p> <p>IFRS 18 지침의 개괄: 주요 사업활동</p>
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 18은 손익계산서상에 기업의 수익(income)과 비용(expenses)을 5개의 특정 범주(영업, 투자, 재무 범주 신설)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함. IFRS 18을 적용하면 실체는 수익 및 비용을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로 우선 분류한 뒤 잔여 수익 및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함. 이러한 접근법은 IASB의 두 가지 주요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실체의 영업은 하나 이상의 주된 사업활동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음 (b) 실체의 영업 성과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분석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영역임 IASB는 IFRS 18을 개발하면서 IFRS 18을 적용하는 모든 기업들이 자신의 영업 범주에 영업 성과와 관련된 핵심 수치를 반드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음(예를 들어 주된 사업활동으로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인 은행에 이자수익을 재무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면 은행의 영업 성과를 반영하지도 못하며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못함) 이에 IASB는 다음 두 가지의 특정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자신의 영업을 적절히 반영하고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수익 및 비용을 범주화하도록 요구하는 추가 지침을 포함시켰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특정 유형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기업은 특정 수익 및 비용 항목을 투자 범주가 아닌 영업 범주로 분류 (b) 고객에 대한 금융 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기업은 특정 수익 및 비용 항목을 재무 범주가 아닌 영업 범주로 분류

표 5 의 계속

■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ASB는 '특정 주된 사업활동'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추가적인 표시 규정의 대상이 되는 두 가지 주된 사업활동을 상기와 같이 나열함
	<p>분석 접근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3월 정례회의에서 Staff는 IPSASB가 만약 IFRS 18과 일치하는 범주화를 요구하기로 결정한다면 주된 사업활동과 관련된 IFRS 18의 규정도 고려할 것을 제안함. IPSASB가 주된 사업활동의 개념 및 지침이 공공부문과 관련이 있거나 적용가능한지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돕기 위해 Staff와 T/F는 다음을 고려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제공하는 공공부문실체가 존재하는지? [B] 그와 유사한 지침이 실체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드는지? [C] IFRS 18 지침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공부문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지?
	<p>[A]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제공하는 공공부문실체가 존재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 18의 강제 지침(authoritative guidance)은 기업이 두 가지 특정 주된 사업활동에 관여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도우며, 주된 사업활동으로서 자산에 투자하거나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사례(예: 투자기업, 보험회사, 은행, 리스제공자 등)를 제공함 민간부문처럼 공공부문실체 역시 특정 서비스 전달 목표 혹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사한 활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IPSAS 기준서는 이미 그러한 거래의 회계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주된 사업활동으로서의 자산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 16, 투자부동산은 공공부문실체가 임대수익이나 자본적 가치상승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여러 상황에 대해 다루고 있음(예: 정부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상업적 기반으로 관리하거나 기타 서비스 전달) IPSAS 35, 연결재무제표는 연금기금이나 정부투자기금 등 더 광범위한 투자자 그룹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지원하는 단일의 지배실체로 구성된 투자실체나 그것을 위해 구성된 투자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도 일반적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 (b) 주된 사업활동으로서 다른 당사자에게 금융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 41, 금융상품은 공공부문실체가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지원하거나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이나 소기업, 다른 정부실체와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융자금을 제공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음 IPSAS 43, 리스 및 기타 리스유사약정에 대한 IPSASB 지침 개발 과정에서 공공부문실체가 저렴한 주택 공급 정책을 지원하고 특정한 서비스 전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을 제공하거나 할인리스(concessionary leases)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음
	<p>[B] 그와 유사한 지침이 실체의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드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ff와 T/F는 다음을 근거로 공공부문에 IFRS 18의 주된 사업활동 관련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표 5 의 계속

■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공공부문실체도 특정 서비스 전달 목표 또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주된 사업활동'으로서 자산에 투자하거나 다른 당사자에 대해 금융을 제공함. 해당 실체의 경우 자신의 영업의 일환으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함 (b) 그러한 거래에 참여하는 공공부문실체의 경우 특정 수익 및 비용을 운영 범주로 표시하도록 요구할 때 자원의 취득·사용, 서비스 전달 원가의 회수 등 서비스 전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해 보고기간의 실체의营业을 보다 적절히 표현하고, 재무제표 이용자의 분석 및 의사결정 목적에 필요한 더 유용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음 <p>• 만약 IPSASB가 IFRS 18의 주된 사업활동 관련 지침과 유사한 성격의 지침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존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수익 및 비용 항목이 거래의 목적을 적절히 반영하는 범주로 분류되지 않음: 예를 들어 시민들이 저렴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서비스 전달 목표이고, 자신의 주된 사업활동으로서 자금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공공부문실체의 경우 관련 지침이 없다면, 이러한 재무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이 실체의 영업과 서비스 전달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에 해당하더라도 이러한 수익 및 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류해야 함. 이러한 결과는 운영 범주 내 재무성과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유용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음 (b) 재무제표 이용자는 자신의 분석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하거나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음: 같은 사례에서 실제 재무제표의 이용자는 재무 범주 내 수익 및 비용 중에서 어느 것이 서비스 전달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체의 활동과 관련된 것이고 어느 것이 자체 사업을 위한 자원 조달 효과와 관련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당해 실체의 서비스 전달 목표 달성의 효과성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방해함 <p>[C] IFRS 18 지침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공부문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 18의 주된 사업활동 관련 지침이 유용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공공부문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공공부문실체의 영업을 위해 폭넓은 범위의 활동이 수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영업(operating)'이 공공부문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으므로, '주된 사업활동 대신에 '주된 영업활동(main operating activities)' 용어를 사용하는 것 (b) IFRS의 '수익 및 비용(income and expenses)', '고객(customers)' 대신 '수익 및 비용(revenue and expenses)', '다른 당사자(other parties)' 등 다른 IPSAS 기준서와 일치하도록 공공부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 (c) 자산에 투자하거나 다른 당사자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공공부문실체를 언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실체가 특정 수익 및 비용을 다르게 분류해야 할 주된 사업활동을 갖고 있는 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부문 사례를 추가할 것 • 민간부문처럼 공공부문실체도 하나 이상의 주된 영업활동을 가질 수 있음. Staff와 T/F는 공공부문의 특징을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잘 보여주기 위해 공공부문에 특정한 주된 영업활동으로 볼 만한(자산 투자 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금융 제공과 유사한) 다른 주된 영업활동이 존재하는지 고려하였으나, 수익 및 분류 범주의 재분류를 요구할 정도의 특정 주된 영업활동은 파악되지 않았음

표 5 의 계속

■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p>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분석을 토대로 Staff와 T/F는 만약 IPSASB가 IFRS 18의 범주화 규정과 일치시키는 것에 동의한다면 주된 사업활동과 관련된 IFRS 18의 지침도 함께 도입(공공부문을 위한 조정 반영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 IPSASB가 이 제안에 동의할 경우 자문보고서 챗터 4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재무성과표상 범주별로 수익 및 비용을 분류할 때 '주된 사업활동'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IPSASB의 견해로 채택하는 것도 제안함 • Staff는 이에 대한 IPSASB의 결정을 예시공개초안(IED)의 지침(안)에 반영할 예정임 <p>[IPSASB 의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Staff의 권고사항에 동의하는지?
	<p>합계 및 중간합계 표시에 대한 견해 확정</p>
	<p>[Staff 권고사항]</p> <p>Staff는 IPSASB가 공공부문을 위한 지침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재무성과표상에 IFRS 18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수익 및 비용 항목들을 범주화하여 표시한다고 결정한다면, 합계 및 중간합계를 공공부문에 맞게 조정하여 표시하고 이를 자신의 예비견해로서 그 근거와 함께 자문보고서 챗터 4에 서술할 것을 권고함</p>
11.2.3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12월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재무성과표의 표시 규정에 관한 세부 논의를 개시함. IPSASB는 민간부문의 경우 이 재무제표가 형식상 보다 일관성 있는 구조를 갖도록 수익 및 비용을 범주화하고 특정한 합계 및 중간합계를 표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IFRS 18에 도입했다는 점에 주목함. IPSASB에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는 IFRS 18 규정을 토대로 공공부문에도 유사한 이점을 제공하고 적절한 경우 IFRS와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임 • 이후 IPSASB는 수익 및 비용 항목들을 범주화하여 표시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위원들은 공공부문을 위한 추가 지침과 함께 IFRS 18의 범주화 규정과 일치시키는 것을 잠정적으로 채택한 바 있음. 이러한 선회를 전제로 범주화 도입의 이점을 보완·강화하기 위해서는 IPSASB가 합계 및 중간합계와 관련된 표시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p>[분석]</p> <p>현행 IPSAS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1, 재무제표 표시는 재무성과표 본문의 합계 및 중간합계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규정만을 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보고기간의 당기손익 합계를 표시해야 함 (b) 실체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표 5 의 계속

■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IPSAS 규정의 개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계 및 중간합계의 표시와 관련된 IPSAS 규정을 개선하면, 형식상 보다 일관성 있는 구조를 도입하고 보고실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의미 있는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새로운 수익·비용 범주화 규정을 보완할 수 있음. 합계와 중간합계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정보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분석의 출발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정보를 더욱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재무성과표의 표시 규정을 개정하면서 IPSASB는 IFRS와 일치시키는 방법, GFSM 2014와 일치시키는 방법, 공공부문에 맞춘 별도 방법을 모두 검토해 왔으며, 현재까지의 분석 및 토의 결과 IFRS 18에 일치시키되 공공부문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방안이 선호되었음 • 합계 및 중간합계의 표시는 수익 및 비용을 범주화하여 표시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것이므로 이 안건에서는 효과적인 논의 지원을 위해 IFRS에 일치시키는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함
잠정적인 IPSAS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12월 정례회의에서 Staff는 재무성과표에 표시할 합계와 중간합계에 대한 세부 분석결과를 제공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현행 IPSAS 1 규정은 IAS 1, 재무제표 표시와 정합성을 갖추고 있음 (b) IPSASB와 IASB는 공히 재무제표의 목표와 역할을 구조화된 양식을 통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보고서의 다양성이 재무성과표(또는 손익계산서) 정보의 유용성과 이해가능성, 비교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정의된 중간합계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IPSAS 1과 IAS 1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c) IAS 1을 대체하는 IFRS 18은 더 정형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무제표 구조를 만들어 보고서의 다양성을 줄이고 정보의 전달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이용자가 재무정보를 더 잘 이해·분석·비교하는 것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범주화 규정과 더불어 새로운 중간합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음 (d) 공공부문에도 동일한 개선의 잠재력이 존재하는데, 이는 특정 합계 및 중간합계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재무성과 정보를 더 구조화시켜 재무제표 이용자가 그러한 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비교할 수 있게 돕는 방향으로 표시 정보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 Staff는 상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당기순손익(surplus or deficit) 합계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실체의 전반적인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용하고 근본적인 지표이므로, 당기순손익 합계 표시를 요구하는 현행 IPSAS 1의 규정을 유지할 것 (b) 이용자들이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을 만한 비교가능한 재무성과 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중간합계를 표시하는 두 가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손익(Operating surplus or deficit): 이용자가 수익의 현재 수준 및 그러한 수준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미래의 서비스 전달 활동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한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데 유용함 - 재무손익차감전손익(Surplus or deficit before financing): 금융대가를 고려하기 전의 성과에 대해 말해 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IFRS 접근법을 조정하여 법인세비용의 표시가 일반적이지 않은 공공부문의 특징을 반영함

표 5 의 계속

■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	----

〈재무성과표상 합계 및 중간합계(안) 예시〉

Illustrative Example of the 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with the Proposed Totals and Subtotals		
Public Sector Entity		
For the year ended [MM] [DD] [YYYY]		
Taxes revenue	500	Operating
Other revenue	80	
Wages expenses	(200)	
Operating expenses	(300)	
Other expenses	(58)	
Operating surplus or deficit	22	
Investment income	15	Investing
Investment expenses	(13)	
Surplus or deficit before financing	24	
Interest expense on loan	(21)	Financing
Surplus or deficit	3	

(c) 국제적으로 공공부문실체의 재무정보 수요는 국가마다 혹은 국가 내에서도 다양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중간합계를 표시하는 것은 계속 유지할 것(중간합계의 추가 표시는 이러한 중간합계가 IPSAS 기준서에 따라 인식·측정된 금액으로 구성되고 재무성과표 구조에 호환되며, 기간간 일관성을 가지면서 의무적으로 표시되는 상기의 중간합계보다 두드러지지 않는 요약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이러한 제안사항은 IFRS의 합계 및 중간합계에 대한 규정과 일치하며 IFRS 18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재무성과표상 수익·비용을 범주화하는 이점을 강화시킬 수 있고, 추가 분석을 위한 유용한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음

합계 및 중간합계의 표시에 대한 견해 확정

- 2025년 3월 정례회의에서 IPSASB 위원들은 IFRS 18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재무성과표상 수익·비용을 범주화하고, 이를 공공부문을 위한 추가 지침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채택한 바 있음
- 만약 IPSASB가 이를 자신의 예비견해로 확정하고자 한다면 Staff는 상기 제안과 같이 IFRS 18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합계 및 중간합계를 표시하되 공공부문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함. 범주화하는 것과 그 범주를 토대로 합계 및 중간합계를 표시하는 것은 보다 공공부문 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더 일관성 있고 비교가능한 정보의 표시의 이점을 증폭시킬 수 있음
- 여기에 IPSASB가 동의한다면 IPSASB는 이 결정을 자문보고서 챕터 4에 재무성과표상 합계 및 중간합계의 표시와 관련된 자신의 예비견해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한 IPSASB 결정을 고려하여 Staff는 예시공개초안(Illustrative Exposure Draft)의 지침에 이러한 결정을 반영할 계획임

[IPSASB 의결사항]

- 상기 Staff의 권고사항에 동의하는지?

표 5 의 계속

■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재무성과표상 최소 표시 항목
	<p>[Staff 권고사항] Staff와 Task Force는 IPSASB가 다음에 대해 동의할 것을 권고함 (a) 재무성과표의 재무제표 표시 항목과 관련된 최소 표시 규정을 유지할 것 (b) 현행 IPSAS 1의 규정과 그 원칙 적용을 돕기 위한 부가 지침을 근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IFRS 18, 재무제표의 표시 및 공시의 지침과 일치시킬 것 (c) 자문보고서 챕터 4에 IPSASB의 예비견해 및 그 근거를 제시할 것</p>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자문보고서 개발 과정에서 IPSASB는 공공부문에 적합한 경우 IFRS 18과 일치시킨다는 전략적 접근법을 취해 왔으며, 현재 IPSASB는 재무성과표의 표시 규정에 대해 논의 중임 2025년 3월 정례회의에서 IPSASB 위원들은 GFSM 2014와 일치시키는 접근법에 대한 추가 분석을 전제로, 재무성과표상 수익·비용을 IFRS 18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공공부문을 위한 추가 지침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채택한 바 있음. 이러한 견해는 재무성과표에 대해 IFRS와의 정합성 유지를 추구하는 전략적 결정을 시사하며, IPSASB는 이를 토대로 아직 논의되지 않은 재무성과표 표시 규정인 최소 표시 항목, 비용의 기능별·성격별 표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 이 안건은 검토의 편의를 위해 최소 표시 항목과 관련된 분석만 다루고 있음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표시 항목과 관련된 분석을 수행하면서 Staff 및 T/F는 다음을 파악하거나 고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재무제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공공부문에는 독특한 측면이 있다는 것과 IPSAS 기준서가 공공부문실체들에는 표준화에 대한 요구와 구조화되고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정보를 표시할 유연성 사이에 균형을 잡아 주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파악됨 (b) 재무성과표 관련 공공부문의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 및 회계책임에 대한 전달방식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 IPSAS 1 규정을 개정할 만한 논거가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2022년 공공부문기준제정자포럼 등 연구단계에서 수집된 의견을 고려하였음 (c) IFRS와 일치시키는 방법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진 IPSAS 1의 개정 필요성이 발견될 경우 논의되었던 그 외의 접근법과 관련된 분석을 공유함
11.2.4	<p>현행 IPSAS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 1은 재무성과 정보의 표시에 대해 최소한의 규정만을 정하고 있으며, 어떤 재무성과 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중요하고 그 정보를 충실히 표현할 수 있다고 보일 경우 그 정보를 표시 및 공시하는 상당한 유연성을 실체에게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최소 표시 항목 관련 규정은 IAS 1과 일치함 IPSAS 1은 범주화를 요구하지 않으나, 특정한 표시 과목의 표시 및 공시를 요구 및(또는) 허용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재무성과표의 본문에 표시해야 할 재무제표 표시 과목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규정만 정함 (예: 금융원가, 손상차손, 특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특정 투자자산 또는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금액 등)

표 5 의 계속

■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b) 이용자가 실체의 당기 성과 및 미래 전망을 고려하여 서비스 전달 의무를 충족할 실체의 능력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유용한 설명과 함께 추가적인 표시 과목을 포함 시키는 것을 촉진함
	(c) 자산의 감액 및 처분, 구조조정 활동, 소송사건의 해결, 총당부채의 환입, 총수익의 세분 류 등 특정 항목에 대한 별도 공시를 요구함

IPSAS 규정의 개정 필요성

- Staff와 T/F는 현행 규정을 개정할 만한 논거가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a) 실무에서 재무성과표의 본문에 표시되는 표시 항목은 표시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보고 기간 중 실체의 실제 활동 및 거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공유함
 - (b) 초기의 피드백 결과는 IPSAS 1에 최소한의 규정만 정한다는 IPSASB의 표시 항목에 대한 접근법이 여전히 유효하고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함. 이 접근법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고실체에 제공하면서도, 다른 IPSAS 규정과 일관성 있게 특정한 중요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기준서 규정과의 조화도 가능케 함
- 재무성과표에 표시해야 할 최소한의 표시 과목과 관련된 IPSAS 1의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할 만한 강력한 논거는 발견되지 않았음
 - (a) 이는 이 규정이 IPSASB가 다른 IPSAS 기준서의 규정을 만들면서 내렸던 의결사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IPSAS 기준서 전체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표시 과목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자원을 요하며 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음
 - (b) 현재 최소 표시 과목 리스트가 이용자에게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실질적인 피드백이 없으므로, 당해 규정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c) 이용자가 보고실체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추가적인 표시 항목과 제 목, 중간합계를 표시하는 것이 이미 허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Staff와 T/F는 IPSASB가 다음에 대해 동의할 것을 권고함
 - (a) IPSAS 1의 현행 지침을 유지할 것(이 지침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IAS 1 지침을 실질적 개정 없이 대체한 새로운 IFRS 18의 지침과 본질적으로 일치하고 있음)
 - (b) 보고실체가 수익 및 비용과 관련하여 보다 유용한 정형적인 요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표시 항목을 표시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적용지침을 추가 할 것(이 지침은 IFRS 18의 적용지침을 공공부문에 맞게 조정한 것임)
- 다음 표는 상기 권고사항을 통해 달성되는 일치 결과를 요약하면서 그와 관련된 장점과 단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

〈현행 IPSAS 1 규정 유지할 경우 달성 가능한 일치 결과 및 장단점〉

Approach	Impact on Alignment		Benefits	Drawbacks
	IFRS	GFSM 2014		
Retain and enhance IPSAS 1 (paragraph 10)	Maintained, by aligning with the new IFRS	No ch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inues to effectively serve public sector financial statement users' needs. ✓ Maintains alignment with IFRS where appropriate and maintaining consistency with the IPSASB Conceptual Frame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es not weaken nor strengthen the existing degree of alignment with GFSM 2014

표 5 의 계속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11.2.5	<p>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가 상기의 권고사항에 동의한다면 이 결정과 관련하여 IPSASB는 자문보고서 챕터 4에 예비견해 및 그 근거를 제시하고, Staff는 예시공개초안(Illustrative Exposure Draft)에 관련 지침(안)을 작성할 계획임 <p>[IPSASB 의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Staff의 권고사항에 동의하는지?
	<p>재무성과표상 비용의 표시</p> <p>[Staff 권고사항]</p> <p>Staff와 Task Force는 IPSASB가 다음에 대해 동의할 것을 권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재무성과표상에 비용을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표시하는 선택지를 계속하여 실체에게 제공할 것 (b) IFRS 18, 재무제표의 표시 및 공시의 지침을 공공부문에 맞게 조정할 것 (c) 자문보고서 챕터 4에 IPSASB의 예비견해 및 그 근거를 제시할 것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자문보고서 개발 과정에서 IPSASB는 공공부문에 적합한 경우 IFRS 18과 일치시킨다는 전략적 접근법을 취해 왔으며, 현재 IPSASB는 재무성과표의 표시 규정에 대해 논의 중임 • 2025년 3월 정례회의에서 IPSASB 위원들은 GFSM 2014와 일치시키는 접근법에 대한 추가 분석을 전제로, 재무성과표상 수익·비용을 IFRS 18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공공부문을 위한 추가 지침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채택한 바 있음. 이러한 견해는 재무성과표에 대해 IFRS와의 정합성 유지를 추구하는 전략적 결정을 시사하며, IPSASB는 이를 토대로 아직 논의되지 않은 재무성과표 표시 규정인 최소 표시 항목, 비용의 기능별·성격별 표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 이 안건은 검토의 편의를 위해 비용의 기능별·성격별 표시와 관련된 분석만 다루고 있음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표시 항목과 관련된 분석을 수행하면서 Staff 및 T/F는 다음을 파악하거나 고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재무제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공공부문에는 독특한 측면이 있다는 것과 IPSAS 기준서가 공공부문실체들에는 표준화에 대한 요구와 구조화되고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정보를 표시할 유연성 사이에 균형을 잡아 주는 기준선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파악됨 (b) 재무성과표 관련 공공부문의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 및 회계책임에 대한 전달방식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 IPSAS 1 규정을 개정할 만한 논거가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2022년 공공부문기준제정자포럼 등 연구단계에서 수집된 의견을 고려하였음 (c) IFRS와 일치시키는 방법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진 IPSAS 1의 개정 필요성이 발견될 경우 논의되었던 그 외의 접근법과 관련된 분석을 공유함

표 5 의 계속

■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p>현행 IPSAS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 1은 재무성과표에 비용을 분류하고 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비용을 그 성격에 따라 표시하거나 만약 해당 정보가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고 더 목적적합하다면 실체의 기능에 따라 표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IPSAS 1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지침도 제공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두 가지 방법 모두 실체의 산출물에 따라 그와 연계하여 원가가 변동함을 시사하지만, 각 방법은 실체의 유형에 따라 다른 장점을 가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을 그 성격에 따라 표시하는 것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며 적용이 더 간단할 수 있는데, 이는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 데 자의적인 배분과 판단이 개입될 필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임 - 비용을 그 기능에 따라 표시하는 것은 더 많은 판단이 필요하지만 서비스 전달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실체의 특정 프로그램 및 목적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b) 비용의 기능별 표시 또는 성격별 표시에 대한 선택은 역사적, 규제적 요인과 보고실체의 성격에 달려 있으므로, 보고실체는 가장 목적적합하고 충실히 표현 가능한 표시 방법을 선택해야 함 (c) 비용을 성격별로 표시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고려, 비용을 기능별로 표시하는 실체는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해야 함 <p>IPSAS 규정의 개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와 T/F는 비용의 표시와 관련된 잠재적인 신규 규정을 찾기 위해 다음을 고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FRS 18의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결과, IFRS 18과의 정합성에 따른 이점이 있으나, 공공부문의 경우 시행 관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이 필수적임(IFRS 18의 규정은 성격별·기능별 방법의 선택지를 계속하여 제공하며 방법의 선택, 중요성 판단, 자의적 배분 발생 상황 등에 관한 지침도 제공) (b) GFSM 2014의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결과, 두 보고체계 간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GFSM 2014에 일치시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단점이 있음 • 조정 필요사항 - 상기의 평가 결과와 IPSASB가 재무성과표와 관련 IFRS과 일치시키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여, Staff와 T/F는 다음과 같이 IFRS 18을 공공부문의 요구에 더 잘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혼합 표시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IFRS 18의 경우 일부의 비용은 성격별로 또 다른 비용은 기능별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IPSAS 기준 서에서는 이러한 혼합 표시를 금지하는 것이 실무에서 표시의 일관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줄여야 한다는 공공부문 이해관계자의 초기 의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적절함 (b) 보조 지침의 개정 및(또는) 개선

표 5 의 계속

■ 안건 1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 18의 경우 민간부문의 맥락에서 적용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을 반영하여 이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지침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가 비용의 성격별 혹은 기능별 표시 방법의 상이한 장점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당해 실체와 이용자, 기타 요인을 고려할 때 어느 방법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음 : 예를 들어 중앙정부나 복수의 서비스·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실체의 경우 '기능별 표시'가 더 적절할 수 있지만, 하나의 뚜렷한 목표나 결과를 달성하는 데 자신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책임이 있는 부처의 경우 '성격별 표시'가 더 적절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IPSAS 1의 개정 사항 - 다음의 제안사항은 IFRS 18을 조정한 것이나 IPSAS 1의 현행 규정에 대한 큰 폭의 개정은 수반하지 않음. 그 대신 제안된 일련의 표시 규정은 IPSAS 1 규정이 갖고 있는 이점을 인정·유지하면서, 초기의 피드백 및 IASB의 최근 개정작업 결과를 반영하여 IPSAS 1 규정을 개선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비용의 성격별 혹은 기능별 표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실체에 제공하고, 실체가 자의적 의사결정 없이 비용을 배분할 수 없는 경우나 실체가 기능에 따라 비용을 표시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를 위한 보조 지침을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현행 IPSAS 1 규정을 유지할 것 (b) 비용의 표시에 관한 현행 IPSAS 1 규정을 새로운 재무성과표 범주화 규정의 맥락에 맞추어 재정비할 것 (c) 실체가 더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표시 방법(성격별 혹은 기능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추가할 것 <p>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가 상기의 권고사항에 동의한다면 이 결정과 관련하여 IPSASB는 자문보고서 챕터 4에 예비견해 및 그 근거를 제시하고, Staff는 예시공개초안(Illustrative Exposure Draft)에 관련 지침(안)을 작성할 계획임 <p>[IPSASB 의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Staff의 권고사항에 동의하는지?

4.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투명성 제고 및 회계책임 이행을 강화하고,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개발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이 증대됨에 따라, IPSASB는 공공부문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개발에 착수하였다.

2024년 9월에 IPSASB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s)가 공개 자문을 위해 승인되었으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20일간의 자문기간 동안 광범위한 외부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다. IPSASB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총 96개의 의견서를 받았으며, 2025년 4월에 진행된 체크인 회의에서 해당 의견서의 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2025년 6월 정례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요 쟁점과 그에 대한 Staff의 분석 및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요 쟁점	Staff 분석 및 제안사항
<p>① 단일 기준서로 개발 vs 별도 기준서로 분리 개발</p>	<p>(이슈) 많은 응답자들이 기후 관련 공시 지침을 계속하여 단일 기준서 형태로 개발하기보다 자체 사업(Own Operations) 관련 기준서와 공공정책 프로그램(Public Policy Programs) 관련 기준서로 분리하여 개발하는 것을 지지함</p> <p>(분석 및 제안) 주요 이용자에게 보다 목표 지향적이고 관련성 높은 공시를 제공한다는 점, IPSASB가 기후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Public Policy Programs)과 관련된 원칙 관련 쟁점을 충분히 탐구할 추가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 지침의 복잡성을 줄여 채택과 이행을 지원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개별 기준서로 분리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함</p>
<p>② IFRS S2와의 정합성</p>	<p>(이슈) 일부 응답자들이 민간부문의 IFRS S2는 공공부문의 맥락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으며, IFRS S2와의 비교가능성을 위해 정합성을 강하게 유지할 경우 기후 관련 공시 지침을 지나치게 규정 중심으로 구성하게 한다고 지적함</p> <p>(분석 및 제안) IPSASB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민간부문의 기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동시에 보다 광범위한 기후 공시 이니셔티브와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 IFRS S2가 공공부문에서 자체 사업 관련 공시 지침을 개발하는 데 적절하고 신뢰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IFRS S2와의 정합성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을 제안함</p>
<p>③ GHG 프로토콜 적용의 원칙적 적용(rebuttable presumption)</p>	<p>(이슈) 일부 응답자들이 GHG 프로토콜 적용의 원칙적 적용을 요구할 경우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저해하여 보고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 적용이 아닌 권고 수준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함</p> <p>(분석 및 제안) GHG 프로토콜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칙 중심의 방법론(methodology)으로 공공부문실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적합하며, 현재의 접근방식(approach)은 글로벌 정합성과 지역 조정 가능성 간 실질적인 균형을 제공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GHG 프로토콜의 원칙적 적용(rebuttable presumption)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함</p>
<p>④ 스코프 3 배출량 공시</p>	<p>(이슈) 많은 응답자들이 스코프 3 공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상 이행 및 비용 관련 어려움으로 인해 의무 공시보다는 자발적 공시 또는 단계적 접근을 권고하거나 스코프 3 공시의 기준서 포함에 반대함</p> <p>(분석 및 제안) 스코프 3 보고 요구사항이 뉴질랜드, 영국 등 일부 관할권(jurisdiction)에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점, 해당 공시가 실제의 기후 대응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스코프 3 공시 요구를 유지하되 보고를 위한 역량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 확보 필요성을 감안하여 적용 유예기간의 연장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함</p>

주요 쟁점	Staff 분석 및 제안사항
⑤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1과의 정합성	(이슈) 기후 관련 공시 지침의 일반 요구사항 섹션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의 IFRS S1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 필요 (분석 및 제안) 글로벌 기준(baseline)과의 정합성 유지가 주는 이점과 기후 관련 공시 이용자 입장의 민간 및 공공부문 간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현 단계에서는 일반 요구사항에 대해 IFRS S1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되 제기된 원칙 관련 쟁점을 향후 회의에서 검토할 것을 제안함
⑥ 중요성 정의	(이슈) 응답자별로 SRS ED 1에서 제안한 중요성의 정의를 재무적 중요성, 이중 중요성 등 서로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음이 파악됨 (분석 및 제안) 재무적(financial), 이중(double), 영향(impact) 등 중요성에 대한 부가적인 용어들은 이미 IPSASB에 의해 충분히 고려되었으므로, 현재의 중요성 정의를 유지하되 최종 공표문(final pronouncement)의 결론도출 근거에서 보다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함

표 6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 세부 안건별 주요내용 요약

■ 안건5: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기후 관련 공시 - 프로젝트 개요
	[목적] IPSASB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에 대한 현 시점까지의 개요를 제공
	[배경] 자문보고서-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
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에 대한 공개 자문이 2025년 2월 28일에 종료되었음. IPSASB는 지역 및 기능을 대표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부터 총 96건의 의견서를 받았음 • 2025년 4월, Staff는 IPSASB에 의견 요약 자료(안건 2)를 제출하였으며, 다음의 세 가지 수준(level)에서 주제별 범주를 식별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범분야적(cross-cutting) 주제 - 기후 관련 공시 기준서의 개발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주제 (b) 원칙 관련 쟁점 - 반복적으로 제기된 원칙 관련 쟁점으로, IPSASB의 심의가 요구됨 (c) 이행 관련 쟁점 - 추가적인 지원과 지침 제공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는 2025년 3월 회의(안건 13.2.3)에서 논의되었으며, 프로젝트의 상설 단계(ongoing phase)로 다루어질 예정임 • 응답 요약을 검토한 결과, IPSASB는 Staff에게 다음을 지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단일 기준 또는 개별 기준 개발과 관련된 범분야적(cross-cutting) 쟁점을 다루기 위한 선택지를 포함한 프로젝트 계획을 2025년 6월 회의에서 제시

표 6 의 계속

■ 안건5: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실체의 자체 사업(Own Operations)과 연관된 원칙 관련 쟁점에 대한 분석을 2025년 6월 회의에서 제시 • 2025년 4월 회의의 지시 사항에 따라 Staff는 다음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분석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단일 기준서와 개별 기준서 중 무엇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여부에 관한 범분야적(cross-cutting) 주제(안건 5.2.2) (b) 민간부문 지침인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와의 정합성(안건 5.2.3) (c) 실체가 온실가스(GHG) 배출 회계에 있어 GHG 프로토콜: 원칙적으로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회계 및 보고 기준(2004)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적 적용(rebuttable presumption)(안건 5.2.4) (d) 실체가 스코프 3 배출량을 공시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안)(안건 5.2.5) (e) 일반 요구사항이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과 정합되는지 여부(안건 5.2.6) (f) IPSASB 개념체계(CF)에서 도출된 중요성 정의(안)(안건 5.2.7) • 세부적인 프로젝트 계획은 안건 5.2.8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2025년 4월 회의에서의 IPSASB 논의를 반영한 2025년 동안 Staff가 추진할 계획에 대한 접근방식을 담고 있음
	<p>[의사결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제공 및 논의만을 위한 항목이며, 의사결정사항 없음
	<p>범분야적(cross-cutting) 주제: 단일 또는 개별 기준서</p>
	<p>[질문]</p> <p>IPSASB는 단일의 기후 관련 기준서 개발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두 개의 개별 기준서로 분리하여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가?</p>
	<p>[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다음과 같이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기후 관련 공시 지침은 두 개의 개별 기준서로 최종 확정할 것 (b) 프로젝트 계획상 실체의 자체 사업 관련 기준을 우선적으로 확정할 것
5.2.2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2024년 3월 회의(안건 10.2.3)에서 공공부문실체가 보조금, 법률, 과세, 규제 등 공공부문 고유의 수단을 통해 다른 실체 및 개인의 활동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논의하였음 • IPSASB는 이러한 이중적 역할이 공공부문의 핵심적인 차별점이며 이에 따라 공공부문 고유의 원칙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음. 자체 사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은 민간부문 지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실체의 정책 및 규제 역할과 관련된 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부문 특화 원칙 및 적용 지침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음 • 이에 따라 IPSASB SRS ED 1은 단일 기준서에 실체의 자체 사업(Own Operations) 및 공공정책 프로그램(Public Policy Programs) 모두를 포괄하여 공공부문 기후 관련 공시 규정을 제안하였음

표 6 의 계속

■ 안건5: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	----

[분석]

- 자체 사업 관련 공시에 대한 접근방식은 응답자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으며, 많은 이들이 IFRS S2 민간부문 지침과 공시 요구사항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안건 5.2.3)
- 이에 반해 응답자들은 공개초안 중 공공정책 프로그램 관련 공시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원칙 관련 쟁점을 제기하였음. 주요 우려사항에는 TCFD의 네 가지 핵심요소(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가 공공정책 프로그램에 적절한지 여부,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범위, 그리고 제안된 공공부문 정의와 관련된 쟁점들이 포함됨
- 추가적으로 많은 응답자들이 공개초안의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언급하였음. 본문은 자체 사업과 공공정책 프로그램 관점을 함께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각 적용지침 1과 적용지침 2에서 다루고 있음. 모든 실체는 자체 사업에 대해 보고해야 하나 소수의 실체만이 공공정책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예상됨. 일부 응답자들은 하나의 기준 내에서 두 관점이 병치됨에 따라 어떤 공시 요구사항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으며, 특히 보고 역량이 제한적인 실체의 경우 이와 같은 복잡한 구조가 기준의 채택 및 이행을 저해할 수 있음을 우려함
- 2025년 4월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Staff는 기준을 분리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범분야적(cross-cutting) 쟁점으로 보고 있음. 이는 응답을 통해 확인된 여러 원칙 관련 쟁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해당 결정은 IPSASB가 기후 관련 공시 기준서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선택지 개요

- Staff는 범분야적(cross-cutting)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선택지를 검토하였음
 - (a) 선택지 1의 경우, IPSASB는 공개초안의 기존 구조(자체 사업과 공공정책 프로그램 관련 공시에 대한 지침을 단일 기준서 내에 포함시키는 방식)를 유지함. 이 경우 기준서의 구조는 공개초안과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되며, 통합된 본문과 함께 적용지침이 제공됨
 - (b) 선택지 2의 경우, IPSASB는 공개초안을 두 개의 개별 기준서로 분리함. 첫 번째 기준서는 실체의 자체 사업과 관련된 기후 공시 요구사항을 다루고, 두 번째 기준서는 공공정책 프로그램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다룸. 각 기준이 독립적인 문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지침의 일부 중복이 필요할 수 있음

선택지 평가

- Staff는 지속가능성 참조 그룹(Sustainability Reference Group, SRG)의 자문을 반영하여 마련한 평가 기준 목록에 따라 두 가지 선택지를 검토하였음. 다음 표는 해당 평가 기준과 각 기준별로 더 적합한 선택지에 대한 Staff의 분석을 제시함

표 6 의 계속

■ 안건5: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공개초안 분석에 기반한 평가 기준	주요 논거	더 적합한 선택지
지침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자들은 공공부문의 이중 역할을 하나의 기준서 내에서 모두 다루려는 시도로 인해 초점이 분산되었다고 지적하였음. 이는 대체 의견(Alternative Views)의 문단 AV3(a)와 일치함 공공정책 프로그램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 실체는 제한적 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단일 기준서를 유지할 경우, 다수의 작성자가 기준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복잡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선택지 2
지침 발행의 적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들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를 고려할 때, 공공부문에 특화된 기후 관련 공시 기준서의 시급한 필요성을 분명히 전달하였음. 공공정책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원칙 관련 쟁점에도 불구하고 공시 요구사항을 단일 기준서에 유지할 경우, 최종 공표문의 시의적절한 제정이 지연될 수 있음 일부 응답자는 공공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연기하는 것이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음. IPSASB가 개별 기준서 개발로 나아갈 경우, IPSASB에 공공정책 프로그램 관련 공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의도가 여전히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선택지 2
자체 사업과 공공정책 프로그램 관련 공시의 통합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기준서는 자체 사업과 공공정책 프로그램 간 용어 및 기본 개념의 차이를 발생시킬 위험을 높일 수 있음. 단일 기준서를 유지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IPSASB의 역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일부 응답자는 공공부문의 정책과 운영이 본질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제안하였음. 이들은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실체의 운영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함 반면 일부 응답자는 자체 사업과 공공정책 프로그램 간 목표와 개념적 경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음.¹⁾ 기준을 분리하면 IPSASB가 두 관점 간 지침 차이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음 	선택지 1

표 6 의 계속

■ 안건5: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공개초안 분석에 기반한 평가 기준	주요 논거	더 적합한 선택지
채택 및 이행 시 작성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들은 자체 사업 지침의 일반적인 이행 로드맵과 공공정책 프로그램 공시 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또는 절차 개편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 개별 기준서를 제공하면 공공부문실체가 공공정책 프로그램 공시의 이행이 진행 중이어도 자체 사업에 대해 완전한 준수(full statement of compliance)가 가능함 • 반면 일부 응답자는 공공부문실체를 위한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해 '원스톱' 지침을 제공하는 단일 기준서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음 	선택지 2

주: 1) 예를 들어 한 응답자는 공공정책 프로그램 관련 공시에 대한 지침이 실제 수준의 기후 위험 관리와 공존하도록 설계되기보다는 기후 관련 정책이 다른 정책 분야, 정부 전체 보고, 그리고 기타 관련 프레임워크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Staff 제안의 근거

- 평가 기준과 주요 논점을 고려할 때 Staff는 IPSASB가 선택지 2를 추진할 것을 제안함. 단일 기준서 유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Staff는 선택지 2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결론지었음
 - (a) 주요 이용자에게 보다 목표 지향적이고 관련성 높은 공시를 제공함
 - (b) IPSASB가 공공정책 프로그램과 관련된 원칙 관련 쟁점을 충분히 탐구할 추가 시간을 제공함
 - (c) 두 관점 간 차이를 명확하게 전달함
 - (d) 지침의 복잡성을 줄여 채택과 이행을 지원함
- 마지막으로 개별 기준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일관되게 IPSASB가 자체 사업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였음. 이에 따라 안건 5.2.8은 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계획을 제시함. 이 계획은 IPSASB가 Staff 제안을 채택하여 선택지 2를 추진하고 자체 사업과 공공정책 프로그램 관련 공시 각각에 대해 별도의 기준서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되었으며, IPSASB가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경우 수정이 필요함

[의사결정사항]

- IPSASB는 Staff 제안에 동의하는가?

자체 사업: IFRS S2와의 정합성

5.2.3

[질문]

IPSASB는 Staff 제안에 동의하는가?

표 6 의 계속

■ 안건5: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p>[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IPSASB가 IFRS S2 민간부문 지침과 자체 사업 관련 공시 요구사항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함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9월(안건 13.2.1)에 IPSASB는 기후 관련 공시 기준서 개발을 위한 접근방식을 논의하였음. IPSASB는 기존의 국제적 지침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IPSASB SRS ED 1의 개발 과정은 재무보고 기준 개발 시 IPSASB가 따르는 IASB 문서의 검토 및 적용 절차(Process for Reviewing and Adapting IASB documents)와 일치함 • 기존 제정 절차와 지속가능성 참조 그룹(SRG) 및 기후 주제 작업반(CTWG)의 자문에 따라, IPSASB는 IFRS S2를 기반으로 IPSASB SRS ED 1을 개발하기로 결정함. IPSASB SRS ED 1은 IFRS S2의 네 가지 핵심 요소인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라 구성됨 • 특히 IPSASB는 기존 민간부문 지침이 실체의 자체 사업과 관련된 기후 관련 공시를 다루는데 있어 견고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IPSASB SRS ED 1의 자체 사업 관점은 IFRS S2와 정합성을 유지하되, 공공부문에 맞게 조정되었음 <p>[분석]</p> <p>IFRS S2와의 정합성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들은 자체 사업 관련 공시를 IFRS S2와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IPSASB의 제안 접근 방식에 대체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이점을 언급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기후 관련 정보의 질과 완전성을 제고함 (b) 실체 간,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촉진함 (c) 국제적으로 인정된 글로벌 기준(baseline)을 활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기후 관련 공시의 신뢰성을 강화함 (d) 민간부문에서 확립된 지침을 기반으로 공공부문 특화 기준의 적시성 있는 개발을 지원함 (e)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이행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지식 이전 및 역량 강화를 촉진함 • 일부 응답자는 IFRS S2와의 강한 정합성 유지에 다소 비판적이었으며, 해당 제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규범적이라고 주장하였음. 이들은 IPSASB가 IFRS S2와의 비교가능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용자에게 공시 요구사항이 얼마나 목적적합한지를 알려주는 고차원적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또한 일부 응답자는 민간부문 지침이 공공부문 맥락 및 공공부문의 보다 다양한 이용자 범위와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 Staff는 IPSASB SRS ED 1이 원칙 중심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실체가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음을 언급함. 전반적으로 Staff는 제안된 접근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새로운 실질적 근거를 식별하지 못하였음. 또한 공개초안에서는 실체의 활동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공공부문 이용자의 적용 가능성 관련 우려에 대해 다루고 있음

표 6 의 계속

■ 안건5: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으로 Staff는 IFRS S2가 공공부문에서 자체 사업 관련 공시 지침을 개발하는 데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판단하였으며, IPSASB가 IFRS S2와의 정합성을 계속 유지할 것을 제안함. 이러한 접근방식은 IPSASB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공공부문에 특화된 조정을 목표로 하며, 민간부문의 기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동시에 보다 광범위한 기후 공시 이니셔티브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IFRS S2 개정 진행사항

- 응답자들은 IFRS S2가 현재 제안된 개정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였음(‘온실가스 배출 공시에 대한 개정안 공개초안’ 참조). ISSB는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2025년 말까지 해당 개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 Staff는 ISSB Staff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다음과 같은 IFRS S2 개정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a) 파생상품 및 투자은행 관련 특정 금융활동과 연계된 스코프 3 카테고리 15 온실가스 배출의 측정 및 공시에 대한 의무 완화
 - (b) 금융배출량 공시에 적용되는 특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¹⁾ 사용 의무의 완화
 - (c) 온실가스 배출 측정을 위해 GHG 프로토콜 이외의 방법 사용 허용
 - (d) 보고일 기준 최신 정부 간 협의체(IPCC) 평가보고서에 기반한 100년 평가 기간의 지구 온난화지수(GWP) 값 외의 GWP값 사용 허용
- Staff는 이상의 IFRS S2 개정 제안사항의 공공부문 맥락 적합성과 관련 공시 요구사항의 IPSASB 공개초안 내 통합 정도에 따라 해당 개정 사항의 적용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모든 개정 사항이 IPSASB의 기후 관련 공시 기준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이에 따라 Staff는 일정 및 역량을 고려하여 ISSB가 2025년 말까지 IFRS S2 개정을 확정할 경우, 관련 변경사항을 최종 기준서에 반영할 예정임. 다만 계획된 일정(안건 5.2.8) 내에 반영이 어려울 경우 최종 공표문 발표 이후 제한적 범위(narrow-scope)의 후속 개정을 통해 필수적인 정합성 유지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 어떤 경우든 ISSB가 개정 IFRS S2 지침을 확정하는 시점에 따라 Staff는 적시에 IPSASB에 보고할 예정임

[의사결정사항]

- IPSASB는 Staff 제안에 동의하는가?

자체 사업: GHG 프로토콜의 사용

5.2.4

[질문]

IPSASB는 Staff 제안에 동의하는가?

1)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은 기업을 주요 사업 활동에 따라 산업 및 부문으로 분류하기 위한 체계임. 이는 MSCI와 S&P 다우존스 지수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투자자, 분석가, 규제기관 등이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기업을 비교하는 데 널리 사용됨.

표 6 의 계속

■ 안건5: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p>[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실체가 온실가스 배출량(GHG emissions)을 원칙적으로 GHG 프로토콜에 따라 공시한다는 원칙적 적용(rebuttable presumption)을 유지할 것을 IPSASB에 제안함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6월, IPSASB는 공공부문실체가 원칙적으로 GHG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되 다른 방법론이 더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적 적용(rebuttable presumption)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러한 유연성은 실체가 각각의 상황에 더 적합한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게 함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들은 제안된 접근방식에 대체로 동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언급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 - GHG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실체 간의 측정 및 보고의 일관성을 촉진하고, 공공부문 내 및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함 (b) 단순성 및 효율성 - 기존 도구와 지침을 활용하여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 작업을 방지함 (c) 비규범적(non-prescriptive) 접근 - GHG 프로토콜은 원칙 중심의 접근방식을 제공하며, 이는 IPSASB SRS 개발 시 IPSASB가 채택한 전반적 접근방식과 일치함 (d) 친숙성 및 전환비용 절감 - GHG 프로토콜은 이미 전 세계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실체가 해당 체계에 익숙하여 교육 및 전환비용을 줄이고 민간 및 공공부문실체 간 지식 공유를 가능하게 함 (e) 지역 요건에 대한 유연성 - 국가 또는 산업별 규정이 있는 경우 대체 방법론 채택을 허용함. 특히 한 응답자는 고배출 실체에 대해 GHG 프로토콜 외 방법론을 요구하는 자국 제도와 유사하다고 언급함 • 전반적으로 제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나 모든 의견이 일치한 것은 아니었음. 일부는 GHG 프로토콜을 반증 가능한 추정치 아닌 권고 수준으로 제시하여 관찰권별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함. 또 다른 일부는 반증 가능한 추정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어 보고 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 소수 응답자는 GHG 프로토콜 사용과 관련된 원칙 관련 쟁점을 제기하였으며, 여기에는 라벨링 문제 등도 포함됨. Staff는 이러한 고려사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IPSASB 논의를 위해 관련 제안사항을 다시 거론할 계획임 • GHG 프로토콜은 원칙 중심이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법론으로, 공공부문실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지지를 받았음. 일부 이해관계자는 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다른 이들은 관찰권별 유연성의 필요성을 강조함. 현재의 접근 방식은 글로벌 정합성과 지역 조정 가능성 간 실질적인 균형을 제공함. 종합적으로 Staff는 GHG 프로토콜 사용에 대한 반증 가능한 추정을 유지할 것을 IPSASB에 제안함
	<p>[의사결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가 Staff 제안에 동의하는지?

표 6 의 계속

■ 안건5: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자체 사업: 스코프 3 GHG 배출
	[질문] IPSASB는 Staff 제안에 동의하는가?
	[제안] • Staff는 IPSASB에 다음을 제안함 (a)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유지할 것 (b)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 공시에 대해 전환 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것
5.2.5	[배경] • 2024년 6월, IPSASB는 실체가 자체 사업과 관련된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음(안건 6.2.7). IPSASB는 스코프 3 배출에 수반되는 복잡성과 어려움을 인식하면서도 실체의 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배출 관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점 공시 영역으로 판단하였음 • IPSASB는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에서 스코프 3 보고와 관련된 주요 어려움을 데이터 가용성, 추정, 통제 등으로 인식하였음. 그러나 일부 실체는 스코프 3 배출 보고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규제기관들이 민간부문 실체를 대상으로 스코프 3 공시를 요구하거나 제안하기 시작하고 있음 • 또한 스코프 3 배출이 공공부문 맥락에서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IPSASB는 현재 공공부문실체에 스코프 3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관할권들의 사례들을 참고하였음. 예시는 다음과 같음 (a) 영국 - 재무부의 TCFD 적용 지침은 해당 범주가 중요(material)할 경우 스코프 3 배출 공시를 요구함. 배출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음에도 공시하지 않은 경우, 실체는 누락 사유와 적절한 경우 예상 보고 시기를 제시해야 함 (b) 뉴질랜드 - 중앙정부의 탄소중립정부 프로그램은 실체가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스코프 3 배출 공시를 요구함. 특정 범주에 대해서는 데이터 가용성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 외 모든 중요 스코프 3 범주에 대해서도 공시를 요구함 • 이에 따라 IPSASB는 공공부문에서 스코프 3 배출이 적용 가능하다는 관할권 사례들을 참고하고, 총배출량의 이해 및 관리 측면에서 스코프 3 배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개초안에 스코프 3 공시 요구사항을 제안하기로 결정함
	[분석] •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 공시에 대한 제안된 요구사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음

표 6 의 계속

■ 안건5: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p>(a) 공개초안 제안한 지지 - 이 그룹은 주로 이용자, 작성자, 전문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스코프 3 공시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기후 영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비교가능성·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하며, 공공부문실체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평가함. 다만 이 그룹 내에서는 스코프 3 공시 이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있었음</p> <p>(b) 스코프 3 공시는 지지하나 자발적 접근법(voluntary approach) 권고 - 이 그룹은 주로 작성자와 감사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스코프 3 공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상 및 비용 관련 문제로 인해 자발적 또는 단계적 접근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특히 다운스트림 및 금융배출량과 관련한 데이터 한계를 이유로 의무화는 시기상조라고 보았음</p> <p>(c) 기준서에 스코프 3 공시 포함 반대 - 이 그룹 또한 작성자와 감사기관이 포함되었으며, 스코프 3 공시는 비용, 복잡성, 그리고 특히 규제나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실체의 경우 관련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기준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응답자는 “이용자에게 명확한 이점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이용자들은 스코프 3 공시가 가치사슬 전반의 기후 관련 위험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장은 지지받지 못하였음 • 동시에 많은 응답자, 특히 작성자들은 이행상의 큰 어려움을 언급하였음. 여기에는 역량 부족, 데이터 제한, 공공부문실체의 준비 수준(readiness) 등이 포함됨. 또한 공공부문 가치사슬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스코프 3 공시를 생산하는 데 주요 어려움으로 지적되었음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Staff는 스코프 3 보고 요구사항이 일부 관할권에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음. 뉴질랜드와 영국 외에 프랑스에서도 공공부문실체에 스코프 3 보고를 요구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Staff는 스코프 3 공시가 실체의 기후 대응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IPSASB가 스코프 3 배출 공시 요구사항을 유지할 것을 제안함. IPSASB는 스코프 3 배출량 공시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공개초안 개발 과정에서 해당 어려움을 논의하였으나, 공공부문에 스코프 3 공시가 적절하지 않다는 실질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음 • 다만 스코프 3 보고를 위한 역량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간 확보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를 고려하여 Staff는 IPSASB가 효과적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환 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IPSASB가 이를 수용할 경우 후속 제안을 제출할 예정임 <p>[의사결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가 Staff 제안에 동의하는지?
5.2.6	<p>일반 요구사항: IFRS S1과의 정합성</p> <p>[질문] IPSASB가 Staff 제안에 동의하는지?</p>

표 6 의 계속

■ 안건5: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p>[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IPSASB에 다음을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일반 요구사항의 IFRS S1과의 정합성을 현재와 같이 유지 (b) 일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기된 원칙 관련 쟁점을 계속해서 검토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9월(안건 13.2.1), IPSASB는 기후 관련 공시 기준서 개발 접근방식을 논의하였으며, 기준서 개발 시 기존 국제 지침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 기존 제정 절차와 지속가능성 참조 그룹(SRG) 및 기후 주제 작업반(CTWG)의 자문에 따라, IPSASB는 IFRS S2를 기반으로 IPSASB SRS ED 1을 개발하고, 일반 요구사항은 IFRS S1과 정합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에 따라 공개초안 부록 B에 포함된 일반 요구사항 항목은 IFRS S1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이용자에게 유용한 기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개념 및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을 작성자에게 제공함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요청사항(SMC) 8에서는 일반 요구사항 섹션에 대해 IFRS S1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공부문실체에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음. 전반적으로 일반 요구사항의 현재 초안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가 있었으며(안건 2.2.9), 이는 IFRS S1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과 이를 기준의 부록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 모두와 관련된 것임. 응답자들은 IFRS S1과의 정합성 유지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증진시키며, 이는 기후 관련 공시 이용자에게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받고 있음을 언급함 • Staff는 다음과 같은 추가 의견도 확인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일부 응답자는 IPSASB가 일반 요구사항을 개별의 기준서로 분리하여,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 전반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정보 요구를 안내하는 상위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IPSASB는 해당 제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나, 현재 자원 및 역량상의 제약으로 즉각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2025년 3월 회의(안건 12.2.4)에서 IPSASB는 일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대한 프로젝트를 향후 업무계획 우선순위 후보 목록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음 (b) 그 외 의견서에서는 일반 요구사항과 관련된 원칙 관련 쟁점, 특히 공시 시점과 위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 Staff는 이러한 사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IPSASB 논의를 위해 해당 이슈들을 다시 제시할 계획임(안건 5.2.8) • Staff는 일반 요구사항을 IFRS S1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실질적인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평가함. 글로벌 기준선(baseline)과의 정합성 유지가 주는 이점과 특히 기후 관련 공시의 이용자에게 있어 민간 및 공공부문 간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Staff는 현 단계에서 일반 요구사항의 IFRS S1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일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기된 원칙 관련 쟁점을 향후 회의에서 검토할 것을 IPSASB에 제안함 • IFRS S2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기후 관련 공시 접근방식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IFRS S1의 일부 요소를 반영하는 현재의 제안된 접근방식은 IPSASB가 국제 기준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면서도, 향후 연말에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IFRS S1 기반 프로젝트의 추진 여부, 추진 방식, 그리고 소요 기간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함
	<p>[의사결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가 Staff 제안에 동의하는지?

표 6 의 계속

■ 안건5: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중요성
	[질문] IPSASB가 Staff 제안에 동의하는지?
	[제안] • Staff는 IPSASB가 개념체계에서 가져온 현재의 중요성 정의를 유지할 것을 권고함
	[배경] • 2023년 10월, IPSASB는 ISSB, 글로벌보고이니셔티브(GRI),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의 발표가 포함된 교육 세션을 개최하였음. 각 발표자는 자신들의 중요성 접근방식에 대해 개괄하였음. 이후 '실무에서의 중요성(Materiality in Practice)' 세션에서는 실무 경험이 있는 외부 발표자가 실제 지속가능성 보고에서의 중요성 적용 사례와 식견을 공유하였음 • 2023년 12월, IPSASB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전반의 중요성 접근방식을 논의하였고, SRG 회의 및 교육 세션을 통해 받은 자문도 함께 고려하였음. 당시 IPSASB에 전달된 주요 메시지는 중요성의 초점이 공공부문 정보이용자에게 맞춰져야 하며, 실체별 특유성으로 인해 전문적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이었음 • 이러한 자문에 기반하여 IPSASB는 IPSASB 개념체계를 공공부문 관련 개념의 기반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여기에는 이용자 식별 및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에서의 '중요한 정보'의 의미도 포함됨. 이에 따라 IPSASB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음 (a) IPSASB SRS ED 1의 중요성 정의를 IPSASB 개념체계와 일치시키는 것 (b) IFRS S1 및 GRI 3: 중요 주제(2021)의 지침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 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적용지침을 제공하는 것 • 중요성 정의에 대한 개괄 및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 전반에서 사용되는 기타 중요성 관련 정의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음 • 중요성 판단 관련 어려움에 추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PSASB는 2025년 5월 중요성 판단(Making Materiality Judgement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ED 93, 중요성의 정의(IPSAS 1, IPSAS 4 및 개념체계의 개정)를 발표하였음. 해당 프로젝트는 세 단계로 구성됨 (a) 1단계 - 중요성 정의의 일관성 제고 (b) 2단계 - IPSAS 기준서에서의 중요성 (c) 3단계 - IPSASB SRS에서의 중요성(지속가능성 보고서를 IPSASB SRS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성 판단에 관한 지침 개발 예정)
5.2.7	[분석] • IPSASB SRS ED 1의 의견요청사항(SMC) 7은 공개초안의 개념체계에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IPSASB 개념체계에 기반한 제안된 중요성 정의가 주요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는지를 질문하였음

표 6 의 계속

■ 안건5: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ff는 SMC 7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ED의 중요성 정의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음. 이러한 다양성을 파악하면서 Staff는 '재무적(financial)', '이중(double)', '영향(impact)'과 같은 중요성 관련 용어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된 최근의 논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표현들은 IPSASB 지침 밖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함. ISSB 또한 '재무적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을 관련 기준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음(이는 ESRS 문헌에서 사용되는 용어임) • 응답자들은 제안된 중요성 정의를 다음과 같이 다르게 해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일부 응답자는 IPSASB SRS ED 1의 중요성 정의를 재무적 중요성으로 해석하였음. 이는 IPSASB 개념체계와의 정합성, 즉 개념체계가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실체의 재무보고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IFRS S2가 자체 사업 관련 공시 지침 개발에 영향을 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b) 일부 응답자는 자체 사업과 공공정책 프로그램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근거로, IPSASB SRS ED 1이 이중 중요성 접근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함. 이들은 IFRS S1 및 S2와 비교하여,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공시, 더 폭넓은 이해관계자 집단,²⁾ 회계 책임의 강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요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중 중요성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c) 그 외 응답자들은 다른 중요성 접근방식을 제안함. 일부는 ESRS의 이중 중요성 접근 등 지역별 요건에 일치시킬 것을, 또 다른 일부는 GRI 등 기타 국제 보고기준과의 정합성을 주장함. 일부 응답자는 ED의 구성 요소별로 정보 요구가 다르므로, 공공정책 프로그램에는 영향 기반 중요성(impact materiality), 자체 사업에는 재무적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Staff는 이미 공개초안 개발 과정에서 IPSASB가 이러한 쟁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언급함. 결국 응답자들로부터 중요성 정의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절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Staff는 IPSASB가 현재의 중요성 정의를 유지하되 최종 공표문서의 결론도출근거에서 이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동시에 중요성 판단 프로젝트의 세 번째 단계와 향후 IFRS S1 기반의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IPSASB 프로젝트 등을 통해 더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것을 제안함 <p>[의사결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가 Staff 제안에 동의하는지?

2) IPSASB 개념체계에 따르면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는 '기존 및 잠재적 서비스 수혜자와 그 대표자, 자원 제공자와 그 대표자'임. 반면 IFRS S1은 주요 이용자를 '기존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로 보다 좁게 정의하고 있음.

표 6 의 계속

■ 안건5: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부록 1 - 중요성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은 IPSASB SRS ED 10에 포함된 중요성 정의 및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에서 사용되는 기타 관련 정의들임 	
IPSASB CF	<p>정보는 다음의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됨</p> <p>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재될 경우, 해당 실체의 회계책임 이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보고기간에 대해 실체가 작성한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내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p>
IPSASB SRS ED 1	<p>기후 관련 공시의 맥락에서 정보는 다음의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됨</p> <p>해당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실체의 회계책임 이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보고기간에 대해 실체가 작성한 일반목적재무보고서를 기반으로 주요 이용자가 내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p>
IFRS S1	<p>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맥락에서 정보는 다음의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됨</p> <p>해당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특정 보고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재무제표 및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포함)를 기반으로 주요 이용자가 내리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p>
GRI	<p>정보의 중요성은 조직과 그 활동이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하여 판단됨. 이는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관점(inside-out perspective)으로도 이해할 수 있음</p>
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 계획	
5.2.8	<p>[목적]</p> <p>본 문서는 기후 관련 공시 기준 내 자체 사업 부분 관련 공시에 대한 최종 공표문 개발을 위해 제안된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함. IPSASB가 본 문서에 제시된 접근방식에 동의할 경우에 적용하며, Staff가 이행할 예정인 상세 일정도 포함함</p>

표 6 의 계속

■ 안건5: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프로젝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하 계획된 프로젝트 일정은 2025년 4월 회의에서 식별 및 논의된 범분야적(cross-cutting) 쟁점과 원칙 관련 쟁점들을 다루고 있음. 이 일정은 IPSASB가 안건 5.2.2에서 Staff의 제안대로 개별 기준 마련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작성되었음. 또한 특정 쟁점 논의 후 후속 회의에서 해당 쟁점을 마무리할 수도 있음 		
	주제별 범주	쟁점	안건
	2025년 6월		
1	범분야적(cross-cutting) 주제	단일 또는 개별 기준서	안건 5.2.2
2	원칙 관련 쟁점	자체 사업: IFRS S2와의 정합성	안건 5.2.3
3	원칙 관련 쟁점	자체 사업: GHG 프로토콜의 사용	안건 5.2.4
4	원칙 관련 쟁점	자체 사업: 스코프 3 GHG 배출	안건 5.2.5
5	원칙 관련 쟁점	일반 요구사항: IFRS S1과의 정합성	안건 5.2.6
6	원칙 관련 쟁점	중요성	안건 5.2.7
	2025년 7월		
6	원칙 관련 쟁점	일반 요구사항: 공시 시점 및 위치	2025년 7월
7	원칙 관련 쟁점	경과규정	2025년 7월
8	원칙 관련 쟁점	구조 개요	2025년 7월
	2025년 9월		
9	원칙 관련 쟁점	개편된 기준 검토	2025년 9월
10	원칙 관련 쟁점	자체 사업: 추가 쟁점	2025년 9월
11	N/A	SMC 10: 기타 쟁점	2025년 9월
	2025년 10월		
12	N/A	결정된 사항의 초안 작성 및 이행 검토	2025년 10월
	2025년 12월		
13	N/A	초안 최종 검토	2025년 12월
14	N/A	최종 공표문 승인	2025년 12월
15	N/A	시행일	2025년 12월

표 6 의 계속

■ **안건5: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 Climate-Related Disclosures)**

안건 항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된 쟁점들은 IPSASB 회의에 앞서 관련 지속가능성 전문가 그룹과 논의될 예정이며, 이는 IPSASB 논의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와 통찰을 제공하기 위함임. 제안된 일정 외에도 최종 공표문 초안의 검토 및 승인 과정에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이 반복적으로 수행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CAG 회의 - 2025년 6월 개최 예정임 (b) SRG 회의 - 매 분기 대면 IPSASB 회의에 앞서 개최 예정임 (c) CTWG 회의 - 본 프로젝트 단계에서 CTWG가 재구성되며, IPSASB 내 특정 사안을 담당하는 '쟁점 책임자(issue owners)'로 지정된 멤버들로 구성될 예정임. 쟁점 책임자의 주요 역할은 특정 주제에 대해 IPSASB 후원자로서 Staff와 협력하여 사안의 진전을 지원하는 것임 (d) SIF 회의 - 매 분기, 대면 IPSASB 회의에 앞서 개최 예정임 • 위 일정 및 일련의 활동은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쟁점, 전체적 접근방식, 일정 등에 대한 IPSASB의 논의 및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음. Staff는 프로젝트의 필요에 맞추어 이 과정과 활동들을 조정하며, 사용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관리할 예정임
	<p>[의사결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제공 및 논의만을 위한 항목이며, 의사결정 필요사항 없음



표 7 2025년 IPSASB 업무계획(2025년 6월 기준)

프로젝트	2025년 6월	2025년 9월	2025년 12월	2026년 3월	2026년 6월	2026년 9월	2026년 12월
기준 제정 프로젝트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	RR/DI	RR/DI	IP				
측정 - 적용 단계	IP						
천연자원	RR/DI	RR/DI	IP				
재무제표 표시	DI/CP	CP			RR	RR/DI	RR/DI
IPSAS 33 - 제한된 범위 업데이트	IP						
IPSAS와 GFSM 2014 연계 강화		DI/ED		RR/IP			
개선과제(Improvements)	DI/ED	DI/ED	DI/ED	RR/IP	IP	DI/ED	DI/ED
중요성 판단 기준 - 제한된 범위	DI	DI/ED		RR/IP			
중요성의 정의 - 한정범위 개정		RR/IP					
업무계획 자문	DI/CP	CP		RR/DI	RR/DI/ WP	WP	
유지보수 및 연구 활동							
IPSAS 적용 패널	DI	DI	DI	DI	DI	DI	DI
사후이행검토(Post Implementation Reviews)			DI	DI/RFI	RFI		
학술 자문 그룹 - 공공부문 연구		RES					
기타 프로젝트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 i) 일반 요구사항 ii) 천연자원 - 비재무적 정보 공시	RES	RES	RES	RES	RES	RES	RES
IPSASB 핸드북 발간	발간				발간		

- 주: 1. DI = Discussion of Issues, RR = Review Responses
 2. PB = Project Brief
 3. SWP = Approval of Strategy and Work Program
 4. CP = Approval of Consultation Paper
 5. 빗금 = 계획된 자문 기간
 6. ED = Approval of Exposure Draft
 7. RES = Research Activities
 8. IP = Approval of Final Standard or Amendments to IPSAS
 9. RFI = Request for Information

표 8 프로젝트 관리 결과물

진행경과	프로젝트	비고
자문안료	ED 90, IPSAS 46, 측정의 적용에 따른 IPSAS 개정 사항	2024년 11월 29일 자문 기간 종료
	ED 91, 발생주의 IPSAS의 최초 채택에 대한 제한범위 개정(IPSAS 33 개정 사항)	2024년 12월 13일 자문 기간 종료
	ED 92, 유형의 천연자원	2025년 2월 28일 자문 기간 종료
	IPSASB SRS ED 1, 기후 관련 공시	2025년 2월 28일 자문 기간 종료
공개자문 진행 중	ED 93, 중요성의 정의 (IPSAS 1, IPSAS 3, 개념체계 제3장 개정 사항)	2025년 5월 15일 발간, 2025년 7월 14일 자문 기간 종료 예정



03 해외 재무결산 동향(미국)



본 재무결산 동향은 2025년 1월에 발간된 미국 연방정부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요약한 것으로 원문(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ISCAL YEAR 2024)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iscal.treasury.gov/reports-statements/financial-report/current-report.html>

센터에서는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국 결산서 발간에 맞춰 재무결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요약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 결산서의 구성

「미국 연방정부 재무보고서」는 재무부 장관메시지, 결산개요(Executive Summary), 경영진단의견서(MD&A), 미국 감사원의 성명서,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제표는 총 8종으로 순원가표, 운영및순자산변동표, 순운영원가 및 예산적자 조정표,³⁾ 예산및기타활동으로 인한 현금변동표,³⁾ 재정상태표, 장기재정전망표, 사회보험표(Statements of Social Insurance) 및 사회보험금액변동표(Statement of Changes in Social Insurance Amounts)로 구성되며 관련 주석으로 총 29종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필수보충정보(미감사)와 기타정보(미감사)를 추가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 연방 결산보고서

장관 인사말

감사원장 성명서

나. 결산 요약

1) 자산 및 부채

2024회계연도 현재 미국 정부의 총자산과 총부채는 각 5조 6,621억 달러, 45조 5,459억 달러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순자산은 39조 8,838억 달러 적자이다. 참고로 미국의 전체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2024년도 명목 GDP는 약 29조 1,849억달러⁴⁾이다.

연방정부의 자산 5조 6,621억 달러 중 82.8%는 ① 현금 및 기타 현금성 자산(1조 1,777억 달러) ② 순 대여금(1조 7,510억 달러) ③ 순 유형자산(1조 313억 달러)으

3) 두 재무제표를 합해서 보면 간접법으로 작성하는 현금흐름표와 유사

4) 세계은행(THE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US>, 검색일자: 2025. 9.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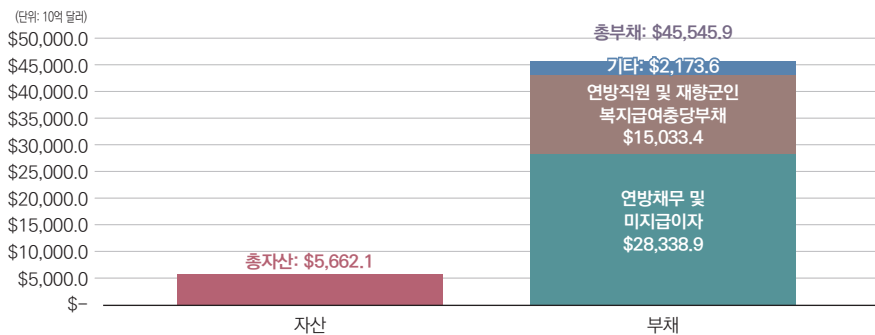
로 구성되어 있다. 현금 및 기타 현금성 자산은 대부분 미국 정부의 운영현금으로 구성된다. 2024회계연도 중에 2,555억달러(27.7%)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개 재무부가 보유한 운영현금의 2,319억달러(36.3%) 증가에 기인한다.

순 대여금은 비연방 기관의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혹은 특정 활동이나 투자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부 및 중소기업청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로 구성된다. 2024회계연도 중에 순 대여금은 559억달러(3.3%) 증가하였으며, 이 중 약 4분의 3은 교육부와 중소기업청에서 발생하였다.

순 유형자산은 주로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운영에 핵심이 되는 건물, 구조물, 시설, 장비, 내부 사용 소프트웨어 및 일반 용도의 토지로 구성되며, 국방부의 유형고정 자산이 상기 순 유형자산이 약 64.7%를 차지한다. 2024회계연도 중에 780억달러(6.3%)가 증가하였다.

부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방채무 및 미지급이자(政府 적자 해결을 위한 차입으로 발생하며, 전년 대비 1조 9,912억달러(7.6%)가 증가하여 28조 3,389억달러였다. 또 다른 주요 항목은 연방직원 및 재향군인 복지급여충당부채(즉 군인과 연방 직원을 위한 정부 연금 및 기타 복지제도, benefits payable)이며, 2024회계연도 중에 6,658억달러(4.8%)가 증가한 약 15조 334억달러였다. 총 금액은 재직 및 퇴직 연방직원을 위한 복지급여충당부채 3조 5천억달러와 군인 및 재향군인을 위한 11조 6천억달러로 구성된다.

그림 1 2024회계연도 미국 연방 자산 및 부채 현황



출처: 미국 재무부, "미국 연방 재무보고서(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Y2024),"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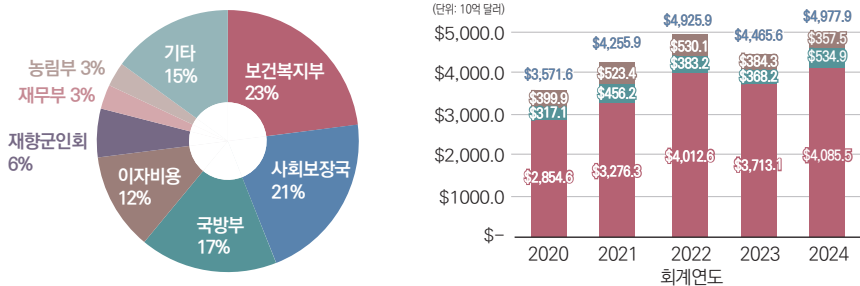
2) 수익 및 비용

미국 정부는 순원가로부터 총수익을 차감 및 일부 조정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최종결과인 '순운영원가(net operating cost)⁵⁾'를 산출한다. 2024회계연도의 순운영원가는 전년 대비 약 9,922억달러(29.0%) 감소한 2조 4,250억달러로 적자 규모가 감소하였다.

순운영원가 감소 원인은 지난 회계연도 보고실체의 순원가가 4,799억달러(6.1%) 감소하고 총수익(세금 및 기타수익)이 5,123억달러(11.5%)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원가의 감소는 정부 전반에서 상쇄되는 많은 증가와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예를 들면 ① 재향군인회, 국방부, 인사관리처와 같이 연방직원 및 재향군인 복지급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기복지급여충당부채 산출 시 적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화에 기인한 4,770억달러 감소 ② 재무부의 코로나19 국가 및 지방 재정 회복 기금(the Coronavirus State and Local Fiscal Recovery Funds)과 코로나19 관련 환급금 및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s) 관련 생활구조자금 및 선급금 등과 같은 코로나19 구제사업 관련 비용의 감소 및 ③ 교육부가 대법원의 바이든 대 네브라스카(Biden v. Nebraska) 판결에 따라 광범위한 학자금 대출 부채 구제 조치를 취소하는 하향 수정사항에 따른 비용 감소 ④ 연방채무 증가와 평균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2,311억달러 증가 등에 기인한다.

세금 및 기타수익의 증가는 주로 개인과 법인으로부터의 소득세 징수 증가에 기인한다.

그림 2 2024회계연도 미국 순원가(좌) 및 2020-2024회계연도 세금 및 기타수익(우)



출처: 미국 재무부, "미국 연방 재무보고서(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Y2024),"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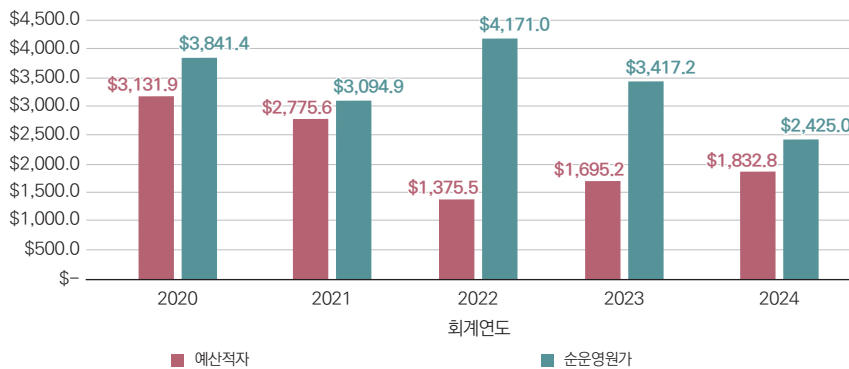
5) 순운영원가 = 순원가 - 세금 및 기타수익(Total Tax and Other Revenues)

3) 예산보고서 및 재정보고서 간 비교

“미국 연방정부 재무보고서”는 예산보고서와 재무보고서의 결과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 2024회계연도 예산적자(budget deficit)는 전년 대비 약 1,376억달러(8.1%)가 증가한 1조 8,328억달러이다. 예산적자와 순운영원가 간의 차이인 5,922억달러는 예산 적자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순운영원가에는 포함되는 비용이 주된 원인이다. 특히 재향군인회, 국방부, 인사관리처가 운영하는 연방 직원 및 재향군인 복지급여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험수리적 비용이 이 차이를 크게 확대시킨다.

그림 3 2020-2024회계연도 미국 예산적자 및 순운영원가

(단위: 십억달러)



출처: 미국 재무부, “미국 연방 재무보고서(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Y2024),” 2025.

다.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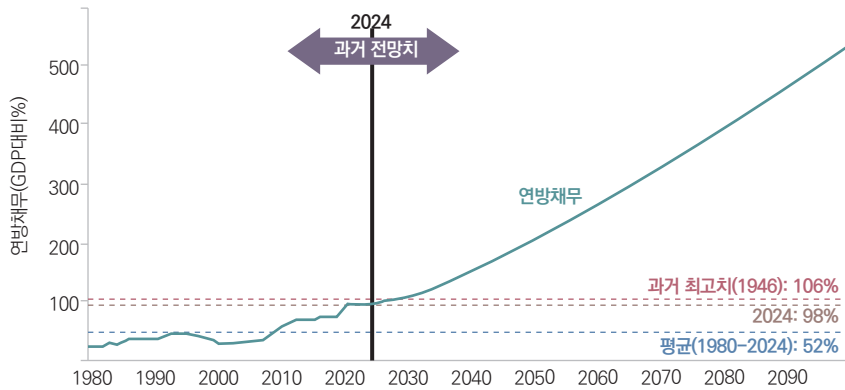
GDP 대비 재무성과(financial results)는 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의 역량을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이며, 「미국 연방정부 재무보고서」는 GDP 대비 연방채무 비율 등을 포함한 여러 데이터를 통해 현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08~2009년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GDP 대비 기본적자 비율이 급증했고, 2020년에는 COVID-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경제침체로 다시 상승했다. 경기 부양과 회복 지원을 위해 시행된 지출 증가와 일시적 세금 감면이 두 기간 모두 높은 기본적자를 초래해 부채 대비 GDP 비율을

급격히 높였다. 2024년 기본적자의 GDP 비율은 3.3%로, 전년 대비 0.5%p 감소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수입 증가에 기인한다.

2024회계연도 말 기준 GDP 대비 연방채무 비율은 약 98%였으며, 현행 정책과 본 보고서의 가정에 따르면 2099년에는 5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연방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주요 원인은 기본적자가 연방채무 수준을 높이기 때문이다. GDP 대비 연방채무 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은 현행 재정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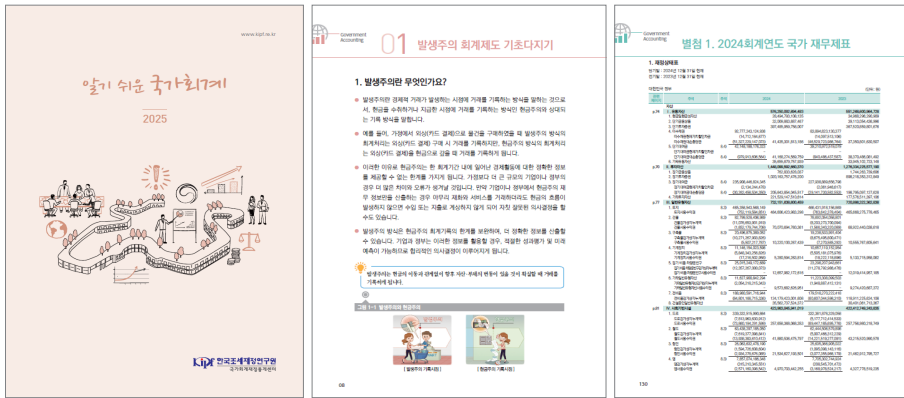
그림 4 비정부부문 보유 연방채무에 대한 과거 및 현행 정책 전망(1920~2099년)



출처: 미국 재무부, "미국 연방 재무보고서(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Y2024)," 2025.

04 『2025 알기 쉬운 국가회계』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2016년도부터 매년 『알기 쉬운 국가회계』를 발간해 오고 있다. 『알기 쉬운 국가회계』는 국민들이 국가회계기준과 발생주의 재무보고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포그래픽과 해설을 제공하고 있어, 국가회계 교육자료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지

내지

『알기 쉬운 국가회계』는 제1장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다지기, 제2장 국가 회계제도 이해하기, 제3장 국가 재무제표 들여다보기, 제4장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제5장 국가 재무제표 ‘더’ 들여다보기로 구성되어 국가회계제도 및 국가재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별첨에는 국가결산보고서에서 발췌한 국가 재무제표 본문과 국가회계실체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알기 쉬운 국가회계』의 올해 연례 개정판인 『2025 알기 쉬운 국가회계』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2년 12월에 발표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에 대한 요약を提供하고 있다. 센터는 재정상태표 분류체계 개편 및 간소화, 재정운영표 분야별·성질별 개편, 현금흐름표 도입, 주식 체계 개편 등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이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새로운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25 알기 쉬운 국가회계』 책자는 2025년 8월에 배포되었으며, 해당 파일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국가회계
재지통계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25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 『202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 2025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3~10차)
- 2025회계연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01 2025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및 한국재정정보원과 함께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중간점검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① 전기오류수정손익 적정성 ② 지출금반납금의 잡이익 계상 오류 ③ 자산 취득금액의 비용처리 오류 ④ 내부거래 제거 ⑤ 건설 중인 자산 적정성 ⑥ 계정과목 선택 오류(총 6가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중간점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월 15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기획재정부의 국가회계 동향 및 중간점검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중간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에 대한 설명과 한국재정정보원의 자체점검보고서 제출방법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고취시키기 위해 설명회 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부처 결산담당자는 설명회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기금별로 6개 항목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보고서를 11월 5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점검보고서를 취합·분석하여 부처별 점검 실적을 확인하고, 오류 조치율이 전년도 실적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자체보고회의를 실시하고자 한다.

02 『202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및 한국재정정보원과 함께 『202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을 발간한다. 이번 책자는 2024년에 발간했던 『2024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에 2024회계연도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새로이 반영하며 이용자의 관점에서 좀 더 알기 쉽게 다듬은 것이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결산담당자용’은 한 권으로, ‘업무담당자용’은 ‘수입·지출’과 ‘국유재산·물품’ 두 권으로 나누어 발간한다.

결산담당자용은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와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 및 ‘결산업무 단계별 오류사례’의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에서는 과거 10년간(2015~2024년) 감사원 지적사례를 분석하여 유형별, 중앙관서별로 통계자료를 제시하였다.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적사례를 선정하여 각 유형별로 감사원 지적 발생원인과 점검 및 조치 방안을 서술하였다. 2024회계연도에 발생한 감사원 지적건수의 79%가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에 해당하므로, 결산담당자가 책자를 활용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한다면 감사원 지적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결산업무 단계별 오류사례’에서는 수정 전 시산표 마감 전부터 결산서 발행까지 결산업무 단계별로 발생하는 오류 유형 및 오류 정정방법 등을 제시하여 결산담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으로 10년간의 각 중앙관서별 감사원 지적사항과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를 1:1로 매칭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관서 결산담당자는 각 중앙관서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사항의 파악이 용이해져 감사원 대응이 쉬워질 것이며, 지적사례를 해결하는 방법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업무담당자의 책자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담당자용의 ‘수입·지출’과 ‘국유재산·물품’은 업무담당자가 재정정보시스템

(dBrain+)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시킨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및 오류정정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여, 업무담당자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제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5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나 재정정보시스템(dBrain+) 게시판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03 2025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3~10차)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지난 3분기 동안 국가회계 전문교육 3차~10차를 개최하였다. 올해 교육은 집합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전국 6개 주요 도시(서울 4회,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세종)에서 총 9회 진행되었으며, 각 과정마다 1차수는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여 총 4회의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였다.

각 차수는 3일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회계 이론과정 2일과 국가회계 실무과정 1일로 진행되었다. 이론과정 1일차에는 정광화 교수(강원대학교), 엄기중 교수(순천대학교), 임채창 교수(경국대학교), 이재혁 회계사(진회계법인), 김상노 회계사(한길회계법인)가 차수별로 강의하였으며, 이들은 회계원리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기초에 대해서 국가회계를 처음 접하는 수강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어서 김상노 회계사, 이재혁 회계사, 방민식 회계사(이촌회계법인)가 국가회계제도의 주요 체계와 발생주의 국가회계 내용을 다루었다. 2일차에는 허웅 회계사(이정회계법인)가 세입·세출 거래, 복식부기, 결산조정 및 발생주의에 대해 강의하였으며, 이후 종합사례 연습을 통해 앞선 교육 내용을 정리하고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수정후 시산표 및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과정을 가져 수강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3일차 실무과정은 '수입·지출'(1·2·5·6·9차)과 '국유·물품·사업'(3·4·7·8·10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전년도 교육과정에서는 '수입·지출'의 비중이 높았으나, 올해는 회계직 공무원의 현황을 반영하여 '국유·물품·사업'의 비중을 높여 동일한 횟수로 교육 과정을 실시하였다. 실무과정은 센터 소속 회계사들이 '회계 업무 유형별 dBrain 오류 사례와 해결 방법'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재무제표 들여다보기' 세션에서는 모완수 회계사(대성삼경회계법인)가 회계 담당 공무원들이 국가재무제표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교육을 마무리하였다.

04 2025회계연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5회계연도 국가재무결산을 앞두고, 오는 10월 중앙부처 재무결산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무결산실무 과정을 운영한다.

본 과정은 재무결산 절차 및 유의사항 등 교육을 통해 2025회계연도 재무결산 업무 수행 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 참석자는 본 교육을 통해 올해 국가결산의 방향과 주요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학습하게 된다. 교육 1일차에는 ‘① 재무결산의 이해 ② 2025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③ 감사원 지적사례’를, 2일차에는 ‘① 내부거래실무 ② 결산조정분개 ③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재무결산 절차와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다루어, 2025회계연도 재무결산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수강생들은 올해 국가결산의 방향을 이해하고, 주요 오류사항과 그 처리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 ▶ 1일차: 재무결산의 이해, 2025회계연도 주요 유의사항, 감사원 지적사례
- ▶ 2일차: 내부거래실무, 결산조정분개, 결산보고서 작성

교육 강사로는 본 센터 결산분석팀 연구진(공인회계사)이 참여한다. 결산분석팀은 국가결산 업무와 국가회계교육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회계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회계이론 중급과정에 해당하는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도 실시한다. 이 과정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전에 국가회계 이론과정을 이수하고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10월에 개최되는 ‘재무결산실무’ 과정은 집합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며,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만 진행한다.

- ▶ 재무결산실무: 집합교육(서울)과 비대면 과정 각각 2일간, 총 2개 차수 운영
- ▶ 국가회계의 활용: 비대면 과정 1일간, 1개 차수 운영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교육 과정들은 국가회계교육포털 홈페이지(www.kipf.re.kr/edu/)에서 신청할 수 있다.

표 1 재무결산실무 과정 일정

지역	일정	시간	교육방식/장소	정원
서울	10. 16.(목) ~ 10. 17.(금)	10:00 ~ 17:30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	100명
무관	10. 23.(목) ~ 10. 24.(금)	10:00 ~ 17:30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120명

표 2 재무결산실무 과정 커리큘럼

일자	교육과목	시간	주요 내용
1일차	재무결산의 이해	1.5	1.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의의와 도입과정
			2.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3. 국가재무제표의 이해
4.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024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0	1.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3. 재무정보 조회 및 점검 방법	
		4. 수정전산사표 마감 전 유의사항	
2일차	내부거래실무	1.5	1.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
			2. 주요 감사원 지적사례
2일차	내부거래실무		1.5
		2. 내부거래 제거 방식	
		3. 결산담당자 유의사항 및 처리방법	

표 2 의 계속

일 자	교육과목	시간	주요 내용
2일차	결산조정분개	2.0	1. 국가회계 결산조정분개의 이해 2. 결산조정분개 오류사례
	결산보고서 작성	2.5	1. 결산작성지침 개요 2. 결산보고서 생성 3. 결산보고서 발행

표 3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 일정

지 역	일 정	시 간	교육방식	정 원
무관	10. 29.(수)	10:00 ~ 17:00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120명

표 4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 커리큘럼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1일차	국가회계정보와 결산보고서	1.0	1.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2. 정보로서의 국가결산보고서의 이해
	프로그램세출과 프로그램원가, 그리고 재정운영표의 해석	3.0	1. 국가회계에서 원가계산의 의미 2. 프로그램세출 정보 3. 프로그램세출과 프로그램원가의 관계 4.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특성 및 활용방안 5. 재정운영표의 이해 6. 종합사례
	자산, 부채, 그리고 재정상태표의 해석	2.0	1. 재정상태표 개념과 의미 2. 자산구성: 금융자산과 서비스자산 3. 부채구성: 금융부채와 총당부채



재정통계 동향



-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 OECD 사회보장기금 재정통계 분석

01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가. 「2026년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는 2025년 8월 29일(금)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고성과 부문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구조조정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통한 경제 회복과 성장으로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방침으로 구체적인 중점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다.

투자 중점	내용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3강 도약을 위한 대전환 • R&D 확대, 유망기업 스케일업으로 신산업 혁신 • 통상 현안 대응 및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가속화 뒷받침 •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전방위 지원 • 저출생·고령화 대응 •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 • 민생경제 회복,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 산재예방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예측·예방·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 • 군 자금심 고취, 첨단군대 육성 •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중 중점 투자방향

1) 재정 총량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 세수 확보 노력 등으로 전년 대비 7.8조원(2.0%)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14.8조원(5.5%) 증가하여 총수입은 전년 대비 22.6조원(3.5%) 증가한 674.2조원으로 전망된다.

총지출 중 의무지출은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 소요 증가 및 국채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3.0조원(6.3%) 증가하고, 재량지출의 경우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 부문 투자 등으로 전년 대비 31.7조원(10.3%) 증가하여, 총지출은 전년 대비 54.7조원(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각각 △2.0%, △4.0%로 전년 대비 각각 1.1%p, 1.2%p 감소해 재정적자 확대가 예상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전년 대비 3.5%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2026년 재정운용 모습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
◇ 총수입	651.6	674.2	22.6	3.5
- 국세수입	382.4	390.2	7.8	2.0
- 세외수입	269.1	283.9	14.8	5.5
◇ 총지출	673.3	728.0	54.7	8.1
- 의무지출	365.0	388.0	23.0	6.3
- 재량지출	308.3	340.0	31.7	10.3
◇ 통합재정수지	△21.7	△53.8	△32.1	
(GDP 대비)	(△0.8%)	(△2.0%)	(△1.1%p)	
◇ 관리재정수지	△73.9	△109.0	△35.1	
(GDP 대비)	(△2.8%)	(△4.0%)	(△1.2%p)	
◇ 국가채무	1,273.3	1,415.2	141.8	
(GDP 대비)	(48.1%)	(51.6%)	(3.5%p)	

출처: 1.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중 2026년 예산안 전체 모습을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의무·재량지출 추가 작성

2. 의무·재량지출은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중 '재정지출' 참조

2) 분야별 자원배분

「2026년 예산안」에서는 12개 분야별 자원배분을 하였고, 주요 분야별 예산 증감 내역은 <표 2>와 같다.

표 2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단위: 조원, %)

구 분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B-A)	증감률(%)
◆ 총지출	673.3	728.0	54.7	8.1
1. 보건·복지·고용	248.7	269.1	20.4	8.2
2. 교육	98.5	99.8	1.4	1.4
3. 문화·체육·관광	8.8	9.6	0.8	8.8
4. 환경	13.0	14.0	1.0	7.7
5. R&D	29.6	35.3	5.7	19.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2	32.3	4.1	14.7
7. SOC	25.4	27.5	2.0	7.9
8. 농림·수산·식품	25.9	27.9	2.0	7.7
9. 국방	61.2	66.3	5.0	8.2
10. 외교·통일	7.7	7.0	△0.7	△9.1
11. 공공질서·안전	25.0	27.2	2.2	8.8
12. 일반·지방행정	110.7	121.1	10.4	9.4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12개 분야 중 2025년 예산 대비 2026년 예산안 증감률이 큰 7개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R&D 분야의 경우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기술 개발 투자 확대, 출연연의 국가 임무 중심 대규모 융합연구 체제 전환, 첨단인재 양성-유치-유출방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지출이 19.3%(29.6조→35.3조원) 증가하였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첨단·주력산업 고도화 및 유망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및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 지원, AI·딥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 혁신 스타트업 육성 강화,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및 근본적 경쟁력 강화와 시장·상권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지출이 14.7%(28.2조→32.3조원) 증가하였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정부·지자체 AI 서비스 확산 및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및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등 정책금융 확대, 지역 균형발전 및 과거사 극복 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위한 지출로 전년 대비 지출이 9.4%(110.7조→121.1조원) 증가하였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현장대응을 위한 인력·장비 확충 및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기후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지역맞춤형 재해예방 인프라 확대 및 AI·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재난 대응 체계 확충을 위해 전년 대비 지출이 8.8%(25.0조→27.2조 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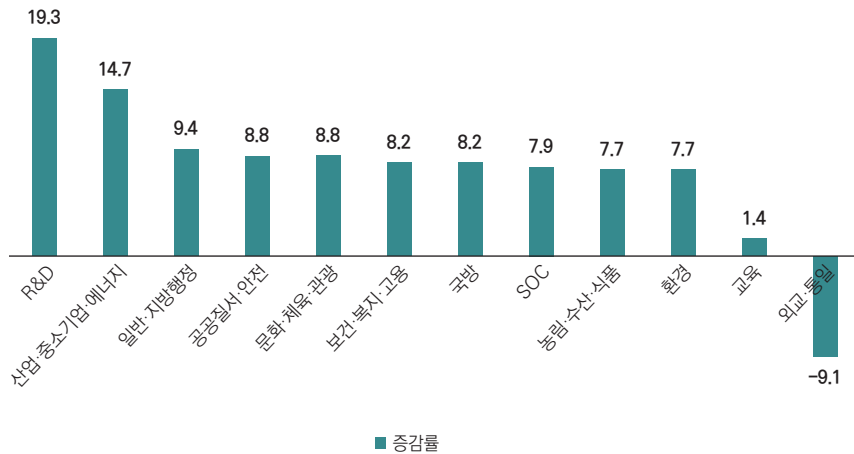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K-컬처 확산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문화 향유 격차 해소, 지역관광 활성화 및 체육 기반 강화, 국가유산 재난피해 대응 역량 강화 및 전국민 체험·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지출이 8.8%(8.8조→9.6조원) 증가하였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의 구축, 양육부담 경감 등 저출생 반등 공고화 및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년 대비 지출이 8.2%(248.7조→269.1조원)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방 분야의 경우 보수, 급식·피복, 교육·훈련 등 장병 인적투자의 전방위 확대, 재래식 무기를 미래전 대비 최첨단 무기체계(AI·드론·로봇 등)로 전환 및 K-방산 육성을 위해 전년 대비 지출이 8.2%(61.2조→66.3조원) 증가하였다.

그림 1 분야별 정부지출 증감률

(단위: %)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중 '분야별 재원배분 모습'을 바탕으로 국회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기획재정부는 2025년 8월 29일(금)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포함 5개 회계연도에 대해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운용 계획으로, 재정의 역할과 함께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1)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재정수입은 기업실적 개선 및 경기회복 등에 따라 2025년 651.6조원(국회 확정예산 기준)에서 2029년 771.1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지출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세계 무역질서 변화, 양극화 심화 등 대내외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 소요 증가로 2025년 673.3조원(국회 확정예산 기준)에서 2029년 834.7조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25년 GDP 대비 $\Delta 0.8\%$ 에서 2029년에는 $\Delta 2.1\%$ 로 적자 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역시 2025년 $\Delta 2.8\%$ 에서 2029년에는 $\Delta 4.1\%$ 수준으로 적자 폭이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29년까지 GDP 대비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은 <표 3>과 같다.

표 3 2025년~2029년 중기 재정총량

(단위: 조원, %)

구분	2025년 ¹⁾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재정수입	651.6	674.2	705.0	733.7	771.1
재정지출	673.3	728.0	764.4	802.6	834.7
통합재정수지	$\Delta 21.7$	$\Delta 53.8$	$\Delta 59.4$	$\Delta 68.9$	$\Delta 63.6$
(GDP 대비, %)	($\Delta 0.8$)	($\Delta 2.0$)	($\Delta 2.1$)	($\Delta 2.3$)	($\Delta 2.1$)

표 3 의 계속

구분	2025년 ¹⁾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73.9 (△2.8)	△109.0 (△4.0)	△115.4 (△4.1)	△128.9 (△4.4)	△124.9 (△4.1)
국가채무 (GDP 대비, %)	1,273.3 (48.1)	1,415.2 (51.6)	1,532.5 (53.8)	1,664.3 (56.2)	1,788.9 (58.0)

주: 1) 국회 확정예산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 9.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편집

2)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원인 분석

재정수입은 2025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거나 2024~2028년 계획상 예측경로(연평균 증가율 4.6%)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연평균 증가율 4.3%) 기대된다.

재정지출은 2025~2029년 기간 중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도 계획에서 제시한 2024~2028년 5개년 평균 증가율 3.6%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전년 계획 대비 2025~2029년 계획상 재정지표가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재정여건 변동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전망의 변화는 <표 4>와 같다.

표 4 중기 재정총량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평균 증가율	
재정수입	'24~'28년 계획 (증가율)	612.2 (△2.2)	651.8 (6.5)	677.7 (4.0)	706.4 (4.2)	731.5 (3.6)	- -	4.6
	'25~'29년 계획 (증가율)	- -	651.6 (6.4)	674.2 (3.5)	705.0 (4.6)	733.7 (4.1)	771.1 (5.1)	4.3
재정지출	'24~'28년 계획 (증가율)	656.6 (2.8)	677.4 (3.2)	704.2 (4.0)	730.3 (3.7)	756.2 (3.5)	- -	3.6
	'25~'29년 계획 (증가율)	- -	673.3 (2.5)	728.0 (8.1)	764.4 (5.0)	802.6 (5.0)	834.7 (4.0)	5.5

표 4 의 계속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연평균 증가율
통합재정 수지	'24~'28년 계획 (GDP 대비)	△44.4 (△1.8)	△25.6 (△1.0)	△26.6 (△1.0)	△23.9 (△0.8)	△24.7 (△0.8)	-	-
	'25~'29년 계획 (GDP 대비)		△21.7 (△0.8)	△53.8 (△2.0)	△59.4 (△2.1)	△68.9 (△2.3)	△63.6 (△2.1)	
관리재정 수지	'24~'28년 계획 (GDP 대비)	△91.6 (△3.6)	△77.7 (△2.9)	△75.8 (△2.7)	△73.1 (△2.5)	△72.2 (△2.4)	-	-
	'25~'29년 계획 (GDP 대비)	-	△73.9 (△2.8)	△109.0 (△4.0)	△115.4 (△4.1)	△128.9 (△4.4)	△124.9 (△4.1)	
국가채무	'24~'28년 계획 (GDP 대비)	1,195.8 (47.4)	1,277.0 (48.3)	1,353.9 (49.1)	1,432.5 (49.8)	1,512.0 (50.5)	-	-
	'25~'29년 계획 (GDP 대비)	-	1,273.3 (48.1)	1,415.2 (51.6)	1,532.5 (53.8)	1,664.3 (56.2)	1,788.9 (58.0)	

주: 2025~2029년 계획은 (2025년) 국회 확정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3)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절차, 대내·외 경제 여건 및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의 방향뿐만 아니라 12대 분야별 투자방향과 재정 혁신 방향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재정혁신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지출 구조조정

재량지출 중 관행적·낭비성 지출을 점검하여 효율화하고, 성과 위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재정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의무지출 중 경직적 지출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나) 세입기반 확충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응능부담 원칙과 과세형평을 고려한 세부담 정상화 및 과세체계 합리화, 과다·중복 지원 또는 정책효과 미흡 등의 불요불급한 비과세 및 감면 제도 정비, AI를 활용한 세정 효율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세금 탈루 축소 등의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다) 재정관리체계 효율화

주요 세부사업에 대한 재정성과 정보를 추가하여 예결산 심사를 뒷받침하는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R&D 사업유형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략적 적기 투자를 위해 평가체계를 점검하는 등 예타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편 초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 국가계약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AI·융복합 등 미래 첨단 분야 혁신기업에 대한 지속적 성장 지원을 하는 등 계약·조달 부문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적발률 제고를 통해 보조금 운용 역시 효율화할 예정이다.

라) 공공·민간자원 활용

민간투자 활성화(신유형 발굴, 사업여건 개선 등)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청년창업정책을 창업생태계 조성 방식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지자체 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며, 공공기관 고유업무 중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마) 재정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성과 중심 재정운용과 지출구조조정 및 과세 정상화 등 지속적 재정 혁신, 재정 규율 마련을 통해 중장기적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여 예산과정에서 국민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쌍방향·현장 중심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재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재정교육도 활성화(이러닝 콘텐츠 확충 및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 등)할 예정이다.

02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 전망

기획재정부는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9월 3일(수)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새정부의 국가전략 어젠다에 맞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주택·도로 등 대국민 필수 SOC 투자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의 대상 기관은 총 35개¹⁾이며, 기관별로 향후 5년간의 경영 목표와 투자방향, 연도별 자산 및 부채 규모 등의 재무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2025~2029년 기간 중 35개 기관의 자산은 분야별 투자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등으로 217.4조원 증가하여 2029년 1,293.8조원으로 전망하였고, 부채는 127.6조원 증가하여 2029년 847.8조원으로 전망하였으나 2027년부터는 부채 규모의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았다. 한편 부채 비율은 2025년 202.2%에서 12.1%p 하락한 190.1%까지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산 217.4조원 증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택지·주택공급 확대 및 고속도로 건설 투자로 인해 SOC 분야에서 140.9조원, 송배전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에너지 분야에서 56.6조원, 새출발기금 등 정책금융 확대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10.8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부채 127.6조원 증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택지·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SOC 분야에서 103.0조원, 전력망 등 투자 확대로 에너지 분야에서 19.2조원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시기에 집행된 정책자금의 상환 확대 등으로 금융 분야의 경우 0.7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의무)이 있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대상으로, 대한석탄공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어 제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4년 결산 실적 자산 2조원 초과하여 추가됨.

표 1 전체 기관(35개) 자산, 부채, 부채 비율 실적(2024년) 및 전망(2025년~2029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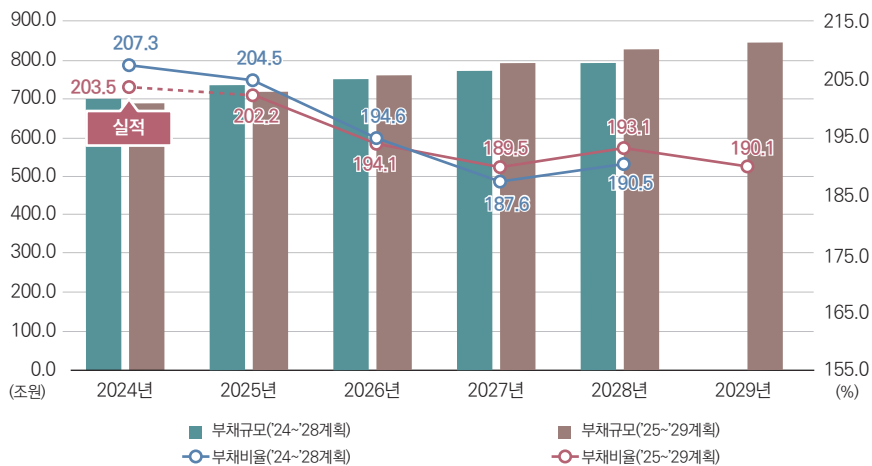
구분	2024년 (실적)	2025년 (A)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B)	증감 (B-A)
자산	1,033.4	1,076.4	1,153.4	1,211.1	1,257.3	1,293.8	217.4
중장기재무관리 계획 수립 대상 (35개) 부채	692.9	720.2	761.2	792.8	828.3	847.8	127.6
부채 비율	203.5%	202.2%	194.1%	189.5%	193.1%	190.1%	△12.1%p

출처: 기획재정부, 「2025~2029년 재정 관련 자료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나. 부채 규모 및 부채 비율 지난해 계획 대비 비교

전년도 계획(2024~2028년) 대비 올해 계획(2025~2029년)의 부채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부채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비율은 2025년 기준 2.3%p, 2026년 기준 0.5%p 하락했으나 2027년 기준 1.9%p, 2028년 기준 2.6%p 증가하였다. 전년도 계획(2024~2028년) 대비 2027년 및 2028년의 부채 비율이 증가한 것은 동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규 택지조성 착수, 매입임대 등의 소요가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

그림 1 전체 중장기 대상기관 부채 규모·비율 전년도 계획과 비교



출처: 기획재정부, 「2025~2029년 재정 관련 자료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다. 향후 추진계획

기획재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AI 인프라 등 핵심 과제별로 실행 계획 및 추진 현황 등을 관리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사업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며, 정책여건 변화 및 기관별 재무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결과를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연동·반영하여 재무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03 OECD 사회보장기금 재정통계 분석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IMF Data Portal에 공시된 재정운영표와 재정상태표를 활용하여 OECD 회원국의 사회보장기금 재무 현황을 분석하였다.²⁾

가. 사회보장기금의 개요³⁾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특수한 형태의 정부단위로, 거시경제통계상 별도의 기관단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정부의 다른 활동과는 별도로 조직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둘째, 다른 정부단위와 별도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해야 한다. 셋째, 자기(기관) 부담으로 재무적 거래에 종사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지역사회 전체 또는 지역사회의 상당 부분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제도로, 정부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고 통제된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수혜자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고, 수혜자는 기여금을 납부함으로써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납부한 기여금과 수령할 혜택 간에 반드시 직접적인 연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장기금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질병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보건 관련 정부 부처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연금제도의 경우 자율적인 고용 관련 연금기금이 설치되어 별도의 기관단위로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기금은 사회보장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이 운영하는 공무원의 비자율적 고용 관련 연금제도는 사회보장기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해당 연금제도의 가입 및 급여 지급 조건이 민간 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조건과 다를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고용 관련 연금제도로 분류된다.

2) IMF Data Portal(<https://www.imf.org/en/Data>)에서 2025. 8. 18. 조회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통계 매뉴얼 2014」, pp. 61~62.

나. 공시 현황

사회보장기금의 재정운영표는 2023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38개) 중 총 24개국이 공시하였다.⁴⁾ 한편 사회보장기금의 재정상태표는 총 21개국이 공시하였다.

표 1 2023년 기준 사회보장기금 재무제표 공시 현황

(단위: 국가 수)

사회보장기금 GFS 재무제표	공시	비공시	합계
재정운영표	24	14	38
재정상태표	21	17	38

출처: IMF Data Portal, 2025. 8. 18.,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정운영표의 경우 수익과 비용을 모두 공시하였고, 재정상태표의 경우 금융자산과 부채는 모두 공시한 반면 비금융자산은 4개국에서만 공시하였다.

표 2 2023년 기준 사회보장기금 계정 공시현황

(단위: 국가 수)

재무제표	구분	공시	비공시
재정운영표 (24개)	수익	24	14
	비용	24	14
재정상태표 (21개)	비금융자산	4	34
	금융자산	21	17
	부채	21	17

출처: IMF Data Portal, 2025. 8. 18.,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4) 2022년의 경우 총 31개국이 사회보장기금 재정운영표를 공시했으나, 2023년의 경우 공시 지연 등의 이유로 7개국(벨기에, 체코,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스웨덴)이 제외됨.

다. OECD 회원국별 사회보장기금 수입, 지출, 재정수지

2023년도 OECD 24개국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기금의 수입(수익), 지출(비용+비금
용자산 순투자) 및 재정수지를 정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3 2023년도 사회보장기금 수입, 지출,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국가명	수입(A)	지출(B)	재정수지(A-B)
오스트리아	17.5	17.7	△0.1
캐나다	4.1	2.9	1.2
콜롬비아	9.3	9.2	0.2
코스타리카	13.9	10.8	3.1
덴마크	1.4	1.4	0.0
에스토니아	8.2	7.8	0.4
핀란드	20.5	19.2	1.4
프랑스	26.4	26.0	0.4
그리스	21.8	21.4	0.4
아이슬란드	8.8	8.7	0.1
이스라엘	9.1	8.7	0.4
이탈리아	20.3	20.0	0.2
라트비아	10.6	9.9	0.7
리투아니아	14.7	13.3	1.4
룩셈부르크	20.5	19.0	1.5
멕시코	5.4	5.1	0.3
네덜란드	17.3	15.5	1.7
폴란드	16.0	16.4	△0.5
포르투갈	14.2	12.1	2.1
슬로베니아	18.0	17.9	0.0
스페인	15.2	15.8	△0.6
스위스	9.3	8.7	0.6
터키	8.1	7.5	0.6
미국	6.6	9.4	△2.8

출처: IMF Data Portal, 2025. 8. 18.,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사회보장기금 수입은 프랑스(26.4%), 그리스(21.8%), 핀란드(20.5%), 룩셈부르크(20.5%)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기금 지출은 프랑스(26.0%), 그리스(21.4%), 이탈리아(20.0%)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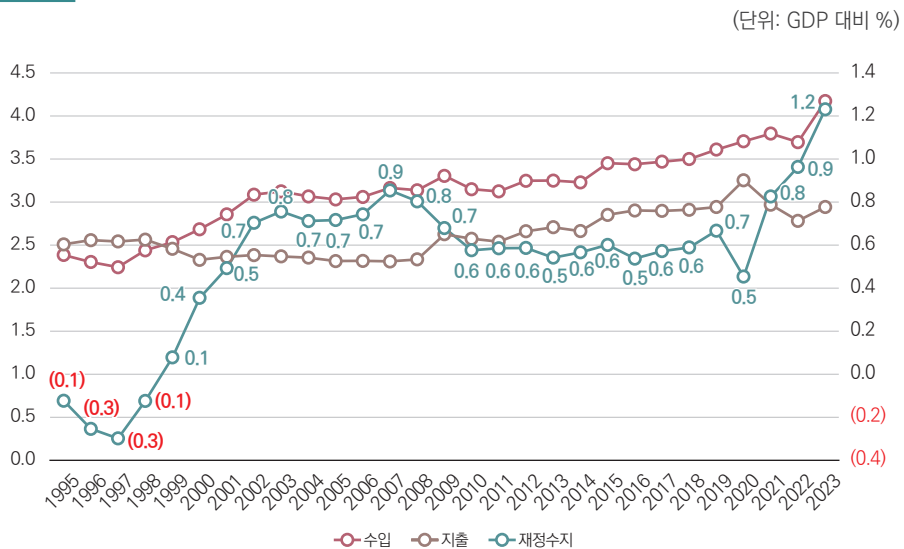
사회보장기금 재정수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 대비 ±1%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기금의 수입 구성은 사회보험료, 정부출연금, 기타수익 등으로, 사회보장기금의 재정 부족분은 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Grant)을 통해 보전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 OECD 주요국의 사회보장기금 재정 추이

캐나다, 프랑스, 일본,⁵⁾ 미국, 스페인을 대상으로 1995~2023년의 사회보장기금 수입, 지출, 재정수지 추이를 분석하였다.

1) 캐나다

그림 1 캐나다의 재정 추이



출처: IMF Data Portal, 2025. 8. 18.,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5) 일본은 2023년 자료가 공시되지 않아 1995~2022년의 자료를 분석하였음.

캐나다의 사회보장기금 수입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지출의 경우 코로나 19 위기 시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GDP 대비 3%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재정수지는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 중이며, 2023년에는 GDP 대비 1.2%로 가장 높은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림 2 수입 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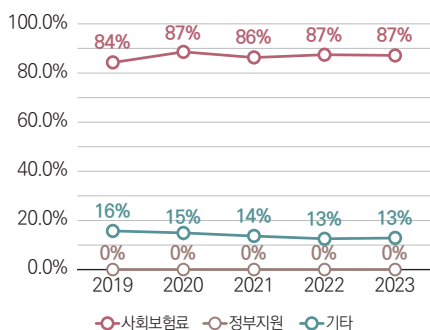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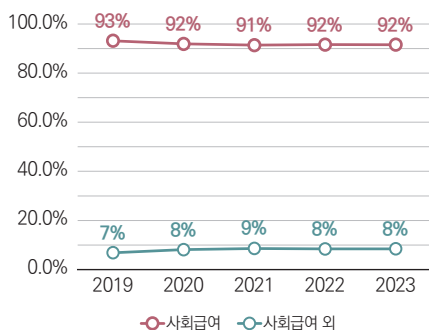


그림 3 지출 구성

(단위: %)



출처: IMF Data Portal, 2025. 8. 18.,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캐나다의 사회보장기금 수입은 사회보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2023년 87%), 꾸준히 8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보장기금 수입 중 정부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 조세와 출연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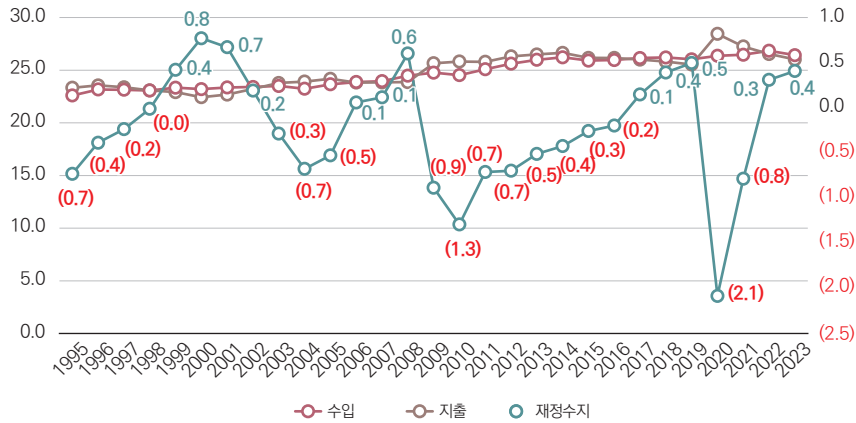
캐나다의 사회보장기금 지출은 사회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2023년 92%),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프랑스

프랑스의 사회보장기금 수입과 지출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재정수지의 경우 매년 GDP 대비 $\pm 1\%$ 내외에서 관리되는데,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Delta 2.1\%$ 의 가장 낮은 수준의 재정수지를 기록하였다. 재정수지는 2022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2023년에는 0.4%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림 4 프랑스의 재정 추이

(단위: GDP 대비 %)



출처: IMF Data Portal, 2025. 8. 18.,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프랑스의 사회보장기금 수입은 사회보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54%), 2020년부터 54%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지원(Grant)은 2020년부터 38%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분석을 수행한 5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프랑스 사회보장기금의 재정 부족분을 일반재정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기금 지출은 사회급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2023년 75%), 꾸준히 7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분석을 수행한 5개 국가 대부분 사회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인 반면, 프랑스의 경우 사회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편 사회급여 외 지출은 피용자 보상(2023년 11%),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2023년 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5 수입 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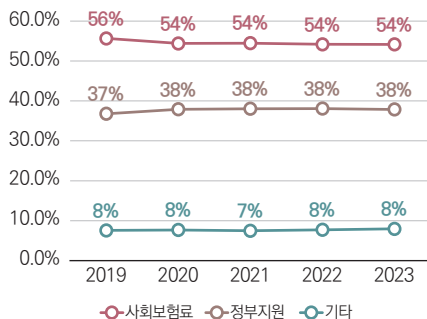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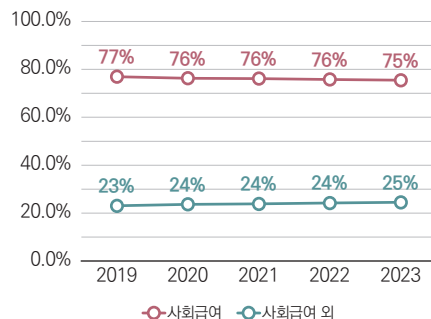


그림 6 지출 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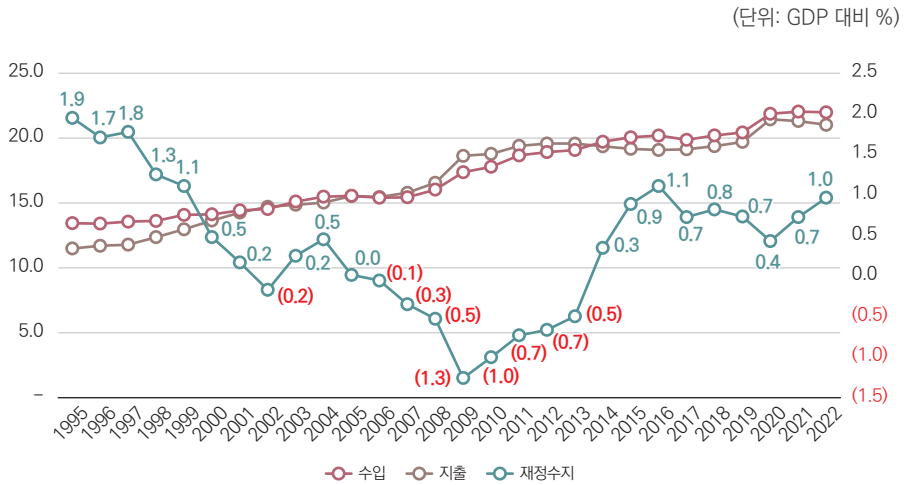


출처: IMF Data Portal, 2025. 8. 18.,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3) 일본

일본의 사회보장기금 수입과 지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회보장기금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에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후로는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7 일본의 재정 추이



출처: IMF Data Portal, 2025. 8. 18.,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일본의 사회보장기금 수입은 사회보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2022년 62%) 정부지원(Grant)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비중(2022년 34%)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8 수입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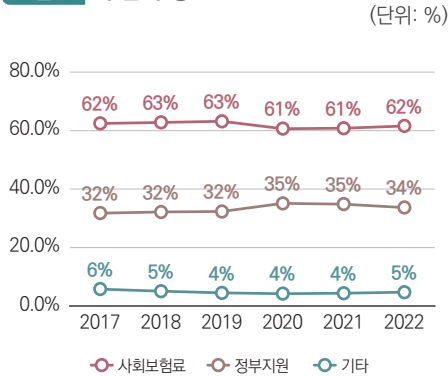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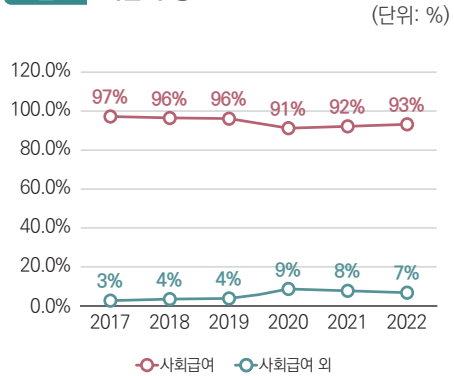


그림 9 지출 구성



출처: IMF Data Portal, 2025. 8. 18.,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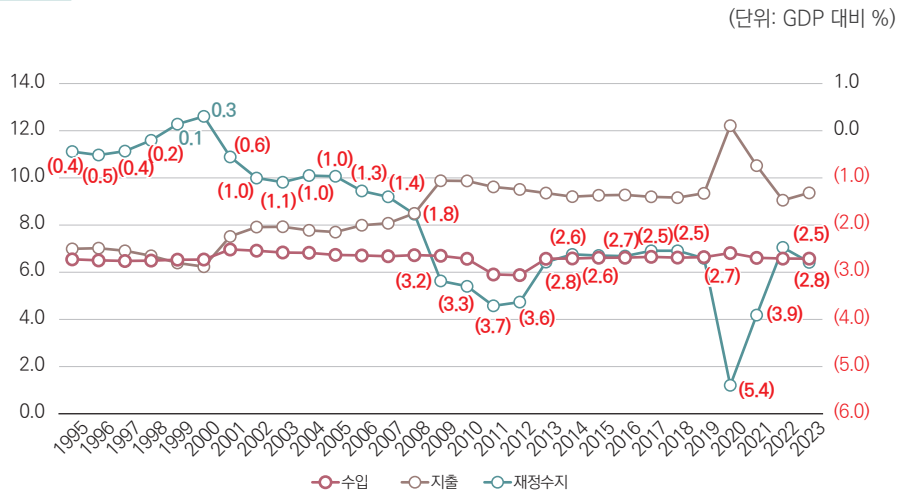
일본의 사회보장기금 지출은 사회급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2022년 93%), 2020년에 크게 감소한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회급여 외 지출은 출연금이 가장 큰 비중(2022년 2%)을 차지한다.

4) 미국

미국의 사회보장기금 수입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는 반면, 지출은 2008년(세계금융위기), 2020년(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시점에 매우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재정수지는 매년 큰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는데, 수입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0 미국의 재정 추이



출처: IMF Data Portal, 2025. 8. 18.,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미국의 사회보장기금 수입은 전액 사회보험료(100%)로 구성되며, 조세 및 출연금 등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특징이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기금 지출은 사회급여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2023년 95%), 사회급여외 지출은 모두 피용자 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 수입 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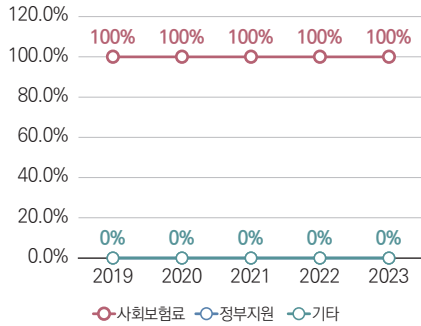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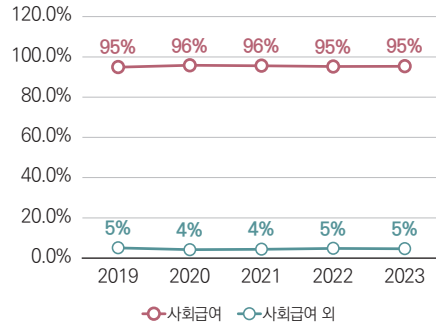


그림 12 지출 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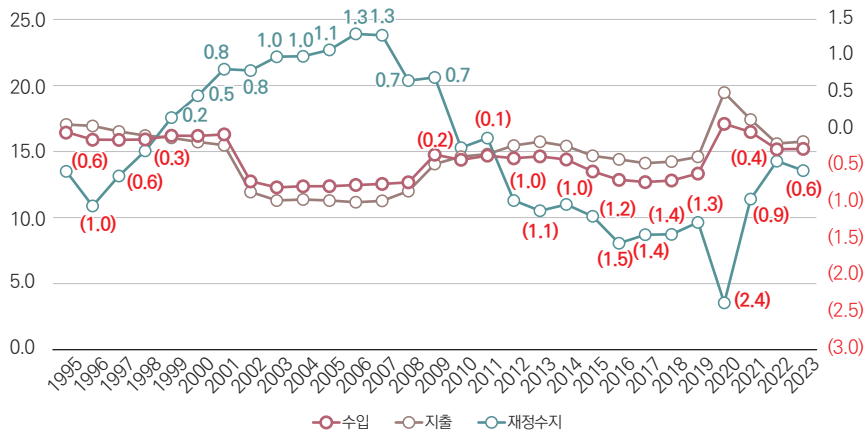
출처: IMF Data Portal, 2025. 8. 18.,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5) 스페인

스페인의 사회보장기금 수입과 지출은 변동이 심한 추세를 보이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도 변동성이 큰 편이다. 재정수지는 2010년을 기준으로 적자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남유럽 재정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보장기금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는 $\Delta 2.4\%$ 를 기록하였다.

그림 13 스페인의 재정 추이

(단위: GDP 대비 %)



출처: IMF Data Portal, 2025. 8. 18.,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스페인의 사회보장기금 수입 중 사회보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82%), 정부지원의 경우 기존에 10% 수준에서 코로나19 시기에 해당하는 2020~2021년 20% 수준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스페인의 사회보장기금 지출은 사회급여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2023년 93%), 사회급여 외의 지출은 출연금(2023년 3%), 보조금(2023년 1%), 피용자 보상(2023년 1%) 순의 비중을 보인다.

그림 14 수입 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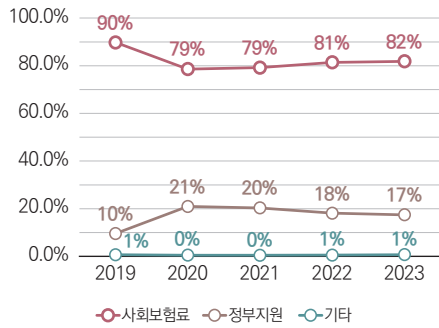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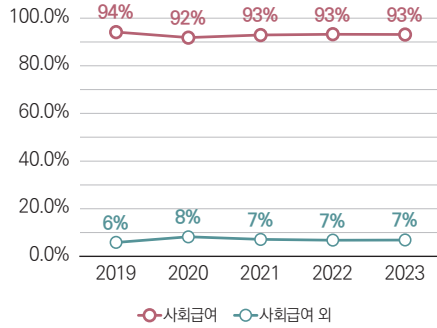


그림 15 지출 구성

(단위: %)



출처: IMF Data Portal, 2025. 8. 18.,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 동향



- 2024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결과 분석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온라인 동영상 제작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포털 홈페이지 개편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1~2차 결과보고
- 교육·의료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유형별 재무분석
- 세미나

01 2024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결과 분석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3조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을 수행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국회에 제출된 결산서를 바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한 52개 준정부기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

준정부기관의 자산 및 부채의 5개년 추세는 [그림 1]~[그림 2]와 같다.

그림 1 준정부기관 자산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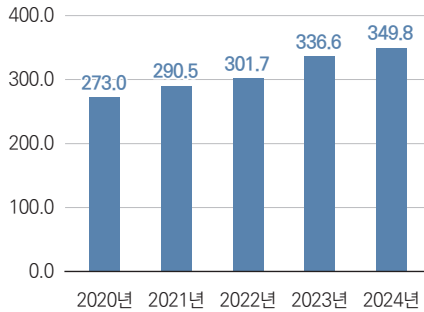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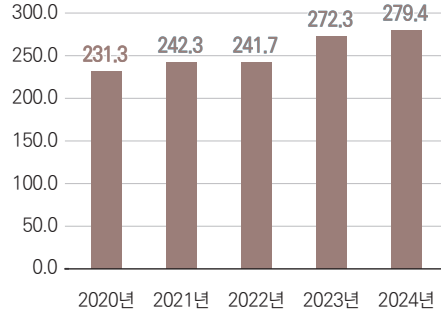


그림 2 준정부기관 부채

(단위: 조원)



주: 본 자료의 2023회계연도 수치는 2024회계연도 기관 수 및 분류 기준에 맞춰 전기 비교 표시 기준으로 재작성된 것으로 2023회계연도 국회 제출 결산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2024년 준정부기관의 자산은 349.8조원으로 전년 대비 13.3조원(+3.9%) 증가했다. 자산 증가액 중 40.7%(5.4조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금 운용을 위한 금융자산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한편 2024년 기준 준정부기관 총자산의 54.7%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5.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지하고 있다.

2024년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279.4조원으로 전년 대비 7.0조원(+2.6%) 증가하였다. 이 중 3.0조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수가 인상 영향에 따른 보험급여 총당부채 증가, 4.5조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사업자금 조달하기 위한 차입부채의 증가로 발생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료 등의 수입으로 특별계정 발행채권을 상환하여 부채가 1.6조원 감소하였다.

나. 준정부기관의 재무성과

준정부기관의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의 5개년 추세는 [그림 3]~[그림 4]와 같다.

그림 3 준정부기관 영업수익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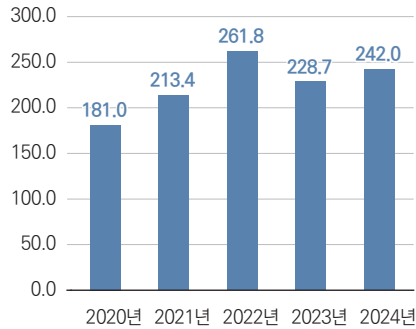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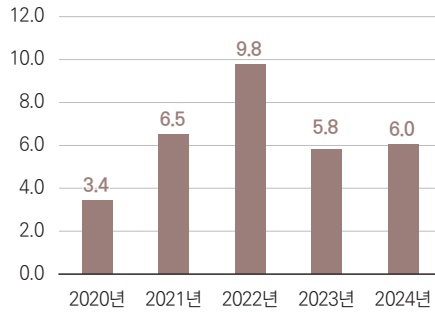


그림 4 준정부기관 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주: 본 자료의 2023회계연도 수치는 2024회계연도 기관 수 및 분류 기준에 맞춰 전기 비교 표시 기준으로 재작성된 것으로 2023회계연도 국회 제출 결산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준정부기관의 영업수익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수탁사업의 종료 등으로 영업수익이 33.1조원 감소하였다. 2024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수익 증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초자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익의 증가 등으로 영업수익이 13.2조원 증가하였다.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 코로나19종식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2024년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0.2조원 증가한 6.0조원을 기록하였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용자산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와 전기 총당부채 설정 기저효과로 당기순이익이 0.9조원 증가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 인상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0.6조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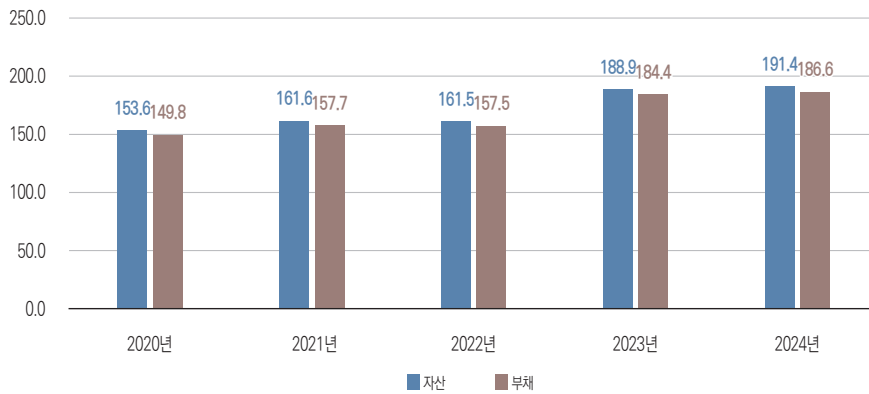
다. 주요 준정부기관 증감 분석

1) 한국주택금융공사

2024회계연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산은 191.4조원, 부채는 186.6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54.7%, 총부채 중 66.8%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자산·부채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탁 대지급금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 자금조달에 따른 현금 및 예치금의 증가 등으로 자산이 2.4조원 증가하였다. 부채는 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부채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2조원 증가하였다.

그림 6 영업수익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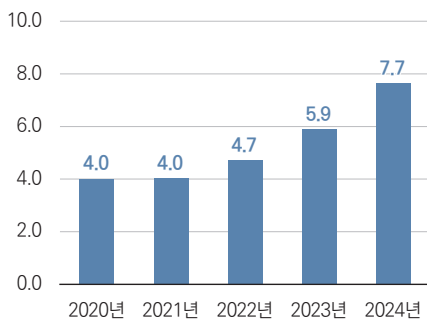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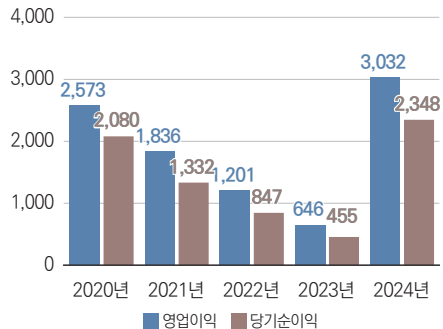


그림 7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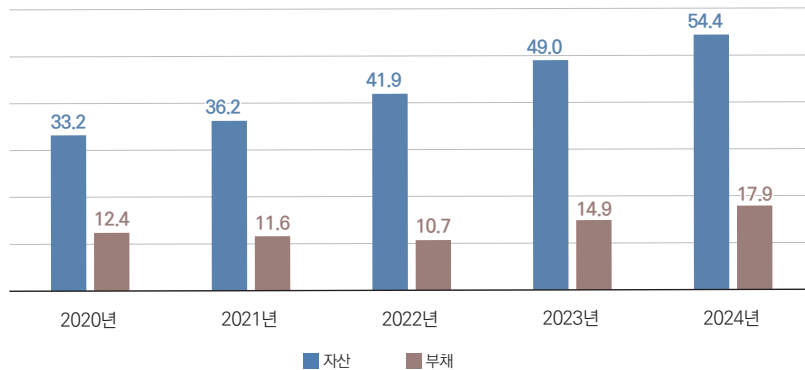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대출채권 이자 및 수수료 수익 증가와 파생 관련 이익 증가로 영업수익이 전년 대비 1.7조원 증가하였다. 또한 영업수익 증가폭이 영업비용 증가폭(+1.5조원)을 상회하며, 영업이익은 2,385억원, 당기순이익은 1,893억원 증가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회계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은 54.4조원, 부채는 17.9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15.5%, 총부채 중 6.4%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자산·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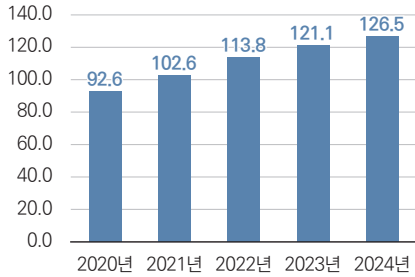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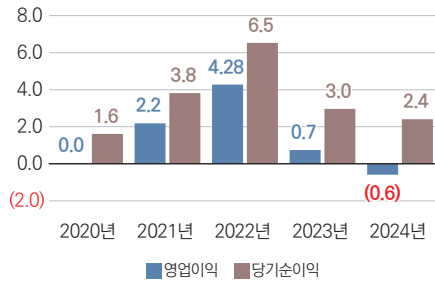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발생 및 금융자산 운용의 영향으로 자산이 전년 대비 5.4조원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채는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 지급에 따른 보험급여 총당부채 감소로 2022년까지 감소세였으나, 2023년 코로나19 종식 이후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및 보험급여 수가인상 영향으로 보험급여 총당부채가 증가하여 부채는 전년 대비 3.0조원 증가하였다.

그림 9 영업수익

(단위: 조원)

**그림 10**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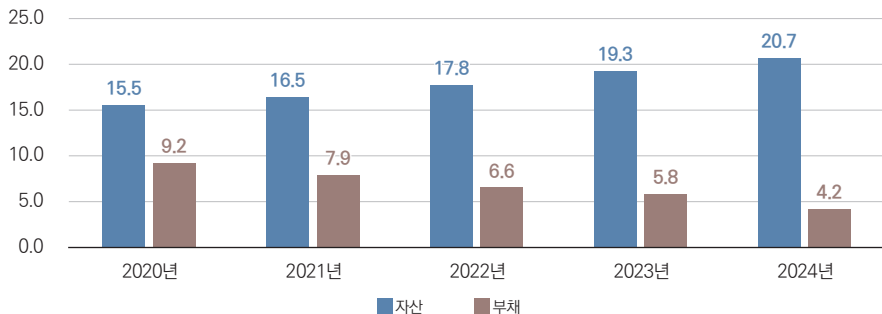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율 동결로 보험료수익 증가세가 둔화하며 전년 대비 영업수익은 5.4조원 증가하였다. 반면 전공의 파업 지원 등으로 인해 보험급여비 등 영업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수익 증가폭을 상회하여, 영업이익은 1.3조원 감소하였다. 2022년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202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4년에는 보험료율 동결, 전공의파업 지원 영향으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3조원 및 0.6조원 감소하였다.

3) 예금보험공사

2024회계연도 예금보험공사의 자산은 20.7조원, 부채는 4.2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5.9%, 총부채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자산 · 부채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료 및 이자수익 등 수입을 기반으로 운용자산을 늘리며 자산이 전년 대비 1.4조원 증가했다. 한편 특별계정 발행채권을 상환하여 부채는 전년 대비 1.6조원 감소하였다.

그림 12 영업수익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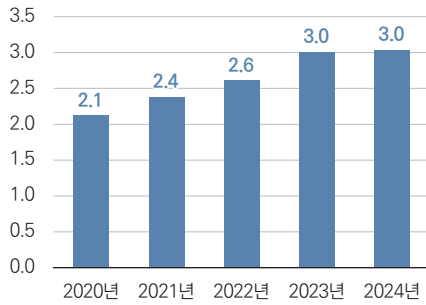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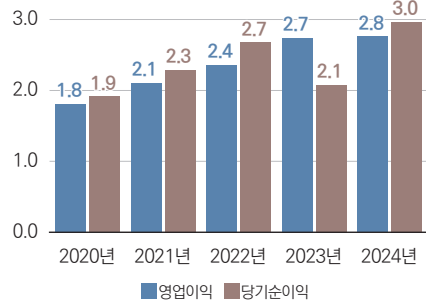


그림 13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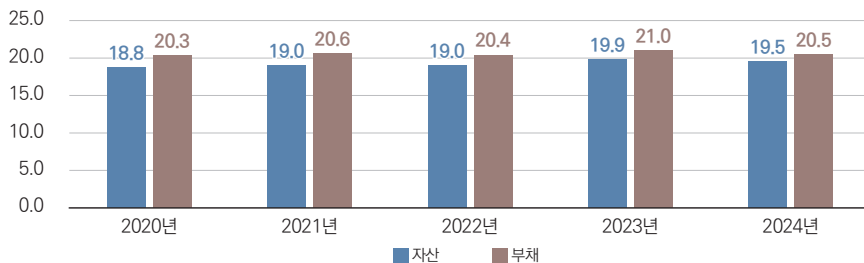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매년 예금 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수취하며, 보험료수익과 이자수익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어 영업수익과 영업이익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3년 충당부채의 적립 및 대손충당금환입액 감소로 0.6조원 줄었고, 2024년에는 대손충당금 환입 발생 및 전기 대손충당금 기저효과로 0.9조원 증가하였다.

4) 국가철도공단

2024회계연도 국가철도공단의 자산은 19.5조원, 부채는 20.5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5.6%, 총부채 중 7.3%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자산 · 부채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국가철도공단은 자산의 대부분이 비유동자산(2024년 기준 95.8%)으로, 유형 자산(건축물 및 건설중인자산 등)과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 등 용역수익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속철도 건설 투자 등으로 유·무형자산은 증가하였으나, 현금 및 금융상품은 감소하여 자산은 전년 대비 0.4조원 감소하였고, 선로유지보수비 관련 미지급금 감소 등으로 부채도 전년 대비 0.5조원 감소하였다.

그림 15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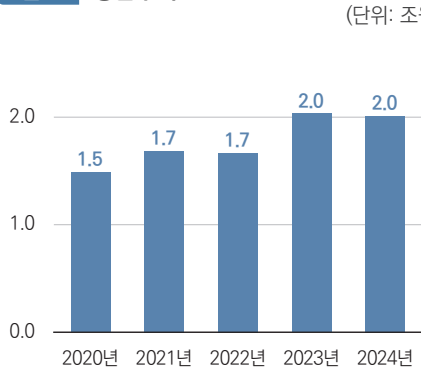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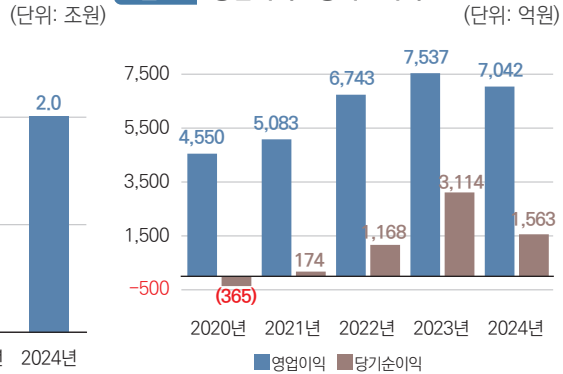


그림 16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자료: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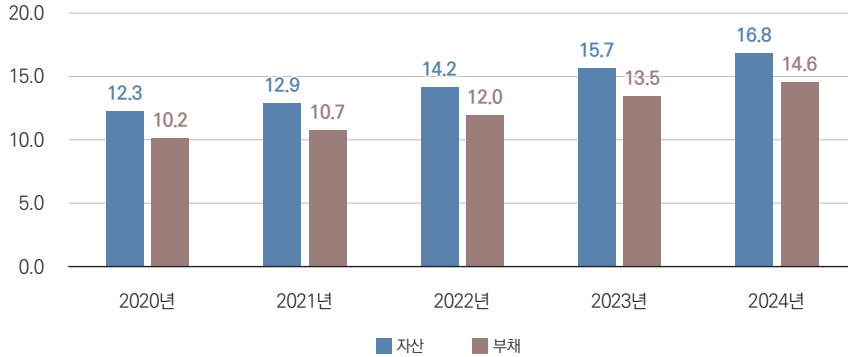
국가철도공단은 고속철도 건설비용의 50~65%를 공단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철도운영사(코레일, SR(주))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철도선로사용료로 징수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선로사용료가 크게 감소하면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회복세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다. 다만 2024년에는 수서역세권 분양이익 감소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94억원 감소하였고, 금융자산 처분이익 감소 및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551억원 감소하였다.

5) 한국농어촌공사

2024회계연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은 16.8조원, 부채는 14.6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4.8%, 총부채 중 5.2%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그림 17]과 같다.

그림 17 자산·부채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사업 관련 매입농지 증가, 경영회생 및 과원매매 관련 농지은행사업 장기매출채권 증가 등으로 자산이 전년 대비 1.2조원 증가하였다. 부채의 경우 농지은행사업 관련 장기차입금 증가 및 새만금산업단지 분양사업 관련 사채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1.1조원 증가하였다.

그림 18 영업수익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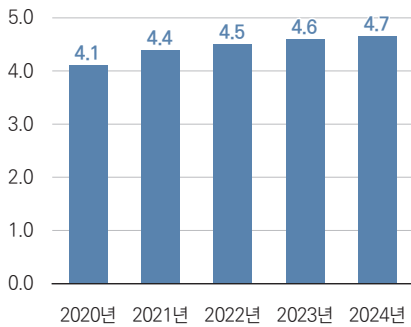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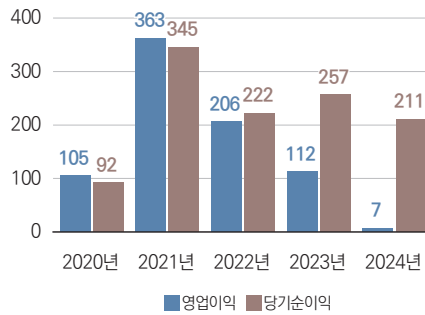


그림 19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한국농어촌공사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배수개선사업, 농가경영회생사업 등 사업물량이 확대되면서 영업수익이 578억원 증가하였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으로 영업비용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 영업이익은 105억원 감소하였다. 유형자산처분이익 감소 등으로 영업외이익도 163억원 감소하였으나, 법인세비용도 223억원 크게 감소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6억원 감소한 211억 원을 기록하였다.

0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온라인 동영상 제작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현장 교육 참석이 어려운 회계담당자들에게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온라인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설문조사(참여자 235명) 결과, 기초적인 회계 내용에 대한 현장 교육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정 기관에만 적용되는 회계 이슈를 다루는 과정은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회계순환과정 및 재무제표 표시'와 '특수한 지분투자' 과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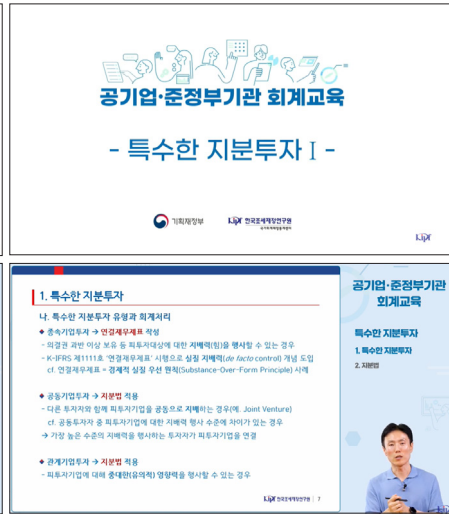
'회계순환과정 및 재무제표 표시' 과정은 송실대학교 전규안 교수가 강의를 맡아, 회계의 기본 개념, 거래 인식과 기록, 재무제표 작성 및 표시 등 회계순환 전 과정을 다루었다. '특수한 지분투자' 과정은 이화여자대학교 한승엽 교수가 강의를 맡아,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지분법 등 특수한 지분투자 회계처리를 중심으로 심화 사례를 다루었다.

본 교육 동영상은 7월 말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포털에서 상시 제공되고 있으며,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업무와 학습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 '회계순환과정 및 재무제표 표시' 온라인 교육영상



그림 2 '특수한 지분투자' 온라인 교육영상



현재까지 제공된 온라인 강의 목록은 '회계순환과정 및 재무제표 표시', '특수한 지분 투자', '법인세회계', '리스', '현금흐름표(실습)' 등으로, 각 과목별로 교육 영상이 순차 적으로 게시되어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센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담당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업무에 필요한 회계교육 온라인 동영상은 앞으로도 꾸준히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표 1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온라인 교육 목록

연번	과목명	강사	제공일
1	회계순환과정 및 재무제표 표시	전규안 교수(숭실대)	2025. 7.
2	특수한 지분투자	한승엽 교수(이화여대)	2025. 7.
3	법인세회계	최연식 교수(경희대)	2024. 12.
4	리스	박경진 교수(명지대)	2024. 12.
5	현금흐름표(실습)	방민식 회계사(이촌회계법인)	2024. 1.

03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포털 홈페이지 개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포털 홈페이지를 개편해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교육 과정 상시 확인, 신청 화면 단순화, 게시판 기능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

제공되는 [그림 22]의 교육과정은 메인 화면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가능한 교육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다.

그림 1 공기업·준정부기관 교육과정



교육 신청 메뉴에서 대기자 순번 표시 방식을 개선하고, 신청 가능 교육과 마감 교육을 쉽게 구분해 교육 신청 시 발생 가능한 혼선을 최소화한다. 더불어 게시판 내 공지사항·교육문의·교육자료 메뉴를 통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홈페이지 전반의 디자인을 깔끔하게 재구성하여 가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12월부터 오픈될 예정이며, 센터는 앞으로도 교육 수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용자 중심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04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1~2차 결과보고

본 교육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한 회계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2년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매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은 2024년 교육 운영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요가 높은 심화교육 및 실무교육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회계순환과정 및 재무제표 표시', '특수한 지분투자' 등 상대적으로 수요가 낮은 과목은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고, 2025년부터 XBRL 기반 공공기관결산시스템(PIFRS)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실무교육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XBRL 및 PIFRS의 이해' 교육은 공공기관 결산담당자의 XBRL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설되었다.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1차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담당자와 기타 공공기관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DC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총 56명이 참가하였으며, 8개의 공기업, 20개의 준정부기관, 9개의 기타공공기관에서 교육을 참가하였다. 이어 진행된 회계교육 2차는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하였으며, 총 91명이 참가하였다. 17개의 공기업, 25개의 준정부기관, 14개의 기타공공기관이 교육에 참가하였다.



표 1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일정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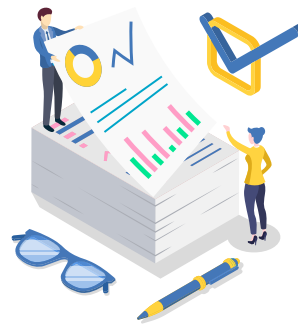
차수	지역	일정	시간	장소	수용인원
1차	대전	9. 10.(수) ~ 9. 12.(금)	3일(21시간)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장	100
2차	서울	9. 17.(수) ~ 9. 19.(금)	3일(21시간)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100
3차	서울	10. 22.(수) ~ 10. 24.(금)	3일(21시간)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100
4차	서울	11. 5.(수) ~ 11. 7.(금)	3일(21시간)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100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1차〉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2차〉



05 교육·의료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유형별 재무분석

공익법인은 6개의 공익사업 유형(교육, 문화, 사회복지, 의료, 학술·장학, 기타)으로 구분되며 공익목적사업 세부 사업내용¹⁾을 선택하여 공시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익법인이 선택한 공익목적사업 세부 사업내용을 활용하여 세부 사업유형별 재무 현황을 분석하였고, 이번 호에는 교육분야와 의료분야 공익법인의 세부 사업유형별 분석 결과를 게시한다.

1. 교육분야 세부 사업유형별 재무 현황

가. 교육분야 공익법인 현황

교육분야 공익법인이 선택(중복 선택 가능)한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초등 및 중등교육'을 세부 사업으로 선택한 공익법인이 가장 많으며, '고등교육'을 세부 사업으로 선택한 공익법인도 다수 있다.

표 1 교육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내용 선택 현황

(단위: 기관 수)

세부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초등 및 중등교육	815	829	846	856	897
고등교육	593	583	584	586	607
기타교육	329	333	347	354	404
학술연구	265	262	248	245	272
장학	147	151	131	134	146

- 1) 공익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세부 사업내용은 문화예술, 스포츠,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클럽, 초등 및 중등교육, 고등교육, 기타교육, 학술연구, 장학, 영유아보육, 병원 및 재활시설 요양원 정신건강 및 위기 개입, 기타보건서비스, 사회복지, 긴급상황 및 구호, 소득 지원 및 보존, 환경, 동물, 경제·사회 및 지역사회개발, 주거, 고용 및 훈련, 시민 및 옹호단체, 법률 및 법률서비스, 정치단체, 배분(지원) 재단, 봉사증진, 모금활동, 국제활동,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 비즈니스연합, 전문가연합, 노동조합, 기타로 구성

표 1 의 계속

세부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영유아보육	104	115	117	118	142
기타 ¹⁾	435	436	487	486	596
합계	2,688	2,709	2,760	2,779	3,064

주: 1. 중복선택가능

1) 세부 사업내용 중 '기타' 항목이 아닌, 나머지 세부 사업을 모두 포함한 것을 지칭

교육분야의 특징을 고려하여 '초등 및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세부 사업으로 선택한 공익법인을 '학교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구분하고 그 외 세부 사업을 선택한 공익법인을 '학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23년 기준 교육분야 공익법인 1,948개 중 학교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1,286개 이고 학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은 662개이며, 학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은 주로 '기타교육', '학술연구', '영유아보육' 등을 세부 사업으로 선택하였다.

표 2 교육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 선택 공익법인 구분

(단위: 기관 수)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학교	초등 및 중등교육	623	635	653	662	679
	고등교육	401	389	391	392	389
	초등·중등 & 고등	192	194	193	194	218
	소계	1,216	1,218	1,237	1,248	1,286
학교 외	551	559	557	561	662	
총계	1,767	1,777	1,794	1,809	1,948	

나. 교육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유형별 자산·부채 현황

2023년 학교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자산은 114조 5,564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609억원(2.1%) 증가, 2019년 대비 14조 3,549억원(14.3%) 증가하였으며, 2023년 학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자산은 5조 5,544억원으로 전년 대비 4,562억원(8.9%) 증가, 2019년 대비 2조 9,118억원(34.4%) 감소하였다.

고등교육을 세부 사업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흥익학원(흥익대학교, 2021년부터)과 을지학원(을지대학교, 2022년부터)이 세부 사업 유형을 변경하여 학교로 구분되어 학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자산이 감소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자산이 증가하였다.

표 3 교육분야 세부 사업별 공익법인 자산

(단위: 억원, %)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5년 대비		
						증감	%	증감	%	
학교	초등·중등	127,379	147,867	150,336	171,542	165,701	△5,841	△3.4	38,322	30.1
	고등	588,780	546,157	509,341	592,047	608,408	16,361	2.8	19,628	3.3
	초등·중등 & 고등	285,856	328,603	393,706	358,366	371,455	13,089	3.7	85,599	29.9
	소계	1,002,015	1,022,626	1,053,384	1,121,955	1,145,564	23,609	2.1	143,549	14.3
학교 외	84,662	87,194	73,127	50,982	55,544	4,562	8.9	△29,118	△34.4	
총계	1,086,677	1,109,821	1,126,511	1,172,937	1,201,108	28,171	2.4	114,431	10.5	

2023년 학교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부채는 24조 6,412억원으로 전년 대비 5,400억원(2.2%) 증가, 2019년 대비 4조 7,396억원(23.8%) 증가하였으며, 2023년 학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부채는 8,978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억원(0.5%) 증가, 2019년 대비 7,635억원(46.0%) 감소하였다.

고등교육을 세부 사업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을지학원(을지대학교, 2022년부터)의 세부 사업 유형 변경 효과로 학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부채가 감소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부채가 증가하였다.

표 4 교육분야 세부 사업별 공익법인 부채

(단위: 억원, %)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5년 대비		
						증감	%	증감	%	
학 교	초등·중등	7,993	9,085	8,956	9,538	9,561	23	0.2	1,569	19.6
	고등	128,073	122,985	115,289	135,861	139,206	3,345	2.5	11,133	8.7
	초등·중등 & 고등	62,950	76,148	90,329	95,613	97,644	2,032	2.1	34,694	55.1
	소계	199,015	208,218	214,574	241,012	246,412	5,400	2.2	47,396	23.8
학교 외	16,613	17,156	17,445	8,930	8,978	48	0.5	△7,635	△46.0	
총계	215,629	225,374	232,019	249,942	255,390	5,449	2.2	39,762	18.4	

다. 교육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유형별 수익·비용 현황

2023년 학교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수익은 59조 1,586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4,948억원(6.3%) 증가, 2019년 대비 12조 7,715억원(27.5%) 증가하였으며, 2023년 학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수익은 3조 5,8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048억원(9.3%) 증가, 2019년 대비 229억원(0.6%) 증가하였다.

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 한양학원(한양대학교), 동국대학교, 단국대학, 흥익학원(흥익대학교) 등의 세부 사업 유형 변경의 효과로 인해 초등 및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모두 세부 사업으로 선택한 공익법인의 수익이 증가하였다.

표 5 교육분야 세부 사업별 공익법인 수익

(단위: 억원, %)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5년 대비		
						증감	%	증감	%	
학 교	초등·중등	27,692	30,083	38,920	49,168	54,964	5,797	11.8	27,273	98.5
	고등	314,894	277,852	273,083	302,780	314,866	12,086	4.0	△28	△0.0
	초등·중등 & 고등	121,285	161,199	194,005	204,691	221,756	17,065	8.3	100,471	82.8
	소계	463,871	469,133	506,008	556,638	591,586	34,948	6.3	127,715	27.5

표 5 의 계속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5년 대비	
						증감	%	증감	%
학교 외	35,648	33,032	38,790	32,829	35,877	3,048	9.3	229	0.6
총계	499,519	502,165	544,798	589,468	627,463	37,996	6.4	127,944	25.6

2023년 학교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비용은 59조 97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3,589억원(6.0%) 증가, 2019년 대비 12조 9,115억원(28.0%) 증가하였으며, 2023년 학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비용은 3조 5,407억원으로 전년 대비 4,012억원(12.8%) 증가, 2019년 대비 973억원(2.8%) 증가하였다.

표 6 교육분야 세부 사업별 공익법인 비용

(단위: 억원, %)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5년 대비		
						증감	%	증감	%	
학 교	초등·중등	27,667	29,023	36,532	52,919	57,639	4,720	8.9	29,972	108.3
	고등	312,704	272,283	268,322	299,273	312,986	13,713	4.6	282	0.1
	초등·중등 & 고등	121,484	163,948	194,391	205,189	220,345	15,156	7.4	98,861	81.4
	소계	461,855	465,254	499,245	557,381	590,970	33,589	6.0	129,115	28.0
학교 외	34,433	32,172	37,964	31,395	35,407	4,012	12.8	973	2.8	
총계	496,288	497,426	537,209	588,776	626,377	37,601	6.4	130,089	26.2	

라. 2023년 교육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유형별 자산·수익·비용 계정 현황

2023년 교육분야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를 근거로 자산·수익·비용의 세부 계정 비중을 분석하였다.

1) 자산 계정과목 현황

초등 및 중등교육만을 세부 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토지의 비중이 50%를 초과하며 나머지 학교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은도 주요 유형자산(토지, 건물)의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특징이 있다. 학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경우는 기타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7 교육분야 공익법인 자산 주요 계정별 현황

(단위: 억원, %)

계정과목	초등·중등	고등	초등·중등 & 고등	학교 외
토지	87,793 (53.0)	139,920 (23.0)	86,331 (23.2)	12,061 (21.7)
건물	43,211 (26.1)	189,595 (31.2)	122,400 (33.0)	14,370 (25.9)
주식 및 출자지분	7,738 (4.7)	28,888 (4.7)	4,370 (1.2)	1,522 (2.7)
금융자산	20,363 (12.3)	145,402 (23.9)	96,817 (26.1)	14,941 (26.9)
기타자산	6,595 (4.0)	104,602 (17.2)	61,536 (16.6)	12,651 (22.8)
총자산	165,701 (100.0)	608,408 (100.0)	371,455 (100.0)	55,544 (100.0)

2) 공익목적사업수익 계정과목 현황

초등 및 중등교육만을 세부 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보조금수익의 비중이 64.7%에 달하며, 고등교육을 세부 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대학 등록금 수익 등으로 인해 기타수익의 비중이 60% 수준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학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경우는 보조금수익과 기타수익이 각각 40%를 초과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 8 교육분야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수익 계정과목 현황

(단위: 억원, %)

계정과목	초등·중등	고등	초등·중등 & 고등	학교 외
공익목적 사업수익	51,739 (100.0)	156,283 (100.0)	100,371 (100.0)	30,019 (100.0)
기부금	1,101 (2.1)	6,887 (4.4)	4,472 (4.5)	2,213 (7.4)

표 8 의 계속

계정과목	초등·중등	고등	초등·중등 & 고등	학교 외
보조금	33,496 (64.7)	48,388 (31.0)	28,714 (28.6)	14,752 (49.1)
회비	1,617 (3.1)	8,664 (5.5)	4,934 (4.9)	305 (1.0)
기타	15,525 (30.0)	92,344 (59.1)	62,251 (62.0)	12,750 (42.5)

3) 공익목적사업비용 계정과목 현황(기능별)

교육분야 공익법인 모두 사업수행비용의 비중이 높으나 학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은 사업수행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관리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9 교육분야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비용 계정과목 현황(기능별)

(단위: 억원, %)

계정과목	초등·중등	고등	초등·중등 & 고등	학교 외
공익목적사업비용	54,890 (100.0)	158,333 (100.0)	103,046 (100.0)	29,774 (100.0)
사업수행비용	49,122 (89.5)	133,850 (84.5)	88,719 (86.1)	22,538 (75.7)
일반관리비용	5,661 (10.3)	24,219 (15.3)	14,226 (13.8)	7,102 (23.9)
모금비용	107 (0.2)	264 (0.2)	101 (0.1)	134 (0.4)

4) 사업비용 계정과목 현황(성격별)

초등 및 중등교육만을 세부 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인력비용의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고등교육을 세부 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인력비용과 기타비용이 각각 40% 수준을 차지한다. 학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경우는 기타비용의 비중이 50%에 근접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 10 교육분야 공익법인 사업비용 계정과목 현황(성격별)

(단위: 억원, %)

계정과목	초등·중등	고등	초등·중등 & 고등	학교 외
사업비용	55,601 (100.0)	289,083 (100.0)	202,823 (100.0)	34,145 (100.0)
분배비용	3,594 (6.5)	17,658 (6.1)	15,734 (7.8)	2,919 (8.5)
인력비용	31,830 (57.2)	128,451 (44.4)	89,693 (44.2)	11,824 (34.6)
시설비용	4,722 (8.5)	29,348 (10.2)	21,683 (10.7)	2,574 (7.5)
기타비용	15,454 (27.8)	113,627 (39.3)	75,714 (37.3)	16,828 (49.3)

2. 의료분야 세부 사업유형별 재무 현황

가. 의료분야 공익법인 현황

의료분야 공익법인이 선택(중복 선택 가능)한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병원 및 재활시설’을 세부 사업으로 선택한 공익법인이 가장 많으며, ‘기타 보건서비스’를 세부 사업으로 선택한 공익법인도 있다.

표 11 의료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내용 선택 현황

(단위: 기관 수)

세부 사업내용	2019	2020	2021	2022	2023
병원 및 재활시설	900	901	894	901	869
기타 보건서비스	181	182	192	163	175
요양원	122	140	143	123	116
기타 ¹⁾	157	150	191	195	208
합계	1,360	1,373	1,420	1,382	1,368

주: 1. 중복 선택 가능

1) 세부 사업내용 중 ‘기타’ 항목이 아닌 나머지 세부 사업을 모두 포함한 것을 지칭

의료분야의 특징을 고려하여 ‘병원 및 재활시설’을 세부 사업으로 선택한 공익법인을 ‘병원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구분하고 그 외 세부 사업을 선택한 공익법인을 ‘병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23년 기준 의료분야 공익법인 1,044개 중 병원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869개이고 병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은 175개이며, 병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은 주로 '기타 보건서비스', '요양원' 등을 세부 사업으로 선택하였다.

표 12 의료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 선택 공익법인 구분

(단위: 기관수)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병원	900	901	894	901	869
병원 외	152	154	162	147	175
총계	1,052	1,055	1,056	1,048	1,044

나. 의료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유형별 자산·부채 현황

2023년 병원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자산은 25조 6,204억원으로 전년 대비 9,028억원(3.7%) 증가, 2019년 대비 6조 3,230억원(32.8%) 증가하였으며, 2023년 병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자산은 2조 3,819억원으로 전년 대비 79억원(0.3%) 증가, 2019년 대비 1,669억원(7.5%) 증가하였다.

표 13 의료분야 세부 사업별 공익법인 자산

(단위: 억원, %)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5년 대비	
						증감	%	증감	%
병원	192,975	203,423	225,617	247,176	256,204	9,028	3.7	63,230	32.8
병원 외	22,151	24,659	22,003	23,741	23,819	79	0.3	1,669	7.5
총계	215,125	228,082	247,620	270,917	280,024	9,107	3.4	64,898	30.2

2023년 병원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부채는 14조 8,605억원으로 전년 대비 6,805억원(4.8%) 증가, 2019년 대비 2조 6,295억원(21.5%) 증가하였으며, 2023년 병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부채는 1조 2,841억원으로 전년 대비 663억원(5.4%) 증가, 2019년 대비 662억원(5.4%) 증가하였다.

표 14 의료분야 세부 사업별 공익법인 부채

(단위: 억원, %)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5년 대비	
						증감	%	증감	%
병원	122,310	128,928	138,541	141,800	148,605	6,805	4.8	26,295	21.5
병원 외	12,178	14,791	12,399	12,178	12,841	663	5.4	662	5.4
총계	134,489	143,719	150,940	153,978	161,446	7,468	4.9	26,957	20.0

다. 의료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유형별 수익·비용 현황

2023년 병원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수익은 20조 5,014억원으로 전년 대비 8,643억원(4.0%) 감소, 2019년 대비 4조 3,057억원(26.6%) 증가하였으며, 2023년 병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수익은 1조 9,435억원으로 전년 대비 5,476억원(22.0%) 감소, 2019년 대비 112억원(0.6%) 증가하였다.

병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 중 규모가 큰 임상검사 전문기관이 있고 2021년, 2022년에 코로나19로 인한 검사 관련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가 2023년 코로나19 유행 종료로 인해 관련 수익이 감소하여 수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15 의료분야 세부 사업별 공익법인 수익

(단위: 억원, %)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5년 대비	
						증감	%	증감	%
병원	161,957	163,522	190,516	213,658	205,014	△8,643	△4.0	43,057	26.6
병원 외	19,323	20,944	23,436	24,910	19,435	△5,476	△22.0	112	0.6
총계	181,280	184,466	213,952	238,568	224,449	△14,119	△5.9	43,169	23.8

2023년 병원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비용은 20조 6,834억원으로 전년 대비 9,103억원(4.6%) 증가, 2019년 대비 4조 8,711억원(30.8%) 증가하였으며, 2023년 학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비용은 1조 9,671억원으로 전년 대비 2,988억원(13.2%) 감소, 2019년 대비 449억원(2.3%) 증가하였다.

표 16 의료분야 세부 사업별 공익법인 비용

(단위: 억원, %)

세부 사업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 대비		5년 대비	
						증감	%	증감	%
병원	158,123	162,591	182,899	197,731	206,834	9,103	4.6	48,711	30.8
병원 외	19,222	20,645	21,575	22,659	19,671	△2,988	△13.2	449	2.3
총계	177,344	183,236	204,474	220,389	226,504	6,115	2.8	49,160	27.7

라. 2023년 의료분야 공익법인 세부 사업유형별 자산·수익·비용 계정 현황

2023년 의료분야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를 근거로 자산·수익·비용의 세부 계정 비중을 분석하였다.

1) 자산 계정과목 현황

병원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건물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토지를 포함한 주요 유형 자산의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특징이 있다. 병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도 토지와 건물 등 주요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기타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다.

표 17 의료분야 공익법인 자산 주요 계정별 현황

(단위: 억원, %)

계정과목	병원	병원 외
토지	70,032 (27.3)	5,245 (22.0)
건물	87,810 (34.3)	6,985 (29.3)
주식 및 출자지분	1,325 (0.5)	170 (0.7)
금융자산	32,185 (12.6)	3,312 (13.9)
기타자산	64,853 (25.3)	8,107 (34.0)
총자산	256,204 (100.0)	23,819 (100.0)

2) 공익목적사업수익 계정과목 현황

병원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수익 중 98.3%가 기타수익이며, 병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수익 중 97.1%도 기타수익이 차지하는 등 의료 분야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수익은 병원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타수익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 18 의료분야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수익 계정과목 현황

(단위: 억원, %)

계정과목	병원	병원 외
공익목적사업수익	169,616 (100.0)	10,412 (100.0)
기부금	830 (0.5)	110 (1.1)
보조금	2,123 (1.3)	187 (1.8)
회비	2 (0.0)	4 (0.0)
기타	166,660 (98.3)	10,111 (97.1)

3) 공익목적사업비용 계정과목 현황(기능별)

병원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사업수행비용이 80%를 초과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병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도 사업수행비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일반관리비용의 비중이 30%에 달하는 등 상대적으로 일반관리비용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19 의료분야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비용 계정과목 현황(기능별)

(단위: 억원, %)

계정과목	병원	병원 외
공익목적사업비용	172,549 (100.0)	10,983 (100.0)
사업수행비용	139,210 (80.7)	7,593 (69.1)
일반관리비용	33,247 (19.3)	3,369 (30.7)
모금비용	92 (0.1)	21 (0.2)

4) 사업비용 계정과목 현황(성격별)

병원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인력비용이 50%를 초과하는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병원 외 사업 운영 공익법인의 경우도 인력비용이 40% 수준을 보이지만 기타비용의 비중이 4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표 20 의료분야 공익법인 사업비용 계정과목 현황(성격별)

(단위: 억원, %)

계정과목	병원	병원 외
사업비용	198,390 (100.0)	19,125 (100.0)
분배비용	997 (0.5)	203 (1.1)
인력비용	113,320 (57.1)	8,364 (43.7)
시설비용	14,183 (7.1)	1,422 (7.4)
기타비용	69,891 (35.2)	9,136 (47.8)





세미나



- 제6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내

01 제6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내

- 주** 제: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재정통계의 고도화: 공시에서 활용으로
일 시: 2025년 11월 5일(수) 14:00~18:00
장 소: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모팰트홀(서울 중구)
주 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11월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모팰트홀에서 '제6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정통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국제적 현황을 진단하고, 국가관리회계의 개념과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정보 통합체계 도입을 통해 재정정책 수립 과정에서 재정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재정통계의 고도화: 공시에서 활용으로'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및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될 예정이다. 먼저 기조연설로 Steffi Schuster IMF 통계국 정부재정과장(Division Chief)이 발생주의 재정통계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부재정통계를 포함한 재정정보의 국제적 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재정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정부 정책 결정을 위한 국가관리회계의 역할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 간 재정정보 통합 전략 등 2개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이 정부 의사결정을 위한 국가관리회계 개념을 도입하여, 상속세·증여세 등 미래 수입과 연금·기본소득 등 미래 지출의 현가화를 중심으로 국가관리회계 활용 제고 방안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뒤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 간 재정정보 통합의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통합결산을 넘어 통합예산 및 중기재정 전망에 대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제기구,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초연설과 세션 토론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재정당국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관리회계 개념의 도입과 미래지향적인 재정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정보의 통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며, 나아가 정부 재정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제6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개회식		
14:00~14:30 (30)	개회사 축사	이 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기조연설		
14:30~14:50 (20)	발생주의 재정통계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Steffi Schuster IMF 통계국 정부재정과장	
주제 발표		
[세션1] 정부 정책결정을 위한 국가관리회계의 역할		
14:50~15:40 (50)	좌 장	강호인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발 표	합리적 재정 의사결정을 위한 국가관리회계 구축 및 활용 방안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토 론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세션2] 중앙·지방정부 정부 간 재정정보 통합 전략		
15:40~16:30 (50)	좌 장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부총장
	발 표	재정데이터의 일관성과 분석 Mariana Sabates Cuadrado IMF 통계국 선임 이코노미스트 Clement Ncuti IMF 재정국 선임 이코노미스트
	토 론	Andrew Blazey OECD 공공거버넌스국 공공관리예산 부부장 박성진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16:30~17:00	휴 식(30')	
라운드테이블		
17:00~17:55 (55)	좌 장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7:55~18:00	질의응답 및 폐회	

국가회계
재지통계



공지사항



구독 안내

- 「국가회계재정통계」는 회계전문연구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발간하는 분기 발간물로서, 주요 내용으로 국가회계, 국가결산, 국가회계교육, 재정통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 대한 동향 및 분석 자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 구독을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http://gafsc.kipf.re.kr>
- 이메일 신청 gafsc@kipf.re.kr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신 발간자료와 주요 발간자료 메뉴를 통해 연구보고서, 기타보고서, 브리프, 세미나자료 등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발간물 등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